

|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

2018년 11월 6일(화) 13:00~19:00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민족문제연구소

협력 : 강제동원문제해결과대일과거청산공동행동 /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 Program |

제1부 (13:00~13:20) | **개회식** 사회 : 김현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개회사 : 김홍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환영사 :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민족화해협의회(메시지)

축사 :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민(더불어민주당)
홍순권(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대표)

제2부 (13:30~14:50) 사회 :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발표 1 :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발표 2 : 국제인권규범과 유골문제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발표 3 : 강제연행 피해와 유골조사
니시자와 기요시(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발표 4 : 일본 정부의 해외격전지 유골조사 · 봉환
이와부치 노부테루(태평양전사관 관장)

제3부 (15:00~16:40) 사회: 정병호(한양대, 평화디딤돌)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해결노력과 과제

발표 1 : 일본시민네트워크에 의한 유골조사 현황
다케우치 야스토(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발표 2 : 홋카이도 유골조사와 봉환
도노히라 요시히코(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발표 3 : 오키나와 유골조사
구시켄 다카마쓰(가마후야)

발표 4 : 야마구치(장생탄광) 유골조사
오바타 다이사쿠(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

발표 5 : 일본정부와 교섭
우에다 게이시(전몰자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연락회)

제4부(17:00~19:00) | **종합토론** 사회: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토론 :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하라다 아키히로),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야노 히데키, 나카타 미쓰노부),
통국사(최헌장, 윤정강), 민화협(이시종), 유골봉환종교인시민연락회의(김현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연희),
동북아역사재단(조윤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재철)

| Contents |

인사말 김홍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6
환영사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8
민족화해협의회(메시지)	10
축사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12
신경민(더불어민주당)	14
홍순권(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대표)	16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발표 1 :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	23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발표 2 : 국제인권규범과 유골문제	47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발표 3 : 강제연행 피해와 유골조사	79
니시자와 기요시(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발표 4 : 일본 정부의 해외격전지 유골조사 · 봉환	93
이와부치 노부테루(태평양전사관 관장)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해결노력과 과제

발표 1 : 일본시민네트워크에 의한 유골조사 현황	105
다케우치 야스토(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발표 2 : 홋카이도 유골조사와 봉환	125
도노히라 요시히코(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발표 3 : 오키나와 유골조사	137
구시켄 다카마쓰(가마후야)	
발표 4 : 야마구치(장생탄광) 유골조사	139
오바타 다이사쿠(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	
발표 5 : 일본정부와 교섭	153
우에다 게이시(전몰자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연락회)	

|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홍걸입니다.

먼저 오늘 이 귀중한 강제징용 국제심포지엄행사에 참석해주신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분단의 벽에 막혀 남쪽을 방문하지 못했던 총련 관계자 및 일본의 연구
자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화협은 지난 7월 18일 평양에서 <조선인 유골송환을 위한 남북민
화협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8월6일에는 일본에서 <조선인 유골송환을 위한 남북
일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유골송환을 위해 일본의 여러 사찰과 관계자 분들, 강제동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고생해 오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유골송환문제를 고민한 것은 진정한 ‘민족화해’와 ‘협력’은 과거사에 대한 ‘진실
복원’과 ‘청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교과서에서 일본의 ‘무단통치’와 ‘문화통치’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은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선인구 2500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강제동원’으로 엄청난 피해
를 입었던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거사 청산’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
했기에 민화협 내에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송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 등지를 돌
아다니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동경 메구로 유텐지에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 들에 대한 추도식을 거행할
예정이고, 오사카 통국사에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의 국내송환 문제를 협의 중
에 있습니다.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일본의 북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강제동원 피해지들에 대한 최초의 국제심포지엄
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오신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중앙
본부” 관계자 분들과 일본의 연구자 분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
하며, 그 진실이 복원될 때 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 홍 걸

| 환영사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실태와 해결방향’을 다루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에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오신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동북아역사재단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와 더불어 개최합니다. 두 기관 모두 학술이나 시민운동 차원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생긴 많은 역사적 과제를 민족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화협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 문제를 북의 민화협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풀어야 할 이른바 ‘과거사’ 문제를 정의의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신경민 의원께서도 같은 걸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고 있습니다. 또한 식민지배로 인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홍순권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식민지 피해 해결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지난 주에 내려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1965년)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청구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 희생당했지만, 보상은 물론 아직까지 유골조차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는 더욱더 현실의 문제입니다.

유골문제는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문제이고 동시에 희생자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사 해결이 더디고 어렵겠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제하 동원체제 아래에서 희생자들이 어떻게 동원되었다가 희생되었는지, 아직도 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이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자 식민지배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동북아지역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사’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덮어두고 경제, 문화 관계를 활성화하더라도 언제든지 과거사 문제로 인해 다시 악화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일본 전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재단도 유골을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아카이브화 등을 통해 여러분들과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11월 6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

| 환영사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펼쳐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궤도 따라 온 겨레가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공동의 과제인 일본의 과거죄악을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는 드높은 의지를 안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토론회》를 성대히 개최한 귀 협의회를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에게 련대적인사를 보냅니다.

일제는 지난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인민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체포, 랏치, 강제련행하여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수많은 전쟁터들과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았습니다.

더우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민족적존엄과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100만명의 우리 겨레들이 꿈속에서도 가보고싶었던 고향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산설고 물설은 이국의 산야에서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쓰러진 가슴아픈 력사는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치욕의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지난날의 침략행위와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털끝만한 죄의식과 자책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하나 죄과를 모면해보려고 잔피를 부리면서 지난 세기를 릉가하는 군국주의야망에 들떠 재침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일본의 만고죄악과 특대형범죄를 말끔히 청산하고 군국주의재침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는것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력사의 과제이며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입니다.

오늘의 우리 민족은 외세가 강요하는 불행과 고통을 숙명으로 감수하며 살았던 어제 날의 민족이 결코 아니며 세계의 강대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면서 민족의 존엄과 강용한 위상을 만방에 떨쳐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세기를 두고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그 모든 불행과 고통, 손실의 대가를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민족적인 반일련대활동으로 과거범죄를 전면부정하고 오도하는 일본의 책동에 견결히 맞서나가야 하며 일본의 군국주의재침책동을 반대하는 반일합성이 가는곳마다에서 높이 올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일제의 치떨리는 만행을 세계에 고발하고 반세기이상에 걸친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과감히 투쟁하고 있는 귀 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의 애국적인 활동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아울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토론회》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천명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따라 일본의 과거죄악을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는 온 겨레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토론회의 성공적개최를 다시금 축하합니다.

주체 107(2018)년 11월 6일

민족화해협의회

| 축 사 |

존경하는 심포지엄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민화협, 동북아역사재단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번에 대단히 뜻깊은 심포지엄을 열어주셨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화협 김홍걸 상임의장, 동북아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 민족문제연구소 임현영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 자리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식민지 피해의 회복을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와 활동가 여러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고 한·일이 수교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식민지 피해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지 체제 하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일본 국민이 해야 할 일을 강요당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수습을 기다리며 일본 각 지역과 태평양 군도를 떠돌고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넋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골 문제는 일제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선인을 전쟁터의 군인과 군속으로, 그리고 탄광 등의 노동자로 강제 동원했음에도 전쟁이 끝난 후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유골을 유족에게 돌려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골봉환은 한·일 정부 간 협상으로 이뤄진 일본 내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은 2010년 5월19일을 끝으로 멈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희생자들에 대한 '강제동원'인정 여부, 책임 소재에 대한 양국 정부의 견해차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모진 고통 속에 고향산천을 그리워하다 생을 마감하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규명이 절실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다루는 내용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과거사 진상규명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본국송환 및 진상규명은 수습되지 못한 채 곳곳에 방치된 역사적 정의를 정립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정·청을 아우르는 논의를 이끌며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봉환과 진상규명을 둘러싼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조선인 유골 실태조사와 봉환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각지에서 실천해온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나누게 될 풍성한 논의가 강제동원과 유골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남북일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방안 도출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전하는 열의가 더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8년 11월 6일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강창일**

| 축 사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신경민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애쓰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홍걸 대표상임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시간입니다. 해방된 지 73년
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에 남겨진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유골을 봉환하는 운동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아물
게 하는 일이며, 우리 민족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이 마음을 모아 '일제하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송환 공동추진
위원회'를 합의하고, 나아가 남북과 일본이 '남북·일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송환 공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큰 진전입니다. 남북과 일본의 합의 하에 유골 발굴·봉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마지막 단 한분까지 고향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 운동은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골을 봉환함과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떻게 동원되
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열리는 심포지엄이 계기가 되어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해당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회의원 **신경민**

| 축 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과 희생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구적으로 활동해 오신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여러분을 비롯하여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대단히 뜻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고통을 강요당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유골문제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원고들에게 가해 기업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나온 보충의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그 실상을 조사·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일 수도 있다.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책임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국가를 정확하고 날카롭게 비판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제회의가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앞서 해 오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과 지혜가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해 떠나면 이역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이 고국의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활발하고 뜻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오늘의 모임을 계기로 하루속히 동아시아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져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공동대표

홍 순 권

Session 01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국제인권규범과 유골문제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강제연행 피해와 유골조사

니시자와 기요시(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 정부의 해외격전지 유골조사·봉환

이와부치 노부테루(태평양전사관 관장)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日帝強制動員朝鮮人遺骨問題の
歴史的経緯と現況



南相九

(東北アジア歴史財団)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1. 유골문제란

- 유골 문제는 일제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선인을 군인·군속으로 전쟁터에, 노동자로 탄광 등에 강제로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유골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
 -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전쟁이 끝나 후 조선인 유골의 행방에 대한 조사와 봉환 책무를 방기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임.

※ 일본은 2016년 3월 23일 ‘전몰자의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전몰자 유골 수집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2024년까지를 유골 조사와 봉환 집중 실시기간으로 정함(대상은 일본인으로 한정됨).

- 유골문제는 식민지 피해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 그리고 일본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유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유골을 봉환함과 동시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원되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분들을 상시적으로 찾고, 모셔

오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일제 식민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2016.12.19.,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 대표 이희자)

2. 역사적 경위 및 실태

1) 군인·군속

- 해외 전쟁터에서 사망한 조선인 군인·군속은 명부상 21,919명인데 일본 정부가 1945년 8월 이후 한국 정부를 통해 송환한 유골은 2,072위에 불과함(※붙임1 참조).
 - 해방 이전에 송환한 유골은 해군관계 2,433위임(육군관계 자료는 남아있지 않음).

※ 1971년 일본 정부가 제공한 『구일본군 재적 조선출신 사망자 연명부』를 근거로 한 조선인이 100명 이상 사망한 지역

사망지	사망자수	사망지	사망자수	사망지	사망자수
필리핀	2,597	마리아나	335	타이완	458
인도네시아	2,280	쿠에제린도	310	중국 호남성	219
사이판	1,101	페리리유도	254	중국 호북성	134
뉴기니아	1,076	미레	214	중국지역	809
팔라오	632	부라운	211		
길버트다라와	564	라바울	188	마이즈루	481
히레바스도	513	유황도	139	오키나와	267
트럭섬	484	바시해	101	도쿄	150
버마	453	부도	114	시고쿠	131
기르바도	452	메레온	109	일본전역	766
괌	358	솔로몬	101		
루손	344	소련 북천도	543	조선	290

- 해외 전쟁터에서 사망한 일본인 군인·군속은 약 240만 명으로 지금까지 그 중 약 반수인 127만 명의 유골이 봉환되었는데(※붙임2 참조), 이 과정에서 조선인 유골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음.

- 일본으로 봉환된 유골 중 신원이 확인 안 되거나 유족이 확인 안 된 유골은 1959년 일본 정부가 건설한 지도리카후치전몰자묘원에 안치됨.

※ “흩어져 있는 유골을 긁어모으는 식이었다. 그 당시는 같은 부대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이 일본인이라든가 타이완인이라든가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 “타이완인이라든가 조선인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물며 그것을 판명해서 두고 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 2005.6.28., 오쓰지 히데히사(尾辻秀久) 후생대신)

- 이렇듯 일본인 유골 봉환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은 채 한국, 북한, 타이완 출신자의 유골이 일본인 유골에 섞여 송환되었고 일본의 국가시설에 납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들 정부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
- 일본 정부는 2003년 6월부터 희망하는 일본 유족에 한해 국비로 DNA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 7월까지 2,016건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고 그 중 1,084건의 신원이 판명됨.

- 현재 조선인 군인·군속 유골 712위가 일본 도쿄 소재 유평지(祐天寺)에 안치되었는데, 북한지역 출신자 431위, 한국 출신자 281위(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 272위 포함)임(※ 유평지 보관 유골 현황 확인 필요).

- 우키시마마루 사건 유족들은 동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폭침사실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며 유골(280명) 봉환을 거부

-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기니아 등 해외 전쟁터와 시베리아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조선인 군인·군속 유골 실태에 대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음.

2) 노동자

-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사망자 수와 국외에 남겨진 유골 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임.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6)는 1939년 이후 한반도 외로 동원된 노동자 수를 1,045,962명으로 파악, 사망자 수와 남겨진 유골 수에 대한 언급은 없음.
- ※ **홍상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사무국장)**은 '1945년 2월 현재로 「46,000+α」에서 1945년 3월 이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의 피폭 희생자와 일본 각지에서의 공습 희생자를 포함하면 강제연행 희생자는 최저 약 6만 명으로 추정되고(1962년 2월 19일 외무성이 작성한 『한국인 이입노동자수에 대하여-토의용 자료』)라는 점을 근거로 해방 후 본국으로 가져온 유골을 제외해도 현재 **일본 국내에 남겨져있는 유골은 최소 5만구로 추정된다고 주장**(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진실과 화해, 미래를 위한 진상규명- 자료집, 2004.11.10)
- 일본 정부는 민간인 노동자 유골은 국가와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 책임을 부정했고 한국 정부도 정책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2004년 1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전시 중 사망한 민간징용자 유골 수습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하여 **양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유골 봉환 문제가 논의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
 - 2005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일 간에 국장급 협의 7회, 실무자급 협의 9회가 개최됨.
 - 2011년 이후 유골협의 대표가 강제동원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으로 변경되었는데, 유골 봉환에 관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노동자 유골봉환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사할린 한인 유골을 중심으로 추진
- 한일 유골협의를 통해 일본 전역에 산재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실태·실지조사를 실시했는데, 2015년 4월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제공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 유골을 안치하고 있는 시설은 339개소이고 유골은 2,798위임.**

- 2,798위 중 개체성이 확인된 확보된 것은 1,337위(성명 확인 1,134위),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된 유골은 167위로, 강제 동원되어 전시 중에 사망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함.
- 유골조사에는 전일본불교회가 전국적으로 조사에 나섰으며 조동종, 서본원사, 동본원사는 종단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함.

※ 일본 내 조선인 유골 실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http://www.pasthistory.go.kr/etc2slnc/project.do>) 참조

3) 유골봉환의 역사적 경위

- 식민지에서 독립한 조선은 분할 점령되었고 결국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됨에 따라 유골 봉환문제는 외교문제로 변질됨.
- 유골 봉환은 1947년 2월 2일 연합국군총사령부의 지시로 재개되었는데 유족(친척)이 38도선 이남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됨.
 - 구체적으로는 1948년 2월 3일 4,597(유골 456)위, 5월 31일 3,046(유골 330)위가 남한의 조선과도정부에게 인도됨.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 후 조선인 유골에 대한 개별적인 명부 조회가 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도 유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¹⁾, 후생성은 1954년 8월 외무성에 조선 출신 군인·군속 전몰자 명부를 제공하고 유골 송환에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함.
 - 외무성은 “본 건은 본래 일한회담의 의제이지만 ①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와, ②유골을 인도하는데 있어 조의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③일반징용자와의 관련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아 지금이 적당한 때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회답함²⁾.
- 한국인 유골의 봉환문제를 복잡하게 했던 또 하나의 원인은 조선인 유골이 남한과 북

1) 1955.12.22, 아시아국第 5, 「朝鮮出身戰者の遺骨送還する件」(외무성 공개문서)

2) 1954.8.4, 아시아국第 5 「朝鮮出身戰者關する件」(외무성 공개문서)

한의 유골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음.

- 외무성 아시아1과의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에 유골을 인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³⁾와 “한국인 유골 전부를 한국에 인도했을 경우 유골에 대한 적당한 인도 청구권자(친족)가 일본에 있을 경우 조총련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본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동북아시아과의 견해⁴⁾는 일본 정부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한국 정부는 강화조약 발효 전부터 이미 조선인 유골에 대해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유해는 유족의 소유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일괄반환에 응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양국 간 의견이 대립하고 교섭은 진전되지 못했음.
- 한편 북한 유골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일본인을 귀환시킬 때 사용될 선박을 이용하여 송환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1955년) 분단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으며⁵⁾, 그 후에도 적십자사를 통해 유골을 송환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송환에는 이르지 못했음⁶⁾.
- 1969년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현재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전몰한 한국인 유해의 인도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유족 및 연고자에게 해당 유해를 전달한다”는 것에 합의했음⁷⁾.
 -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세 등을 이유로 유족에게 개별적인 사망통보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1971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21,919명이 등재된 『구 일본군 재적 조선 출신 사망자 연명부』를 송부했음.
 -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 따른 유골 봉환을 보면 먼저 한국 정부가 유골 수령을 희망하는 유족을 파악해 그 명단과 신청자의 신상을 증명하는 자료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음.
 - 일본 후생성은 유골 수령 신청자의 호적등본(초본)으로 신분관계를 조사하고 또 신

3) 1956.6.7 아시아-1課 「朝鮮人戰沒者遺骨問題に關する件」(외무성 공개문서)
 4) 1966.11.16 北東アジア課 「韓國人遺骨の引渡しに關する法律上の問題について」(외무성 공개문서)
 5) 1955. 12.22 아시아局第五課 「朝鮮出身戰沒者の遺骨送還に關する件」(외무성 공개문서)
 6) 1960.2.5 北東アジア課 「朝鮮出身軍人軍屬の遺骨返還に關する件」, 1966.2.4 北東アジア課 「厚生省に保管している戰沒韓國人の遺骨問題について」(외무성 공개문서)
 7) 厚生省社會・援護局 『援護 50 年史』 1997 年

청자의 현 거주지를 확인하여 인도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유골을 한국에 송환하여 유족에게 전달했음.

- 1974년 1월 25일 주일한국대사관은 일본 후생성이 보관 중이던 조선인 유골 중에서 한국 출신자는 전부, 북한 출신자는 그 유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골을 3월 10일까지 한국에 송환하도록 일본 외무성에 신청했음.
 -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중전의 방식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백년 후에도 모국에 봉환되지 못하는 유골이 발생하지도 모르는 것”⁸⁾이라고 남한 출신 유골의 일괄 송환을 주장함.
 -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1969년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담의 양해사항에 따라 송환해야 한다고 하여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음.
 - 일본 측이 남한 출신 유골의 일괄 송환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주일한국대사관은 “북한과는 법률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북한의 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약한 입장에 있으므로 일괄 인도하는 경우 관계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유족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법규에 비추어 정부의 패소는 확실하며 본건이 세인의 관심대상이 되면 친북한 국회의원들이 전후 29년에 이르기까지 북한 출신분의 북한 봉환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 취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고 추궁 받을 것이 뻔하며 나아가서는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촉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고 외교부에 보고했음⁹⁾.
- 1984년 이후에는 유족 판명이 곤란해져, 개별 봉환이 진척되지 않는 실정을 고려해 본격지가 한국인 유골을 일괄 봉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졌음.
 - 1989년 한일 정부의 실무차원에서 일괄반환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년 12월 이후 반환방법 등에 관해 교섭을 거듭했지만 양국 정부 간 정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
- 2004년 12월 17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에게 한국인 미간 징용자 유골 봉환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일 정부 간에 유골협약이 개최되고 유골 봉환이 일부 추진됨.
 - 한일 유골협약은 노동자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분들의 유골조사에 중점을

8) 1974.3.11 주일대사가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낸 문서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9) 상동

두고 진행되었으나, 유골 봉환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유텐지(祐天寺)에 보관된 군인·군속 유골을 중심으로 교섭이 이루어졌음.

- 2008년 1월 23일부터 2010년 5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423위 유골이 봉환되어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됨. 유텐지에 보관되었던 유골 중 우키시마마루 피해자 유골과 본적지가 북한 지역을 제외한 유골은 전부 국내로 봉환되었음¹⁰⁾.

※ 이 시기 유골 봉환은 이전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데, 일본 정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 및 유골 수습보관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위원회가 이것을 번역하여 유족에게 제공하고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 희망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추도식을 거행한 후 유골을 송환했음. 추도식에는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외무대신, 후생대신)가 참석하여 사과를 표명했으며, 유족의 항공료와 숙박비, 유골 수송비는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조의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음¹¹⁾.

4. 향후 과제

1) 기본원칙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적 책무임을 자각하고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을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유골을 봉환하지 못하더라도 사망경위와 유골 실태에 대해 유족에게 설명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음.
- 유골 봉환 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유족에게 사망경위와 유골 보관 경위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 2008년 이후 유텐지 보관 유골 봉환시에는 일본 정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 및 유

1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훗카이도 삿포로 별원 소장 유골조사』 2017, 24 쪽.

11) 상동, 22~24 쪽.

골 수습보관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이것을 번역하여 유족에게 제공하고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 희망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추도식을 거행한 후 유골을 봉환함. 추도식에서는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외무대신, 후생대신)가 참석하여 사과를 표명했고 유족의 항공료와 숙박비, 유골 수송비는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조의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함.

- 피해자와 그 유족의 존엄성을 회복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견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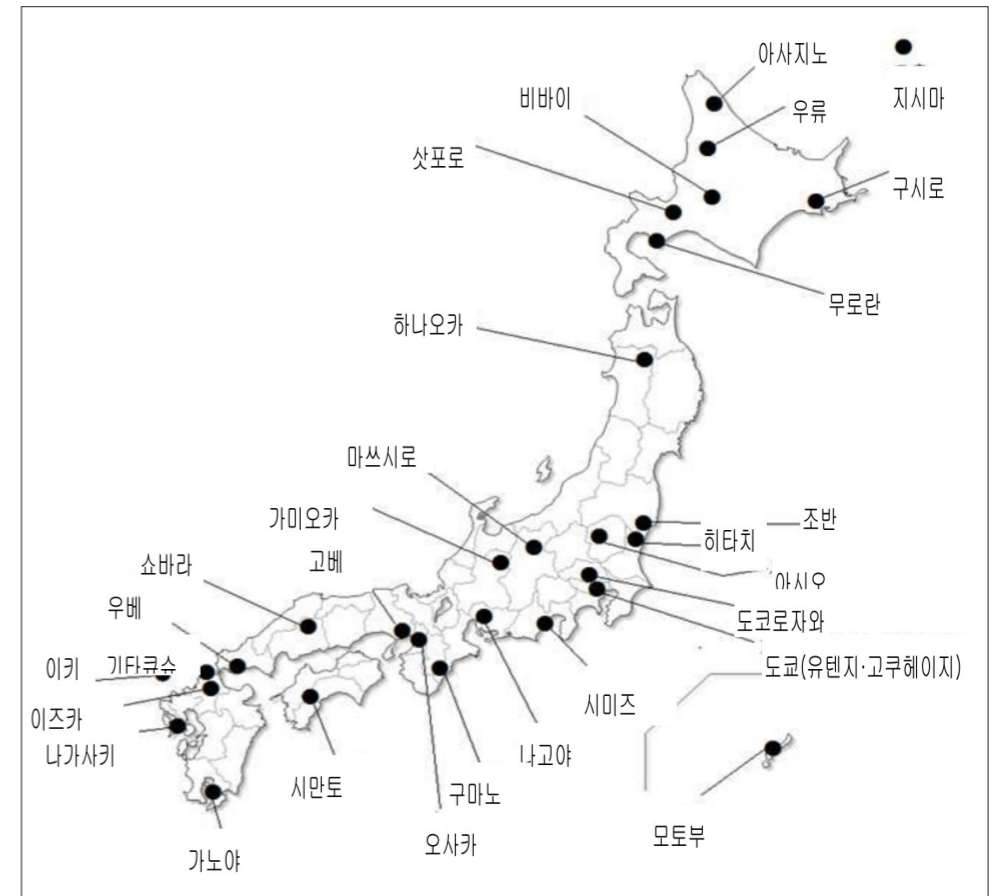
2) 남북일 공동 대응

- 북한지역에도 강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있고, 성명밖에 파악이 안 되는 유골이 대부분이며, 합골된 경우도 있어 유골을 남북한으로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사망경위 등 조사와 유족 찾기 등을 감안했을 때 민간 협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남북한 및 일본의 협력이 필요함.
 - 유골 봉환은 인도적인 문제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기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노동자 유골 문제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망한 군인·군속 유골 봉환을 위한 노력도 필요
 - 2005년 이후 진행된 한일 정부 간 유골협의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남북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공동 대응 체제를 수립하고 과제와 우선순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측과 교섭을 위해서는 단일 창구가 필요한 바, <남북 정부 + 남북 민화협 + 일본 시민단체>를 기본으로 하여 <남북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조사 및 봉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 사망자 명부, 유골 실태 관련 자료를 남북일이 공유
 - 유텐지에 보관된 북한 피해자 유골의 봉환을 위해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유텐지 유골명부, 사망경위 관련 명부를 북한 측에 제공
 -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게 유골조사와 봉환을 위한 실무교섭 요구
 - 남북 정부가 공동으로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해외 유골조사 및 봉환에 한국과 북한 유족이 참여하고 유족 DNA 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

<붙임1> 한국인 군인·군속 유골 봉환 개요

년월일	유골 수(위)	유골 봉환 내역
1948. 2. 3 1948. 5.31	456 330	G.H.Q지시에 의거하여 후생성이 송환한 것으로 추정됨. 유족 전달 여부 등 관련 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1958.5.16 1958.11.28		구레 지방복원부 해군 관계 유골 874, 후쿠오카현 육군 관계 유골 1,454위 총 2,328위 후생성에 위탁(1971.6.29 유텐지에 2,326 위탁)
1970. 7. 1	1	일본인 덕적도 유골 수습단장이 서울 소재 일본 대사관에서 유족에게 인도
1971. 3.17	1	외무성 동북아과 직원이 서울 일본대사관에서 유족에게 인도.
1971.6.29		후생성에 안치했던 유골 2,326위를 유텐지로 이관
1971.11.20	246	일본 외무성 직원이 부산공항에서 한국 외무부 직원의 입회 하 유족대표로서 재단법인 부산영원 이사장 정기영에게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인도(유족 인도 11.29 214위, 1977.2.28 24위)
1974.12.20	911	부산공항에서 수송 책임자 후생성 정무차관이 유해 911위를 한국 보건사회부 차관에게 인도(유족인도 12.20 641위/ 1977.2.28 1위, 1977.2.28 부산 영락공원에 납골 269위)
1976.10.28	22	후생성원호국 조사과장과 2명의 직원 및 외무성직원 1명을 동행하고 나리타공항에서 부산공항으로 들어 와 부산공항에서 22위를 한국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장에게 인도
1978.3.30	1	후생성원호국 조사과장과 직원 1명이 동행, 나리타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지고 와, 동 공항에서 한국 보건사회부 사회과장에게 인도
1982.12.7	5	후생성원호국 업무제1과장과 직원 1명이 나리타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지고 와, 동 공항에서 일본대사관 직의 입회하에 한국 보건복지사회부 사회과장에게 인도
1984.4.24	1	후생성 원호국업무제1과장과 직원 1명이 나리타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지고 와, 동 공항에서 일본대사관 직원 입회하에 한국 보건복지사회부사회과장에게 인도
1998. 3.10	4	황해도 출신 학도병 1위, 제주도 출신 3위의 유골을 후생성에서 한국 외교통상부로 인도
2005.6.16	1	외무성 직원이 김포공항으로 가지고 와 보건복지부 직원에 전달
2008.1.23	101	유텐지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봉환해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
2008.11.2	59	유텐지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봉환해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
2009.7.9	44	유텐지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봉환해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
2010.5.19	219	유텐지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봉환해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
합 계	2,072	

<붙임2> 지역별 사망자 및 유골 봉환 실태(2017.4 현재)



日帝強制動員朝鮮人遺骨問題の 歴史的経緯と現況

南相九(東北アジア歴史財団)

1. 遺骨問題とは

- 遺骨問題は、日帝が国家政策により朝鮮人を軍人・軍属として戦地に、労働者として炭鉱等に強制的に動員したにもかかわらず、終戦後には国籍が変わったとの理由等から遺骨を遺族に返さなかったことにより発生した問題である。
日本政府と企業が終戦後に朝鮮人遺骨の所在に対する調査と奉還責務を放棄したことは非人道的な仕打ちである。

※日本は2016年3月23日に「戦没者の遺骨収集の推進に関する法律」を制定したが、戦没者の遺骨収集を国の責務として規定し、2024年までを遺骨の調査と奉還の集中実施期間として定めている(対象は日本人に限定される)。

- 遺骨問題は、植民地被害が今なお続いていることを示すものであり、南北、そして日本が共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ある。
遺骨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人道的なレベルで遺骨を奉還すると同時に、彼らが具体的にどのように動員され、どのような被害を受けたのかについて歴史的事実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しかし、国家レベルで使命感を持ち、心を尽くして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方策を設けた記憶ありません。日帝により無念のうちに命を落とされた方々を常時的に探し、

連れて帰ろうという意志を持たなければ、私たちは未だ日帝植民地の影響から脱却できずにいるのです。」(2016年12月19日、太平洋戦争補償推進協議会代表李熙子)

2. 歴史的経緯及び実態

1) 軍人・軍属

- 海外の戦地で死亡した朝鮮人の軍人・軍属は、名簿上では21,919人であるが、日本政府が1945年8月以降に韓国政府を通じて送還した遺骨は2,072柱に過ぎない(※添付1参照)。
解放前に送還した遺骨は、海軍関係の2,433柱である(陸軍関係の資料は残っていない)。

※1971年に日本政府が提供した『旧日本軍在籍朝鮮出身死亡者連名簿』を根拠とする、朝鮮人が100人以上死亡した地域

死亡地	死者数	死亡地	死者数	死亡地	死者数
フィリピン	2,597	マリアナ	335	台湾	458
インドネシア	2,280	クエゼリン島	310	中国湖南省	219
サイパン	1,101	ペリリュー島	254	中国湖北省	134
ニューギニア	1,076	ミリ	214	中国地域	809
パラオ	632	ブラウン	211		
ギルバートタラワ	564	ラバウル	188	舞鶴	481
ヒレバス島	513	硫黄島	139	沖縄	267
トラック島	484	バシー海	101	東京	150
ビルマ	453	ブドー	114	四国	131
ギルバート	452	メレヨン	109	日本全域	766
グアム	358	ソロモン	101		
ルソン	344	ソ連北千島	543	朝鮮	290

- 海外の戦地で死亡した日本人の軍人・軍属は約 240万人であり、これまでその約半

数の127万人の遺骨が奉還されたが(※添付2参照)、この過程で朝鮮人遺骨問題は別途議論されていない。

日本に奉還された遺骨のうち、身元の確認や遺族の確認ができなかった遺骨は、1959年に日本政府が建設した千鳥ヶ淵戦没者墓苑に安置された。

※「散乱している遺骨をかき集めるというやり方であった。その当時は、同じ部隊で戦ったため、到底、この人が日本人であるとか台湾人であるとか、区別のしようがなかった」、「台湾人であるとか朝鮮人であるとかというように区別できる方法はない。ましてやそれが判明して置いてく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考えられもしないこと」(参議院厚生労働委員会、2005年6月28日、尾辻秀久厚生大臣)

このように、日本人の遺骨奉還過程において、意図せずに韓国、北朝鮮、台湾出身者の遺骨が日本人の遺骨に混じって送還されており、日本の国家施設に納骨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これらの政府に対し、これについての説明や了解を求めている。

日本政府は、2003年6月から希望する日本の遺族に限って国費でDNA鑑定を実施しているが、2017年7月までに2,016件に対する鑑定を実施しており、そのうち1,084件の身元が判明した。

- 現在、朝鮮人軍人・軍属の遺骨712柱が東京所在の祐天寺に安置されているが、北朝鮮地域出身者431柱、韓国出身者281柱(浮島丸事件272柱を含む)である(※祐天寺が保管する遺骨の現況確認が必要)。
浮島丸事件の遺族らは、同事件に対する日本政府の爆沈事実の認定と謝罪を要求し、遺骨(280人)の奉還を拒否
- 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ニューギニアなど海外の戦地とシベリア捕虜収容所で死亡した朝鮮人軍人・軍属の遺骨の実態に対する調査は実施されていない。

2) 労働者

- 強制動員された朝鮮人労働者の死亡者数と国外に残された遺骨の数に対する正確

な実体把握は難しい状況である。

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活動結果報告書(2016)は、1939年以降に朝鮮半島以外に動員された労働者数を1,045,962人と把握しており、死亡者数と残された遺骨の数についての言及はない。

※洪祥進(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事務局長)は、「1945年2月現在で『46,000+ α 』で、1945年3月以降の長崎と広島での被爆犠牲者と日本各地での空襲犠牲者を含めば、強制連行の犠牲者は最低約6万人と推定される(1962年2月19日に外務省が作成した『韓国人移入労働者数について—討議用資料』)」という点を根拠に、解放後に本国に持ち帰った遺骨を除いても、現在、日本国内に残されている遺骨は少なくとも5万體と推定されると主張(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会発足1周年記念国際シンポジウム—真実と和解、未来のための真相糾明—資料集、2004年11月10日)

- 日本政府は、民間人労働者の遺骨は国家と雇用関係がなかったことを理由に国家責任を否定し、韓国政府も政策的に関与していなかったが、2004年12月27日、盧武鉉大統領が日韓首脳会談において、小泉純一郎総理に対し、戦時中に死亡した民間徴用者の遺骨収集に対する協力を要請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両国政府レベルで初めて労働者遺骨奉還問題が議論され、実態調査を実施した。
2005年5月から2010年2月まで日韓間において局長級協議7回、実務者級協議9回が開催された。
2011年以降、遺骨協議の代表が強制動員委員会から外交通商部東北アジア局に変更されたが、遺骨奉還に関する議論は進捗していない。
現在、韓国政府レベルでの労働者遺骨奉還は、行政安全部過去史関連業務支援団にてサハリンの韓国人の遺骨を中心に推進。
- 日韓遺骨協議を通じて日本全域に散在する強制動員被害者の遺骨実態・実地調査を実施したが、2015年4月に日本政府が韓国側に提供した実態調査資料によると、朝鮮人の遺骨を安置している施設は339ヶ所であり、遺骨は2,798柱である。
- 2,798柱のうち個性が確認されたものは1,337柱(氏名確認1,134柱)、身元が明確に確認された遺骨は167柱であり、強制動員され戦時中に死亡したかどうかは不明確である。

- 遺骨調査には、全日本仏教会が全国的に調査に乗り出し、西本願寺、東本願寺は宗派レベルで調査を実施した。

※日本内の朝鮮人遺骨の実態については、行政安全部過去史関連業務支援団ホームページ(<http://www.pasthistory.go.kr/etc2sInc/project.do>)を参照

3) 遺骨奉還の歴史的経緯

・ 植民地から独立した朝鮮は分割占領され、最終的に南朝鮮(大韓民国)と北朝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分断されたことにより、遺骨奉還問題は外交問題に変質した。

・ 遺骨の奉還は、1947年2月2日に連合軍総司令部の指示により再開されたが、遺族(親戚)が38度線以南に居住する者に限定された。

- 具体的には、1948年2月3日に4,597(遺骨 456)柱、5月31日に3,046(遺骨330)柱が南朝鮮過渡政府に引き渡された。

・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発効後、朝鮮人遺骨に対する個別の名簿の照会が増え、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も遺骨問題に積極的に介入し始めると1)、厚生省は1954年8月、外務省に朝鮮出身軍人・軍属戦没者名簿を提供し、遺骨の送還に外務省が積極的に乗り出すよう提案した。

2)外務省は「本件は本来、日韓会談の議題であるが、①相手方を誰にするのかと、②遺骨の引渡しにあたり弔慰金等の問題が発生し、③一般徴用者との関連もあるため、時期的にみて今が適当な時とは考えられない」と回答2)した。

・ 韓国人遺骨の奉還問題を複雑にさせていたもう一つの原因は、朝鮮人の遺骨が南朝鮮と北朝鮮の遺骨に変わったという点であった。

外務省アジア1課の「北朝鮮との関係のため、韓国に遺骨を引き渡すには様々な問題が発生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という見解3)と「韓国人の遺骨全部を韓国に引き渡し

1) 1955年12月22日アジア局第5課「朝鮮出身戦没者の遺骨送還に関する件」(外務省公開文書)

2) 1954年8月4日アジア局第5課「朝鮮出身戦没者に関する件」(外務省公開文書)

3) 1956年6月7日アジア第1課「朝鮮人戦没者遺骨問題に関する件」(外務省公開文書)

た場合、遺骨に対する適当な引渡請求権者(親族)が日本にいる場合、朝総連が政治的な目的で日本の裁判所に訴訟を申し立てる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という北東アジア課の見解4)は、日本政府の立場を象徴的に示している。

韓国政府は、講和条約の発効前からすでに朝鮮人遺骨について出身地の如何を問わず、一括して韓国に返還することを要求していたが、日本政府は、遺骸は遺族の所有に帰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理由から一括返還には応じられないとしたため、両国間の意見が対立し、交渉は進展しなかった。

一方、北朝鮮の遺骨については、北朝鮮から日本人を帰還させる際に使用される船舶を利用して送還しようという計画もあったが(1955年)、分断という問題のために実現せず5)、その後も赤十字社を通じて遺骨を送還しようとする動きはあったが、送還には至らなかった6)。

・ 1969年の第三回日韓定期閣僚会談において、両国政府は「現在、日本政府が保管している第2次世界大戦中に戦没した韓国人の遺骸の引渡しが速やかに行われることを希望し、このためにまず確認が可能な遺族及び縁故者に当該遺骸を渡す」ことに合意した7)。

日本政府は、韓国の情勢等を理由に、遺族に個別の死亡通知を行っていないが、1971年に韓国政府の要請により21,919人が登載された『旧日本軍在籍朝鮮出身死亡者連名簿』を送付した。

第3回日韓定期閣僚会談に伴う遺骨の奉還をみると、まず韓国政府が遺骨の受領を希望する遺族を把握し、その名簿と申請者の身元を証明する資料を日本政府に渡した。

日本厚生省は、遺骨受領申請者の戸籍謄本(抄本)で身元関係を調査し、また、申請者の現居住地を確認して引渡しが適当であると認めた遺骨を韓国に送還し、遺族に渡した。

・ 1974年1月25日、駐日韓国大使館は日本厚生省が保管中であった朝鮮人遺骨のうち韓国出身者は全部、北朝鮮出身者はその遺族が韓国に居住する場合に限り、遺

4) 1966年11月16日北東アジア課「韓国人遺骨の引渡しに関する法律上の問題について」(外務省公開文書)

5) 1955年12月22日アジア局第五課「朝鮮出身戦没者の遺骨送還に関する件」(外務省公開文書)

6) 1960年2月5日北東アジア課「朝鮮出身軍人軍属の遺骨返還に関する件」、1966年2月4日北東アジア課「厚生省に保管している戦没韓国人の遺骨問題について」(外務省公開文書)

7) 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1997年

骨を3月10日までに韓国に送還するよう日本外務省に申請した。

その後も韓国政府は、「従前の方式では、結果的に百年後も母国に奉還できない遺骨が発生するかも知れない」8)として、南朝鮮出身の遺骨の一括送還を主張した。

しかし、日本外務省は1969年の第3回日韓定期閣僚会談の了解事項に従って送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韓国側の要求を拒否した。

日本側が南朝鮮出身の遺骨の一括送還に反対した理由について、駐日韓国大使館は「北朝鮮とは法律関係が確立されておらず、特に、北朝鮮の請求権に対して日本が弱い立場にあるため、一括して引き渡す場合、関係者から訴訟が申し立てられれば、遺族主義を採用している関係法規に照らして政府の敗訴は確実であり、本件が世間の関心の対象となれば、親北朝鮮国会議員らが戦後29年に至るまで北朝鮮出身分の北朝鮮奉還のために何ら努力がなされていない理由が何か追及され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さらには北朝鮮との国交樹立を促されることになる」ため、日本政府が反対していると外交部に報告した9)。

- 1984年以降には、遺族の判明が困難になり、個別奉還が進捗しない実情を考慮し、本籍地が韓国である遺骨を一括奉還する方向で交渉がなされた。

1989年に日韓政府の実務レベルで一括返還に対して基本的な合意がなされ、同年12月以降、返還方法等に関して交渉を重ねたものの、両国政府間の正式合意には至らなかった。

- 2004年12月17日に開催された日韓首脳会談において、盧武鉉大統領は小泉純一郎総理に韓国人民間徴用者の遺骨奉還に対する協力を要請し、日本政府がこれを受け入れ、日韓政府間において遺骨協議が開催され、遺骨の奉還が一部推進された。

日韓遺骨協議は、労働者として強制動員され死亡した方々の遺骨調査に重点を置いて進行されたが、遺骨の奉還は身元確認が可能な祐天寺に保管されている軍人・軍属の遺骨を中心に交渉が行われた。

2008年1月23日から2010年5月19日まで4回にわたり423柱の遺骨が奉還され、国立望郷の丘に安置された。祐天寺に保管されていた遺骨のうち浮島丸被害者の遺骨と本

8) 1974年3月11日に駐日大使が外交部長官宛に送った文書(国家記録院所蔵文書)

9) 同上

籍地が北朝鮮地域であるものを除いた遺骨は、すべて韓国国内に奉還された10)。

※この時期の遺骨奉還は以前とは大きな差があるが、日本政府が遺族に死亡経緯及び遺骨の収集保管経緯と関連資料を提供すれば、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会がこれを翻訳して遺族に提供し、地域別に説明会を開催、希望者を日本に招待して追悼式を行ってから遺骨を送還した。追悼式には日本政府高位官僚(外務大臣、厚生大臣)が出席して謝罪を表明し、遺族の航空費と宿泊費、遺骨輸送費は日本政府が負担し、弔慰金30万ウォンを遺族に支払った11)。

4. 今後の課題

1) 基本原則

- 国民の生命と財産の安全を守ることが国家的責務であることを自覚し、国家が国民を守れずに国民が甘んじて受けざるを得なった苦痛を解決するという観点から、韓国政府が積極的に解決に向けて取り組むことが必要である。遺骨を奉還することはできなくても、死亡経緯と遺骨の実態について遺族に説明する責任が韓国政府にある。
- 遺骨の奉還時には遺族の意思を尊重し、遺族に死亡経緯と遺骨の保管経緯をできる限り詳細に説明し、関連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2008年以降、祐天寺に保管されている遺骨の奉還の際には、日本政府が遺族に死亡経緯及び遺骨の収集保管経緯と関連資料を提供すれば、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会がこれを翻訳して遺族に提供し、地域別に説明会を開催、希望者を日本に招待して追悼式を行ってから遺骨を奉還している。追悼式には日本政府高位官僚(外務大臣、厚生大臣)が出席して謝罪を表明し、遺族の航空費と宿泊費、遺骨輸送費は日本政府が負担し、弔慰金30万ウォンを遺族に支払っている。

10) 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北海道札幌別院所蔵遺骨調査』2017、24頁。

11) 同上、22～24頁。

- 被害者とその遺族の尊厳性を回復するという人道主義的観点を堅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日朝韓の共同対応

- 北朝鮮地域にも強制動員され死亡した被害者とその遺族がおり、名前しか把握できない遺骨がほとんどであり、合骨されている場合もあるため、遺骨を韓国・北朝鮮に区別することが不可能であるという状況を考慮すれば、南北が共同で対応する必要がある。

- 被害者の死亡経緯等の調査と遺族探し等を考えると、民間の協力では限界があるため、韓国と北朝鮮、日本の協力が必要である。

遺骨の奉還は、人道的な問題として南北関係を解くためのきっかけを作ることのできる事業であり、労働者の遺骨問題だけではなく、海外で死亡した軍人・軍属の遺骨奉還のための努力も必要

2005年以降に行われた日韓政府間の遺骨協議の成果を活用するのが効果的

- 南北共同対応のためには、共同対応体制を樹立し、課題と優先順位を具体化する必要がある。

日本側との交渉のためには単一の窓口が必要であるため、＜南北政府 + 南北民和協 + 日本市民団体＞を基本とし、＜日朝韓強制動員被害者遺骨調査及び奉還推進委員会＞を構成する方法を検討

死亡者名簿、遺骨の実態関連資料を日朝韓が共有

祐天寺に保管されている北朝鮮被害者の遺骨奉還のために、韓国政府が保管している祐天寺の遺骨名簿、死亡経緯関連名簿を北朝鮮側に提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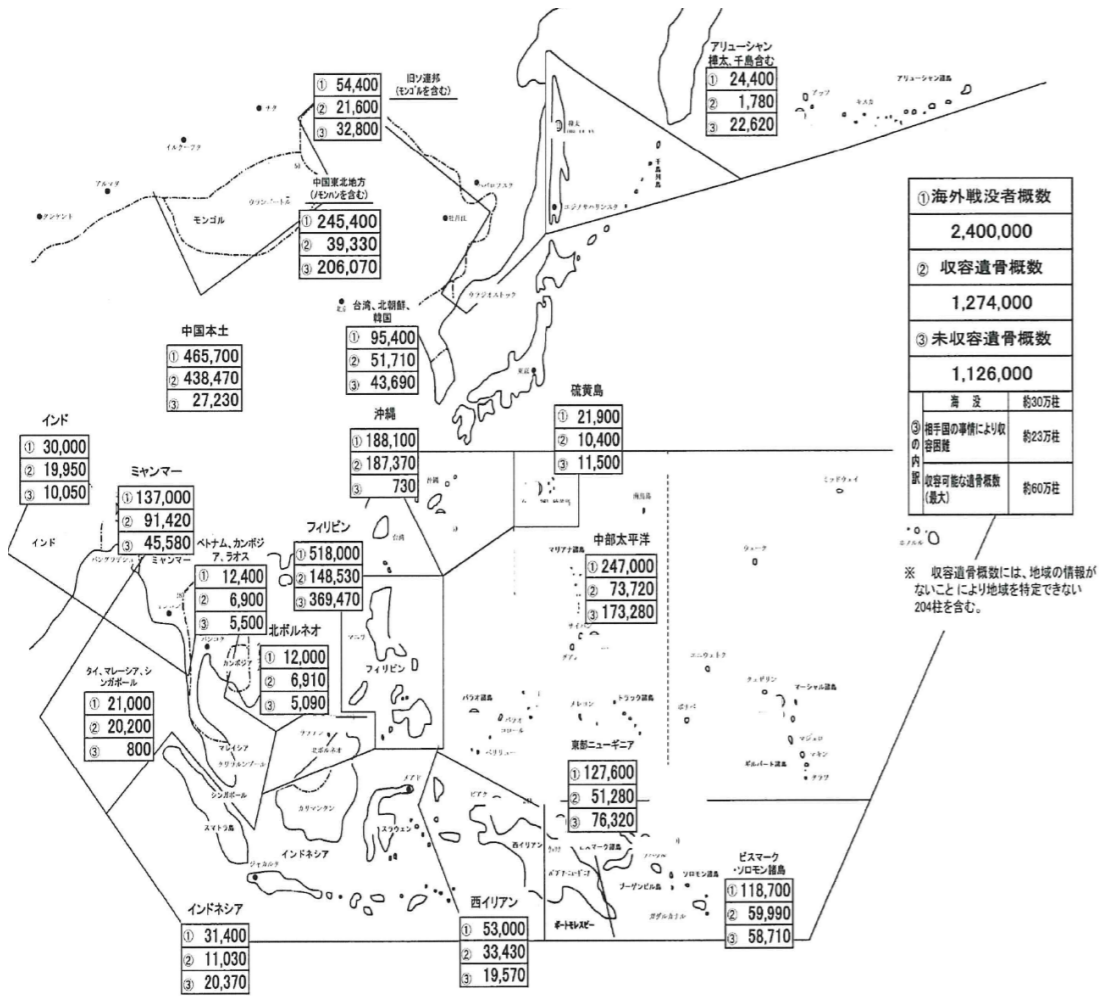
この結果を基に、日本政府に対して遺骨調査と奉還のための実務交渉を要求

南北政府が共同で、日本政府が実施している海外遺骨調査及び奉還に韓国と北朝鮮の遺族が参加し、遺族のDNA検査も実施するよう日本政府に要求

<添付1> 韓国人軍人・軍属の遺骨奉還概要

年月日	遺骨数(柱)	遺骨奉還内訳
1948年2月3日 1948年5月31日	456 330	GHQの指示に基づき厚生省が送還したものと推定される。遺族に渡されたかどうかなど関連状況が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
1958年5月16日 1958年11月28日		呉地方復員部海軍関係の遺骨874、福岡県陸軍関係の遺骨1,454柱、計2,328柱を厚生省に預託（1971年6月29日、祐天寺に2,326預託）
1970年7月1日	1	日本人徳積島遺骨収集団長がソウル所在日本大使館で遺族に引渡し
1971年3月17日	1	外務省東北ア課職員がソウルの日本大使館で遺族に引渡し
1971年6月29日		厚生省に安置していた遺骨2,326柱を祐天寺に移管
1971年11月20日	246	日本外務省職員が釜山空港で韓国外務部職員の立ち会い下、遺族代表として財団法人釜山ヨンウォン理事長の鄭ギヨンに韓国政府の承認の下に引渡し（遺族引渡し：11月29日214柱、1977年2月28日24柱）
1974年12月20日	911	釜山空港で輸送責任者である厚生省政務次官が遺骸911柱を韓国保健社会部次官に引渡し（遺族引渡し：12月20日641柱/1977年2月28日1柱、1977年2月28日釜山永楽公園に納骨269柱）
1976年10月28日	22	厚生省援護局調査課長と職員2人及び外務省職員1人を同伴して成田空港から釜山空港に入り、釜山空港で22柱を韓国保健社会部環境衛生課長に引渡し
1978年3月30日	1	厚生省援護局調査課長と職員1人が同行、成田空港から金浦空港に持参し、同空港で韓国保健社会部社会課長に引渡し
1982年12月7日	5	厚生省援護局業務第1課長と職員1人が成田空港から金浦空港に持参し、同空港で日本大使館職員の立会いの下に韓国保健福祉社会部社会課長に引渡し
1984年4月24日	1	厚生省援護局業務第1課長と職員1人が成田空港から金浦空港に持参し、同空港で日本大使館職員の立会いの下に韓国保健福祉社会部社会課長に引渡し
1998年3月10日	4	黄海道出身学徒兵1柱、済州等出身3柱の遺骨を厚生省から韓国外交通商部に引渡し
2005年6月16日	1	外務省職員が金浦空港に持参し、保健福祉部職員に伝達
2008年1月23日	101	祐天寺に安置されていた遺骨を奉還し、天安国立望郷の丘に安置
2008年11月2日	59	祐天寺に安置されていた遺骨を奉還し、天安国立望郷の丘に安置
2009年7月9日	44	祐天寺に安置されていた遺骨を奉還し、天安国立望郷の丘に安置
2010年5月19日	219	祐天寺に安置されていた遺骨を奉還し、天安国立望郷の丘に安置
合計	2,072	

<添付2>地域別死亡者及び遺骨奉還実態 (2017年4月現在)



국제인권규범과 유골문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遺骨問題に対する 国際人道法と国際人権法

趙時顯
(民族問題研究所)

국제인권규범과 유골문제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I. 유골 문제의 전개와 과제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하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었다가 일본의 침략전쟁이 전개된 기간 동안 사망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유해와 유골에 관하여 제기되는 문제(이하 유골문제)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시론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그 동안 일제의 국가총동원체제 아래에서 노무동원과 군사동원된 노동자, 군인·군속 등의 신분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유골 봉환/반환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다. 유골문제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남상구 박사의 앞의 발제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틀을 염두에 두고 주요 사실들을 짚어보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유골문제는 해방 직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 스스로가 먼저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본에서 해방된 한국(한반도, Korea)는 남북으로 분할되어 승전국 미국과 소련의 군사점령 통치를 받았고, 미군정은 일정 정도 봉환에 관여하였다. 군정이 끝난 뒤 각각 정통성을 주장하는 국가와 정부가 남과 북에 세워진 분단과 냉전 상황은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장애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뒤처리 역시 남북이 배제된 채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를 통해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골문제는 물론이고 일제의 강점과 식민지배문제는 허다한 안건들 속에 끼지도 못했다. 이후 남한과 일본 사이에 새롭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맺기 위해 전개된 한일회담에서 유골문제는 의제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1955년 일본정부는 “조의금 등의 문

제”와 “일반징용자와의 관련”을 들며 논의를 뒤로 미뤘다.¹⁾ 한국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식민 지배상문제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지만 1965년 국교정상화와 함께 체결된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식민지배 문제는 한일병합조약 등이 “이미 무효”라는 조항으로,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청구권협정’의 형태로 다루어졌다. 이 때 체결된 5개의 한일간의 조약 어디에서도 유골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1965년 이후 유골문제는 한일 정부 사이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는 등 최근까지 몇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 문제를 다루는 틀로는 1969년 한일 정기 각료회담에서 합의된 ‘양해사항’도 있는 것 같지만 정식으로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은 아직까지 없다. 현재까지는 그때그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협력을 구하는 실무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일본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 의한 유해조사와 발굴, 유골반환 노력이 한국의 단체들과도 연계하면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4년 발족하여 2015년 활동을 종료한 강제동원위원회, 이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유골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6년의 ‘전몰자의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戦没者の遺骨収集の推進に関する法律)로 현재 구 일본군의 유해 조사와 발굴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선출신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없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미일 간 유골 관련 협력으로 타라와 등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격전지의 유해가 일괄로 일본정부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는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범죄의 증거로서의 유골문제가 제기된 것은 1989년 일본의 도쿄 신주쿠에 있는 구 육군 군의학교 철거 부지의 건설현장에서 발굴된 100구 이상의 인골에 대해 주민들이 전쟁범죄와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이들의 화장과 매장은 국제법과 형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주민소송을 들 수 있다²⁾.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재무회계상의 행위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주민소송의 한계로 패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재무회계상의 행위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주민소송의 한계로 패소하였다.

유골의 반환이 일본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는 우키시마 호 소송, 가마이시 소송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1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유골인도[遺骨引渡]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재판권 문제로 각하[却下]되었고(2002.6.5. 결정), 2002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유골을 송환받고도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부

1) 1954.8.4.、アジア局第5「朝鮮出身戦者関する件」; 남상구의 발제문 재인용.
2)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의 홈페이지, 32 번 사건.

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 인도청구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일본에서 이른바 군인·군속재판에서 유족들은 야스쿠니합사 철회와 함께 유골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도쿄지방법판소 2006.5.25. 판결2006년). 앞으로 소송 운동을 통한 유골문제의 제기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은 이를 전면적으로 문제 삼거나 체계적인 전담기구를 두지 않았고, 관련 활동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외교부를 경유하여 일본정부의 협조에 기대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일본정부는 전쟁터(일본의 본토 포함)에 강제동원된 식민지 출신 군인, 군속, 군 ‘위안부’ 등과 노동자들의 시신이나 유해, 유골을 어떻게 하였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일제의 군사점령지역에 들어간 기타 민간인들의 경우는 별도로 문제된 바가 없는 것 같다. 더욱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이들의 생사 확인이나 유해의 수색이나 발굴을 위한 노력을 별도로 기울이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이따금 일본정부로부터 사망자명단을 전달받았을 뿐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망통지도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전 이들의 일본국적을 박탈한 일본은 유골문제에 있어서 자국민 중심의 활동과 입법을 했을 따름이다. 하지만 유골문제는 각국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인 것만은 아니고 국제적인 법과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삼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국가의 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국가와 개인의 권리라는 형식으로 규율한다. 인간이 있고, 사회와 국가가 있으며, 여기에는 법이 작동한다.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이 법적으로 확립된 상황에서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유골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단순히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결방안이 아니라 관련 국제법과 국제사례에 입각한 새로운 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유골문제와 관련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원칙들을 살펴본다.³⁾

3) 아래는 필자의 다른 글에서 관련 사항을 옮겨와 정리하였다. 조시현, 조선 출신 군인·군속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문제와 국제법,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주최, 『야스쿠니 문제의 UN 인권기구 제기를 위한 국제회의: 국제인권의 시점에서 야스쿠니를 보다 III』, 자료집, 2018.10.26., 42 쪽.

II. 유골문제의 범위

남한과 북한이 돌려받아야 할 유해와 유골의 범위와 관련하여 먼저 일본의 관련법인 전몰자 유골수습법을 살펴보자. 제1조는

“이번 대전(大戦)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여 전몰자의 유족을 비롯하여 이번 대전을 체험했던 국민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직 많은 전몰자의 유골 수습이 행해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전몰자의 유골수습의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전몰자 유골수습의 실시에 관하여 기본으로 되는 사항 등을 정하는 것에 의해 전몰자 유골수습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총합적이고 확실하게 강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一条 この法律は、今次の大戦から長期間が経過し、戦没者の遺族をはじめ今次の大戦を体験した国民の高齢化が進展している現状において、いまだ多くの戦没者の遺骨の収集が行われていないことに鑑み、戦没者の遺骨収集の推進に関し国の責務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戦没者の遺骨収集の実施に関し基本となる事項等を定めることにより、戦没者の遺骨収集の推進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確実に講ずることを目的とする。]

라고 규정한다. 제2조는 “전몰자의 유골수집”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이번의 대전(1937년 7월 7일 이후의 사변을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한 오키나와, 도쿄, 오가사와라, 유항도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본국(本邦)의 지역 또는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우리나라의 전몰자(이번 대전의 결과, 1945년 9월 2일 이후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강제억류된 자로서 당해 강제억류중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유골인데 아직 수용(收容)되거나 본국에 송환되지 않은 사람을 수용하여, 본국에 송환하고 당해 전몰자의 유족에 인도하는 것 등을 말한다.”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戦没者の遺骨収集」とは、今次の大戦(昭和十二年七月七日以後における事変を含む。以下同じ。)により沖縄、東京都小笠原村硫黄島そ

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本邦の地域又は本邦以外の地域において死亡した我が国の戦没者(今次の大戦の結果、昭和二十年九月二日以後本邦以外の地域において強制抑留された者で、当該強制抑留中に死亡したものを含む。以下同じ。)の遺骨であつて、いまだ收容され、又は本邦に送還されていないものを收容し、本邦に送還し、及び当該戦没者の遺族に引き渡すこと等をいう。]

전몰자에 관해서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시기를 1937년-1945년 사이의 전쟁으로 한정하고, 일본 본토와 식민지, 군사점령지와 전투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몰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러한 유골수습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있다(제3조).

한국인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인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핵심적으로 강제동원 피해가 겹치는 시기로 설정되어 있고 당시 일본법에 따라 일본국적이었던 조선인들을 제외한다면 일본법제 안에서도 모순이다. 관련국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 같고 남북의 입장에서는 향후 협의에서 돌파해야 할 대목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을 합사한 경우처럼 사망시점과 유골 반환 시점 사이의 국가변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방적 국적박탈로 인한 차별문제에 대한 기본 대응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한국의 경우 대상 시기에 대하여 강제동원을 넘어 일제강점기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의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戰傷病者戰歿者遺族等援護法)”은 군인·군속 등의 공무상 사망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전몰자라는 용어는 국제인도법에서 쓰이는 “전쟁의 희생자”(war victims)라는 말과 구별된다. 후자에는 전상자 이외에도 전쟁포로와 민간인이 포함된다.

유골문제는 전쟁이 있는 동안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쟁과 관련된 법문제도 제기한다. 특히 전쟁 중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자국의 병사는 물론 적국의 병사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의무를 지며, 이를 국제적으로 규범화한 것이 전쟁법, 무력충돌법 또는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이다.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망자를 수색, 신원확인, 매장, 가족에의 통보, 유해송환 등의 의무를 진다.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를 다루는 국제인권법 역시 죽음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평화적 생존권, 가족의 권리, 중대한 인권피해자의 권리 등을 중심으로 관련된 법원칙을 발전시키고 있다.

III. 적군, 아군, 식민지병사의 구분

근대국가가 그 구성원의 죽음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하여 근대 국제법은 우선 국가와 그 구성요소를 분리하고, 그 요소의 하나인 국민의 증감이나 개별적인 생사는 국가의 운명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어느 국민의 죽음은 그 국가의 존재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원칙상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에 입각한다고 해도 국가가 국민의 삶과 무관할 수 없음을 국가의 기원이나 성격 또는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분명하다. 근대국가는 인민의 행복이나 복지 추구를 일반적인 목적으로 삼고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범죄나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수사나 구호 등에 나선다. 국가는 어떤 죽은 사람을 기리고 모종의 의식을 치르거나 추모시설을 만들기도 한다. 한편 인간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등과 같은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기도 한다.

전쟁과 그에 뒤따르는 죽음에 관한 국제법적 대응은 국제인도법의 발달을 가져왔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이 일어난 것 자체가 제기하는 침략전쟁인지 아닌지와 전쟁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고 이에 개입하려는 법이 아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으로 벌어지는 전투와 같은 적대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을 부과하여 제한을 가하고 또한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일어나는 인도적인 문제, 즉 전쟁으로 희생당하기 쉬운 부상자, 조난자, 전쟁포로,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이를 위하여 19세기 후반 이래 많은 국제조약들이 체결되고 있지만 국제관습법이라는 형태의 법원칙들도 확립되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적국의 군인이나 민간인 또는 내전 중에도 상대방에게 차별 없이 최소한의 인도적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병사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이 자국의 병사들에게 가르치는 군사교범은 실제 국제인도법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용된 “전쟁터에서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1929년 7월 27일의 제네바협약”(소화10년[1935] 조약 제1호, 1935.6.18. 일본에 효력발생) 역시 “국적을 묻지 않고” 인도적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 당시 일제의 국내적인 군사법제도가 이러한 국제기준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군인 사이의 관계가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군인과 군속의 신분으로서 전쟁 중에 사망한 식민지 출신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본의 전몰자 유골수습법 역시 이러한 국제인도법을 기준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일본의 침략전쟁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망자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용 등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IV. 전쟁 중의 사망자에 관한 국제인도법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방대한 국제인도법에 관한 조약들,⁴⁾ 각국의 관련 법률, 판결, 군사교범 등의 실행을 망라하여 국제인도법 관습 데이터베이스를 편찬하고 있다.⁵⁾ 여기에서는 편의상 다수의 관련 국제조약들의 조문들을 대신하여 이 규칙들(제4부 규칙 112부터 규칙 116까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규칙들에 따르면 전쟁당사국은 무엇보다

- 교전(交戰) 후는 물론 항상 사망자를 수색하고 시신을 수습하여야 한다.
- 사망자에 대한 약탈과 시신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 사망자가 속하는 전쟁당사국의 요청이나 사망자의 친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망자의 유해와 유품의 반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⁶⁾
- 사망자는 “정중하게”(respectful 또는 honorable) 매장 또는 화장하여야 하고 그 묘소를 존중하고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 사망자 시신의 처리에 앞서 사망자의 성명 등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사망증명서를 발부하며 분묘의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4) 주요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 1 협약), 제 3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 2 협약);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 3 협약), 제 120 조, 제 122 조;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 4 협약), 제 16 조, 제 27 조, 제 129 조, 제 130 조;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 1 의정서), 제 4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17 조;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 2 의정서), 제 4 조, 제 8 조.

5) <https://ihl-databases.icrc.org/customary-ihl/eng/docs/home>.

6) 제 4 협약 제 130 조는 “그 유골은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역류당국이 보관하며, 그의 근친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신속히 그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또한 제 1 협약, 제 17 조; 제 3 협약 제 120 조 참조. 제 1 의정서 제 34 조는 이러한 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협정이 없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이와 같이 전쟁의 희생자인 사망자를 발견한 경우 임시 매장과 화장, 그 후 유해와 유골의 반환까지 전쟁 중에 교전자들이 해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의 발견에서 유해와 유골의 반환까지 국제인도법이 이렇게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존중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법원은 2002년 4월 14일 제닌(Jenin) 사건과 바라크(Barake) 사건에서 사망자의 수색과 수습은 “모든 사망자에 대한 존중(respect for every dead)”에서 나오며 “아주 중요한 인도적인 행위”라고 하였고, 사망자 존중의 원칙은 많은 나라의 군사교범에서도 규정되고 있다.⁷⁾

1) 수색과 수습

국제인도법에 따라 사망과 관련하여 전투가 끝나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할 일은 사망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습이다. 이를 위해 국제인도법은 군인에게 인식표를 달도록 하고 있다. 유해발굴이나 유골수습은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다. 사망자의 확인과 수습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필요에 따라 계속되어야 한다.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제공한 사망자 연명부와 같은 자료들은 이러한 규범적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망한 장소와 사유에 대한 개괄적인 표시만이 기재되었을 뿐이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다. 더욱이 이들의 사체나 유해 또는 묘소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첨부되지 않았다. 국제인도법이 이에 관하여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또한 국제인도법 차원을 넘어서 역사자료라는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망 초기단계에서 신원확인 및 묘소 표기의 중요성은 전쟁이 끝난 뒤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해발굴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유골문제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국제인도법상 사망자의 시신을 확인하고 유골반환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라는 점이다. 일본만이 아니라 연합국들도 인도법상의 의무를 지므로 연합군이 발견한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관련 기록을 추적하고 일본의 자료와 대조할 것도 필요하다.

7)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II, Practice Part 3(2005), p. 2660.

2) 매장 또는 화장

국제인도법은 사망자의 사체 또는 시신과 유골에 초점을 두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할 경우에도 존중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29년의 제네바협약 제4조 제4문(文)은 “교전자는 더욱이 사자를 경의(敬意)를 가지고 (honourably) 매장하고, 그 분묘가 존중되고 또한 언제나 보일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1949년의 제네바협약들은 “사망자를 가능한 한 이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서 정중히(respectfully) 매장할 것”을 요구한다(제1협약 제17조; 제2협약 제20조; 제3협약 제120조; 제4협약 제130조).

전쟁범죄와 연결되기도 하는 집단화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단학살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집단매장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할 것이 필요하다. 유해발굴은 전쟁범죄에 관한 증거의 확보라는 측면도 있다. 유고슬라비아 등지 설치된 각종 국제형사법정에서 현장 검증과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사망자 존중의 원칙이 매장의식을 규율하고 있음과 이러한 장례절차의 성격상 종교와의 관련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국제인도법규의 태도에는 종교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야스쿠니신사에 조선인 전몰자들을 합사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국제인도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차 매장, 발굴, 재매장은 물론 최종 안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사망자의 종교 존중이 이루어져야한다.

※ 매장에 관한 일제의 법령

1884년 ‘묘지 및 매장취체규칙’과 ‘묘지 및 매장취체규칙에 위반하는 자의 처분방법(處分方)’이 패전까지 일제의 법령이었다. 1948년 이러한 법령 등을 정리한 것이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다.

3) 강제동원피해자의 경우

최근 일본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유해발굴사업에 있어서는 조선 등의 식민지출신들의 유해에 대해서는 송환은커녕 방치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추가적인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해 등에 대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는 군인과 군속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적용됨을 지적하고 싶다. 정식으로

군속으로 편제되지 않고 군대에 배속된 노무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실태를 감안하면 강제 동원된 노동자와 ‘위안부’들의 경우에도 관련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지가 있다.

사망자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전쟁범죄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grave breaches)로 처벌될 수 있다. 1946년 8월 미국의 마리아나 제도(諸島)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는 요치오(Yochio) 등 일본 병사들을 장교식당에서 특식으로 전쟁포로들 신체의 일부를 먹었기 때문에 “명예로운 매장”(honorable burial)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유죄로 처벌하였다.⁸⁾

V. 유골 관련 한일 간의 국제조약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은 사망자의 본국이나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유해의 반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유골 반환 문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전쟁 중(in bello)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후(post bellum)의 문제로서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등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전쟁의 피해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 또는 위령(慰靈)할 것인가의 문제 자체 역시 다루지 않는다.

한일 간에는 현재 유골, 유해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 일본정부는 한일협상에 유골문제를 “징용공 문제”를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유골문제를 협상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관철시킨 바 있다(남상구의 글). 식민지배로 발생한 모든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은 유골문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제2조 (13) (f))에서 유해문제가 다루졌고, 북미간 유해반환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⁹⁾

일본의 경우는 보다 직접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연관된 국제조약과 실행이 있다. 1956년 일소 공동선언 제5항 2문에서 소련은 “일본국의 요청에 기하여 소식불명의 일본인에 대하여 계속(引き續き)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¹⁰⁾ 구 일본군 전쟁포로들

8) 그 외에도 시신의 훼손이나 식인으로 기소된 사건으로는 호주 군사법정이 재판한 타케히코 (Takehiko) 사건, 미국 군사위원회의 기쿠치와 마후치 (Kikuchi and Mahuchi) 사건 등이 있다. 앞의 주 5 참조.

9)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외에도 베트남 종전협정과 핀란드-러시아 사이의 전사자에 관한 협정의 사례를 들고 있다. 1975 년과 1976 년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유해 교환이 있었다.

10)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Japan Joint Agreement, Signed at Moscow, 19 October 1956, United Nations

의 공동조사요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1991년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일본 대사에게 이리안 자야의 일본군 유골 3,500위를 인도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아베수상과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전적지에서 유해반환 등에 관해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거의 교전국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자국민의 유해라는 차원에서 또 국제인도법의 기준이 꼭 전쟁당사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골 반환을 위한 협상과 협정 체결에 나서야한다.

VI. 유골문제와 국제인권법

1) 인간의 존엄성과 매장에 관한 인권

국제인도법의 다른 원칙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망자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은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보충된다. 특히 사망자 존중의 원칙은,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든,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는 인권의 주체로서 살아있는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의 발로이자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망할 경우 가지는 인권에 관하여 러시아연방의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관습과 전통,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신앙을 존중하는 가운데 묻힐 권리는 인간의 존엄 보호, 자유권, 개인적 불가침권,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언론·의견과 믿음의 자유와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보장하는 러시아헌법...에서 나온다.”¹¹⁾

이처럼 자신이 죽을 때 자기가 정한 전통이나 종교적 의례에 따라 매장되고 싶다는 희망은 이렇게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사자(死者)의 인격권과 같은 개념이 나오게 된다. 사자 역시 죽음과 관련하여 현세에서 스스로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국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인격

Treaty Series, vol. 263, No. 3768, p. 112; 1956년 12월 12일 비준서 교환, 효력발생.

11) Russian Federation, Constitutional Court, the Burial case, para. 2; https://ihl-databases.icrc.org/customary-ihl/eng/docs/v2_cha_chapter35_rule115_sectionb 에서 재인용.

(personhood)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존엄과 통하며 이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같은 사건에서 코노노프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존엄한 방식으로 매장될 모든 사람의 권리는 특별한 정당화를 요구한다거나 법률상 성문의 형식으로 확보될 필요도 없다. 이 권리는 분명하게 자명하고 아마도 다른 자연권처럼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고 논쟁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고 소중한 사람을 매장하여,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자신의 인간적 품성을 표시할 기회를 가지고, 작별을 고하며, 죽은 사람이 사회와 국가에 의해 어떻게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명에서 신성한 가치와 기억의 상징을 표상하는 무덤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죽은 사람을 비통해하고, 애도하고, 추모할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¹²⁾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매장의 권리는 단지 개인의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과 가족관계나 기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애도할 권리를 연결시킨 점이다. 또한 매장과 관련하여 전통과 관습을 언급하여 이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지 집단과의 관련성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골문제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과 유족의 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2) 유족의 권리

전쟁희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인도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족들이 시신과 유해의 반환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족들이 가지는 권리를 전제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적용된 헤이그 제4협약 제46조는 점령군이 “가족의 명예 및 권리, 개인의 생명 및 사유재산과 종교적 신념 및 행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유족들의 권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전후의 국제인권법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1항은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family),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관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12) Sabanchiyeva and Others v. Russia, no. 38450/05, judgment of 6 June 2013 (extrac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Vol. 2013-III, pp. 14-15.

매장 등 사망자의 처리에 관한 유가족들의 사생활(private life)과 가족생활(family life)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한 간섭을 금지하는 판례를 발전시키고 있다.¹³⁾

유족들의 권리는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예컨대 미주인권재판소는 불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자들이 발생한 사건에서 페루 정부가 생존자의 수색과 시신의 회수에 태만하였다고 판단하고, 국가는 일종의 정신적 배상 형식으로 피해자 유해의 위치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고, 가까운 친족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는 판결을 내렸다.¹⁴⁾ 사망자의 시신이나 유해를 요구하고 돌려받을 유족들의 권리는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실종자나 사망자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해명할 국가의 의무도 확인되고 있다.¹⁵⁾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피해자와의 인간적 연대를 확인하면서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들이 가지는 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역시 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한다.¹⁶⁾ 특히 피해배상을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서 만족(滿足 혹은 陳謝, satisfaction)에는 “(c) 실종자의 행방, 납치된 아동들의 신원과 피살자의 시신에 대한 조사와 수색 그리고 시신의 수습, 신원확인 및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희망에 따르거나 가족과 공동체의 문화적 관행에 따른 시신의 재매장”과 “(d) 피해자와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의 존엄, 명예와 권리를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이 포함된다.¹⁷⁾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일본 2010년 가입, 한국 미가입) 역시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특히 국가는 최소한 실종자가 사망한 정황이나 원인, 유해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친족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유해의 위치를 확인하고, 존중하

13) 예컨대 Sabanchiyeva and Others v. Russia, paras. 117, 123. 또한 유족들이 매장에 반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 참조: Physicians for Human Rights v. Commander of IDF Forces in the Gaza Strip in 2004, Israel's High Court of Justice; https://ihl-databases.icrc.org/customary-ihl/eng/docs/v2_cha_chapter35_rule115.

14) Neira Alegría et al. v. Peru, Merits, Judgment,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series. C) No. 20 (Jan. 19, 1995), paras. 74, 76; Neira Alegría et al. v. Peru, Reparations and Costs, Judgment, Inter-Am. Ct. H.R. (ser. C) No. 29 (Sept. 19, 1996), para. 69, operative paragraph 4. 비슷한 취지의 판결 목록은 <https://iachr.ils.edu/reparations/locate-victim-or-exhume-identify-and-return-victims-remains> 참조.

15) 유엔 총회 결의 3220(XXIX) 호, 1974.11.8.;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I, Rules (2005), p. 414.

16)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S/60/147, 16 December 2005.

17) Ibid., para. 22: “Satisfaction should include, where applicable, any or all of the following: ... (c) The search for the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for the identities of the children abducted, and for the bodies of those killed, and assistance in the recovery, identification and reburial of the bodies in accordance with the expressed or presumed wish of the victims, or the cultural practices of the families and communities; (d) An official declaration or a judicial decision restoring the dignity, the reputation and the rights of the victim and of persons closely connected with the victim; ...” .

며 반환하여야 한다(제18조 1항 (g), 제24조 3항).

일본정부는 일차적으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강제실종¹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동원한 군인과 군속(노동자 포함)의 생사에 관하여 설명하고, 사망한 경우 유골 수색과 반환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한국정부 또한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유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VII. 유골의 정체성과 식민주의

유골문제 역시 다른 한일 과거사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일제의 전쟁은 식민지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전쟁이기도 했다. 식민제국에 편입된 식민지의 민중들은 일본 국적을 갖는 것으로 취급된 경우에도 격심한 차별의 대상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해와 골은 모두 사망당시 형식상 일본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제의 구 식민지였던 조선 출신이었다. 이들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배 하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원적 구조 속에서 법적, 제도적, 현실적 차별을 받는 가운데 죽었다. 이들은 죽어서까지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는, 제외된 사람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유해와 유골마저 전후인 오늘날까지도 그냥 방치되거나 일본인이나 다른 국적의 사망자의 유해와 구별하기 어렵고, 비용이 드는 DNA 검사의 필요성 등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이유로 차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의 유해와 섞여있다고 생각될 때 그제야 봉환된 기회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항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유골문제를 둘러싼 어려움 중의 하나는 사망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느냐는 질문에서 생겨난다. 사망시점과 발굴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이 맥락에서 중요하다. 그 동안 전쟁이 끝나고 식민지가 해방되었다. 국가변동 등 여러 가지 변화들로 사망자내지 유해와 유골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정해진 게 없다. 그렇다고 이제는 자국민이 아니라고 방치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그리고 실정법을 뛰어넘어 인도주의정신이 이러한 측면의 어떠한 구별도 배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사망자들이 식민지 주민이었다는

18) 유엔 강제실종협약 제 2 조는 강제실종을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권한부여, 지원이나 묵인 아래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집단이 체포, 구금, 납치 또는 다른 형태로 자유를 박탈하고, 실종된 사람의 자유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운명이나 행방을 숨겨 그 사람을 법의 보호밖에 두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야한다면 유골이 반환되어 그에 대한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고, 유족들이 사는 해방된 나라에서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 몇 겹의 질곡 속에 살다가 죽은 이 사람들의 죽음은 종결이 되고, 이들의 전쟁은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다.

VIII. 맺으며

법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골문제는 단적으로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전쟁희생자와 인권피해자, 그 유족들이 가지는 인권과 관련이 된다. 아직까지 조선인으로서 일본군대의 일원으로 강제로 동원되어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된 적은 없다. 또한 그 동안 일본정부는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하여 국제법상의 의무 이행의 차원에서 해명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고, 시신의 수색, 수습, 사망자의 유해나 유골의 반환 등을 위하여 성실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사망자는 물론 유족의 권리를 존중했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일본인이라며 동원했다가 패전으로 방치하는 이율배반적 권리침해 상태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유골관련 실태의 파악, 국가정책의 수립, 법률 제정, 일본 및 관련 국가와의 협상과 조약체결, 시민단체의 활동전략에 있어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기본적인 지침으로 지켜질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유골문제를 다루면서 일관해야 할 원칙은 사망자에 대한 존중이다. 강제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어찌면 그들의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데에 있을 것 같다.

遺骨問題に対する国際人道法と国際人権法

趙時顯 (民族問題研究所)

I. 遺骨問題の展開と課題

本稿では、日本植民地時代に日本によって強制動員され、日本の侵略戦争が繰り返されていた期間中に死亡した植民地朝鮮人の遺体と遺骨をめぐって提起される問題(以下、遺骨問題)について、法的検討を試論として試みたい。韓国社会においては、これまで日本の国家総動員体制のもとで、労務動員や軍事動員された労働者、軍人や軍属等として強制動員された被害者たちの遺骨の返還問題を中心に対応がなされていた。遺骨問題の展開過程については、先に行われた南相九博士の発題において取り上げられているので、ここでは同問題に対する法的な枠を念頭に置き、主な事実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で議論を始めたい。

遺骨問題は、解放直後から強制動員の被害者自らが進んで提起した問題でもある。日本の敗戦により朝鮮を強制占領していた日本から解放された韓国(朝鮮半島、Korea)は、南北に分割され、戦勝国のアメリカとソ連の軍事占領統治を受けることになり、米軍政はある程度返還に関与していた。軍政が終わり、正統性を主張する国と政府がそれぞれ南と北につくられた分断と冷戦の状況は、同問題の解決を難しくする足かせとなった。このように、南北に分かれた状況のなか、日本が起こした戦争に対する後始末でさえ、南北は排除されたまま、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会議を通して締結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を中心になされたが、強制動員被害者たちの遺骨問題はむしろ、日本の強制占領や植民支配問題は数多くの案件に名をあげることさえ許されなかった。その後、韓国と日本の間で新しく「国」対「国」の関係を結ぶべく行われた韓日会談において遺骨問題は議題の一つでもあった。しかし、1955年日

本政府は「弔意金等の問題」と「一般徴用者との関連」を挙げて論議を棚上げにした。¹⁾ 1954年8月4日、韓国政府は交渉の過程において、植民地賠償問題に焦点を当てたりしたもの、1965年の国交正常化と同時に締結された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において、植民支配問題は韓国併合条約等が「既に無効」であるという条項で、賠償に関しては「請求権協定」の形で取り扱われた。その際に締結された5つの韓日間の条約のどこにも遺骨という言葉は使われることはなかった。

1965年以降、遺骨問題は韓日政府間で取り上げられるなど、最近まで数回にわたって協議が行われた。同問題を取り扱う枠としては、1969年に韓日定期閣僚会議で合意がなされた「了解事項」もあるようだが、正式に両国間で締結された条約はいまだにない。今までは、その都度、人道的な面で日本の協力を求める実務的なレベルで取り扱われ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一方、民間レベルでは、日本の宗教団体や市民団体による遺体調査と発掘、遺骨の返還努力が韓国の団体とも連携しながら、着実に繰り返されている。²⁾ 韓国政府レベルで特別法の制定によって2004年に発足し、2015年に活動を終えた強制動員委員会、その後設立された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行政安全部の過去史関連業務支援団等を中心に遺骨問題に関する具体的な調査等の事業が行われている。日本の場合、2016年の「戦没者の遺骨収集の推進に関する法律」により、現在、日本軍の遺体調査と発掘が行われているものの、朝鮮出身の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配慮はなく、これに対する韓国政府の積極的な問題提起もないのが現状である。さらに、日米間での遺骨に関する協力により、タラワなどアジア・太平洋戦争の激戦地の遺体が日本政府に一括引き渡される予定であるというなど早急な対応が求められる時点である。

一方、遺骨問題に係る訴訟は、1989年に東京・新宿にある旧陸軍軍医学校の跡地の建設現場から発掘された百体以上の人骨に対し、住民たちが戦争犯罪との関連性を指摘し、これらの火葬と埋葬は国際法と刑法に違反すると主張して申し立てた住民訴訟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³⁾ 同事件で、原告らは財務会計上の行為のみを問題視することができる住民訴訟の限界のため、敗訴した。訴訟運動による遺骨問題の提起方法について講じる必要がある。

要するに、強制動員被害者の遺体と遺骨問題に対するこれまでの韓国政府の対応は、これを全面的に問題視したり、または体系に立った専門機関を設けることなく、関連活動に向

1) 1954年8月4日、アジア局第5「朝鮮出身戦者に関する件」；南相九の発題文を引用。

2) 例えば、市場淳子、元広島三菱徴用工被爆者と遺族たちの闘い、古庄正編『強制連行の企業責任』、創史社、1993、205、230-234頁。

3) 山本晴太弁護士のホームページ、第32番事件。

けた法的な根拠もつくられていない状況で、強制動員に関する業務の一環として、外交部を経由して日本政府の協力に依存するといった構造で行われてきた。

戦後日本政府は戦地(日本本邦を含む)に強制動員された植民地出身の軍人、軍属、軍「慰安婦」等と労働者の死体や遺体、遺骨をどのようにしたか、きちんと調べていない。日本の軍事占領地域に入ったその他民間人たちの場合は特に問題されることがないようだ。さらに、強制動員被害者の場合も彼らの生存確認や遺体の捜索や発掘のための努力を特にしていない。韓国政府は、たまに日本政府より死亡者名簿を渡してもらっただけで、遺族に対する正確な死亡通知さえなかっ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が締結される直前に、彼らの日本国籍を剥奪した日本は遺骨問題において自国民本位の活動と立法をただけである。しかし、遺骨問題は、各国が自国でわきまえて処理する問題を越えて、国際的な法と実践の問題でもある。国際法は、基本的に国と国の関係を中心にするが、人間の生と死についても国の義務とそれに対応する国と個人の権利という形で規律する。人間が存在する故に社会と国があり、ここには法が働く。

2018年10月30日、新日鉄住金株式会社に対する大法院の判決により、植民支配と強制動員の不法性が法的に確立された状況で、国際人権法上、保障された重大な人権侵害の被害者として強制動員被害者が受けるべき損害賠償を含め、完全な賠償を受ける権利という面から遺骨問題にアプローチする必要性が提起される。これとは異なる立場を示す日本政府を相手とってただ単に人道主義に即した解決策ではなく、関連国際法や国際事例に即した新たなフレームづくりが求められる。このような観点から、本稿では、遺骨問題に関する国際人道法や国際人権法の原則について検討していきたい。⁴⁾

II. 遺骨問題の範囲

韓国と北朝鮮に送還されるべき遺体と遺骨の範囲に関し、まず日本の関連法である 戦没者遺骨収集法についてみてみよう。第1条は、

4) 下記は、筆者の他の書から関連事項を抜粋してまとめている。チョ・シヒョン、朝鮮半島出身の軍人・軍属の靖国神社合祀問題と国際法、靖国神社反対共同行動韓国委員会、『靖国問題を国連人権機構に提起するための国際会議：国際人権の視点からヤスクニをみるⅢ』、資料集、2018年10月26日、42頁。

「今次の大戦から長期間が経過し、戦没者の遺族をはじめ今次の大戦を体験した国民の高齢化が進展している現状において、いまだ多くの戦没者の遺骨の収集が行われていないことに鑑み、戦没者の遺骨収集の推進に関し国の責務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戦没者の遺骨収集の実施に関し基本となる事項等を定めることにより、戦没者の遺骨収集の推進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確実に講ずることを目的とする。」

と規定している。第2条は「戦没者の遺骨収集」について下記の通りに定義する：

「今次の大戦(昭和十二年七月七日以後における事変を含む。以下同じ。)により沖縄、東京都小笠原村硫黄島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本邦の地域又は本邦以外の地域において死亡した我が国の戦没者(今次の大戦の結果、昭和二十年九月二日以後本邦以外の地域において強制抑留された者で、当該強制抑留中に死亡したものを含む。以下同じ。)の遺骨であつて、いまだ収容され、又は本邦に送還されていないものを収容し、本邦に送還し、及び当該戦没者の遺族に引き渡すこと等をいう。」

戦没者について特に定義せずに、時期を1937年から1945年までの戦争に限定し、日本本土と植民地、軍事占領地や戦闘地域にある「我が国の戦没者」としている。同法はこのような遺骨の收拾を「国の責務」としている(第3条)。

韓国人の場合、同法の適用対象で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論議が必要だ。核心的に強制動員被害の時期の設定が重複しており、当時日本法に基づき、日本国籍だった朝鮮人たちを除けば、日本法制のなかにおいても矛盾となる。関連国との事前による協議はなかったようで、南北としては今後の協議を通して突破しなければならない箇所である。靖国神社に韓国人を合祀したのと同じく、死亡時点と遺骨返還時点における国の変更を如何に取り扱うかを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一方的な国籍の剥奪による差別問題に対する基本対応を明確にする必要もある。韓国の場合、対象時期について強制動員を越えて日本の強制占領期へまで拡大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論議が求められる。

一方、日本の「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では、軍人・軍属等の公務上の死亡という包括的な表現が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戦没者という用語は、国際人道法で用いられる「戦争の犠牲者(war victims)」という用語と区別される。後者には戦傷者のほかに戦争捕虜と民間人が含まれる。遺骨問題は、戦時中に死亡した人々を対象にするため、戦争に関する法問題についても問題提起をする。特に、戦時中死亡者や負傷者が発生した場合、国は自国の兵

士はもちろん、敵国の兵士に対しても一定の義務を負っており、これを国際的に規範化したのが戦争法、武力衝突法、国際人道法である。国際人道法によると、国家は死亡者を捜索、身元確認、埋葬、家族への通報、遺体の送還等の義務を負う。軍隊の構成員を含め、すべての人間の権利を取り扱う国際人権法も死に係わって人間の尊厳性、生命権、平和的生存権、家族の権利、重大な人権被害者の権利等を中心として、関連する法的原則を発展させている。

Ⅲ. 敵軍、自軍、植民地の兵士の区分

近代国家が、その構成員の死と向き合う方法について、近代国際法は、まず国とその構成要素を分離し、その要素の一つである国民の増減や個別の生死は、国家の運命そのものを左右しないこととした。言い換えれば、ある国民の死は、その国の存在の有無とは関係のない別個の問題だということだ。このように、原則上、国家と国民または国家と市民社会は分離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主張に立脚するとしても、国家が国民の「生」と無関係ではないことは、国家の起源や性格、存在理由を考えれば明らかである。近代国家は人民の幸福や福祉追求を一般的な目的とし、国民の生命や財産を保護する義務を負う。例えば、ある人が犯罪や災害で死亡した場合、国家は捜査や救護等に出る。国はある死者を称え、ある種の儀式を行ったり、追悼施設を作ったりもする。一方、人間の死に対する国家の責任は強化されており、国際人道法、国際人権法、国際刑事法等の国際法によって補強されたりもする。

戦争とそれに伴う死に関する国際法的対応は、国際人道法の発達をもたらした。国際人道法は、戦争が起きたこと自体が提起する、そもそもそれが侵略戦争なのかどうかについて、そして、その戦争の合法性の有無について問い、これに介入しようとするものではない。国際人道法は、戦争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戦闘のような敵対行為に関する一定の規則を課し、制限を加え、戦争が起きている間に生じる人道的な問題、つまり戦争で犠牲になりやすい「負傷者、遭難者、戦争捕虜、民間人」等を保護するために発展した。このため、19世紀後半以降、多くの国際条約が締結もされているが、国際慣習法という形で法原則が確立されている。

国際人道法は、敵国の軍人、民間人、または内戦中にあった際にも、相手に差別なく最小限の人道的待遇を要求しており、自国の兵士や民間人に対しても、こうした最小限の基準が適用されるべきである。各国が自国の兵士に教える軍事教本は、実際の国際人道法の重

要な土台となっている。第2次世界大戦当時に適用された「戦地軍隊ニ於ケル傷者及病者ノ状態改善ニ関スル千九百二十九年七月二十七日ノ「ジュネーヴ」条約（昭和10年条約第1号、1935年6月18日 日本で効力発生）」も、やはり「国籍の如何を問はず」人道的な待遇をするように要求している。戦争当時の日本の国内的な軍事法制度がこうした国際基準に及ばない場合にも、国際法によって国家と軍人の関係は規定され、それに基づき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日本の軍人と軍属の身分として、戦時中に死亡した植民地出身者にも例外なく適用されねばならない。

日本の戦没者遺骨収拾法もこのような国際人道法を基準として検討される必要がある。原則として、日本の侵略戦争に関する範囲内で国籍に拘わらず、すべての死亡者が対象となってしかるべきである。費用など具体的な協力事項については、関連国と協議が必要な部分もあるだろう。

Ⅳ. 戦時中の死亡者に対する国際人道法

国際赤十字委員会は、膨大な国際人道法に関するこれらの条約、⁵⁾ 各国の関連法、判決、軍事教範等の実行を網羅し、国際人道法の慣習データベースを編纂した。⁶⁾ 本稿では、便宜上、多くの関連国際条約の条文の代わりにこれらの規則(第4部規則112から規則116まで)を中心としてまとめている。

1) この規則によれば戦争当事国は、何よりも

交戦後はもちろんのこと、常に死亡者を捜索し、遺体を収拾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主要な関連本文は以下：「戦地にある軍隊の傷者及び病者の状態の改善に関する千九百四十九年八月十二日のジュネーヴ条約（第一条約）」第3条、第15条、第16条、第17条；「海上にある軍隊の傷者、病者及び難船者の状態の改善に関する千九百四十九年八月十二日のジュネーヴ条約（第二条約）」第18条、第19条、第20条；「捕虜の待遇に関する千九百四十九年八月十二日のジュネーヴ条約（第三条約）」第120条、第122条；「戦時における文民の保護に関する千九百四十九年八月十二日のジュネーヴ条約（第四条約）」第16条、第27条、第129条、第130条；1949年8月12日のジュネーヴ諸条約の国際的な武力紛争の犠牲者の保護に関する追加議定書（議定書Ⅰ）第4条、第33条、第34条、第17条；「1949年8月12日のジュネーヴ諸条約の非国際的な武力紛争の犠牲者の保護に関する追加議定書（議定書Ⅱ）」第4条、第8条。

6) <https://ihl-databases.icrc.org/customary-ihl/eng/docs/home>.

死亡者に対する略奪と遺体の毀損を防がねばならない。

死亡者が属する戦争当事国の要請や死亡者の親族の要請があった場合、死亡者の遺体と遺品の返還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⁷⁾

死亡者は「丁重に(respectfulまたはhonorable)」埋葬、または火葬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墓所を尊重し、適切に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死亡者の遺体の処理に先立ち、死亡者の氏名等、死亡者の身元が分かるすべての情報を記録し、死亡証明書を発行し、墓の位置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国際人道法は、このように戦争の犠牲者として死亡者を発見した場合、臨時の埋葬と火葬、その後の遺体と遺骨の返還まで、戦時中に交戦者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基本的な義務を中心に規定している。

死亡者の発見から遺骨と遺骨の返還まで、このように詳細に規律しているのは、根元的には人間に対する尊重、または人間の尊厳性から始まっていると言える。イスラエルの裁判所は2002年4月14日、ジェニン(Jenin)事件とバラク(Barake)事件での死亡者の捜索と収拾は「あらゆる死者に対する尊重(respect for every dead)」の精神から発露した「非常に重要な人道的行為」であるとした。また、死者尊重の原則は多くの国の軍事教本にも規定されている。⁸⁾

2) 捜索と収拾

国際人道法に則って死亡に係っては、戦争が終われば最も最初に行われるべきものは、死亡者に対する情報収集と収拾である。そのために、国際人道法では、軍人をして認識票をつけるようにさせている。遺体の発掘や遺骨の収拾はこれに係わる活動だ。死亡者の確認と収拾は戦争が終わってからも必要に応じて継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政府が韓国政府に提供した死亡者リストのような資料は、このような規範的な根拠に基づいて作成されていると言える。しかし、ここには、死亡した場所と死因に関する概略的な情報のみが記載されており、どのように死んだのか具体的に示されていない。さらに、遺体や

7) 第4協約第130条は「第130条：その遺骨は、安全に保管するため抑留当局が留置し、また、その近親者の要請があれば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その者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する。また、第1協約第17条；第3協約第120条を参照。第1議定書第34条は、このような協定の必要性を認めた中で、協定がない場合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手続を規定している。

8)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II, Practice Part 3(2005), p. 2660.

墓所に関するいかなる記録も添付されなかった。国際人道法がこれに関して記録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という点で問題である。さらに、国際人道法のレベルを超えて歴史資料という面で考える必要がある。死亡の初期段階における身元確認や墓所表記の重要性は、終戦から数十年が経過した今まで遺体発掘に向けた努力が続いていることからよく分かる。遺骨問題において特に注目すべきなのは、国際人道法上、死亡者の遺体を確認して遺骨の返還に至るまで、責任を負うのは国家であるという点だ。日本だけではなく、連合国も人道法上の義務を負うので、連合軍が発見した遺体をどのように処理したか、関連記録を追跡して日本の資料と比較することも必要である。

3) 埋葬または火葬

国際人道法は、死者の遺体と遺骨に焦点を当て、明文化された規定を設けている一方、遺体の埋葬や火葬の際にも尊重の原則を守ることを要求している。1929年のジュネーヴ条約第4条第4文は、「交戦者はいっそう死者が敬意を以て(honorably)埋葬せられ、其の墳墓が尊敬せられ且常に見出され得る様注意すべし」と規定する。また、1949年のジュネーヴ協約では「死者をできる限りその属する宗教の儀式に従って丁重に(respectfully)埋葬すること」が要求されている(第1協約第17条;第2協約第17条;第3協約第120条;第4協約第130条)。

戦争犯罪とつながることもある集団火葬は原則的に禁止されている。大量虐殺が頻繁になされたという点で集団埋葬地については特別注意する必要がある。遺体の発掘は戦争犯罪に関する証拠の確保という側面もある。ユーゴスラビヤなどに設けられた各種の国際刑事法廷において現場検証と収拾が行われている。これらの規定を通して、死亡者の尊重の原則によって埋葬の儀式が規定され、このような葬礼の手続きの性格上、宗教との関連性がより明確に表現される。このような国際人道法の態度は、宗教に関わることは国家によって決定される問題ではなく、個人が自主的に決める問題だとする認識を基にしている。靖国神社に朝鮮人戦没者を合祀したのは、このような点で国際人道法の原則に反するものと言える。1次埋葬、発掘、再埋葬はもちろん、最終安置に至るまで、すべての過程において死者に対する宗教的尊重があってしかるべきである。

※ 埋葬に関する日本の法令

1884年の「墓地及埋葬取締規則」と「墓地及埋葬取締規則に違背する者処分方」が敗戦までの日本の法令だった。1948年にかかる法令等をまとめたのが「墓地、埋葬等に関する法律」である。

4) 強制動員被害者の場合

近年、日本政府が行っている遺骨発掘事業においては、朝鮮等の植民地出身の遺体に対しては、送還どころか放置し、排除し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これは、さらなる国際人道法違反だと言えるが、このように遺骨問題が放置されていることは、靖国神社における合祀が人道的な考慮とは無関係に行われたことをよく示すものでもある。ちなみに、遺体等に対する国際人道法上の義務は、軍人と軍属の場合にのみ適用されるのではなく、民間人にも適用されることを指摘したい。正式に軍属に編制されず、軍隊に配属された労働者が相当数いたという実態を考慮すれば、強制動員された労働者と「慰安婦」の場合にも関連国際人道法が適用される余地がある。

死亡者に関する国際人道法の規則に違反する場合も、戦争犯罪または国際人道法上の重大な違反行為 grave breaches)として処罰されることがある。1946年8月、アメリカのマリアナ諸島の軍事委員会(Military Commission)は、ヨチオ(Yochio)など日本兵士を将校食堂で特別食として戦争捕虜の身体の一部を食べたことを理由に「名誉ある埋葬(honorable burial)」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ことに対し、有罪として処罰している。⁹⁾

V. 遺骨に関する韓日間での国際条約の必要性

前述のように、国際人道法では、死者の本国や遺族の要請に応じて遺体の返還に向けて努力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が、現時点としては具体的に如何なる方法で、遺骨返還問題を取り扱うかについては定めていない。同問題は戦時中(in bello)の問題ではなく、戦争後(post bellum)の問題として、休戦協定や平和協定などで扱われることもある。また、国際人道法は、戦争の被害者をどのように記憶し、記念または慰霊するかの問題そのものについては、取り扱うものではない。

現在、韓日間では遺骨、遺体に関する条約が締結されていない。日本政府は韓日交渉の際に遺骨問題と「徴用工問題」を結び付けて認識しながら、遺骨問題を交渉の対象から排除する戦略を貫いている(南相九の書)。植民支配により発生した、すべての問題が「請求権」

9) このほかにも遺体の毀損や食人により起訴された事件で、オーストラリア軍事法廷が裁判を行ったタケヒコ(Takehiko)事件、アメリカ軍事委員会のキクチとマフチ(Kikuchi and Mahuchi)事件等がある。前掲5を参照。

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得ないことは遺骨問題からもよく分かる。

韓国の場合、朝鮮戦争に対する休戦協定(第2条(13) (f))において遺体問題が取り上げられ、米朝間で遺体の返還が何回も行われている。¹⁰⁾

日本の場合、より直接的に第二次世界大戦に関連する国際条約と実行がある。1956年の日ソ共同宣言第5項なお書きにおいて、ソ連は「日本国の要請に基いて、消息不明の日本人について引き続き調査を行うものとする」とした。¹¹⁾ 旧日本軍戦争捕虜たちに対する共同調査の要求は今日にも至っている。また、1991年にインドネシアはジャカルタの日本大使に対し、イリアンジャヤの3,500体の日本軍遺骨を引き渡した。

日本の安部首相とアメリカのオバマ大統領は、アジア・太平洋戦跡地における遺体の返還等について協議することもあった。

韓国は、概ね交戦国としては認められていないものの、自国民の遺体という側面で、さらに、国際人道法の基準が必ずしも戦争当事国にのみ適用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点で、より積極的に遺骨返還に向けた交渉と協定の締結に打って出なければならない。

VI. 遺骨問題と国際人権法

1) 人間の尊厳と埋葬に関する人権

国際人道法の他の原則と同様、死亡者に関する国際人道法の原則は、国際人権法によって補われる。特に死亡者の尊重の原則は、人間の死をどのように捉えようとも、国際人権法の観点からは人権の主体として生きている人間が持つ尊厳の発露であり、その延長線にあるといえる。死亡した場合の人権に関して、ロシア連邦憲法裁判所は2007年6月28日の判決で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ある人が死んだ後、本人の意思によって、慣習的、伝統的、宗教的で儀礼的な信仰を尊重する元に埋葬される権利は、人間の尊厳の保護、自由権、個人の不可侵権、良心と宗

10) 国際赤十字委員会は、このほかにもベトナム終戦協定とフィンランドーロシアにおける戦死者に関する協定の事例を挙げている。1975年と1976年にはイスラエルとエジプトとの間で遺体交換が行われた。

11)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Japan Joint Agreement, Signed at Moscow, 19 October 1956,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63, No. 3768, p. 112 ; 1956年12月12日に批准書を取り交わし、効力が発生。

教の自由、思想・言論・意見と信仰の自由から普遍的に求められた国際法の原則と規定を保証するロシア憲法(略)から発生する。」¹²⁾

このように、自分が死ぬ時、自分が決めた伝統や宗教的儀礼によって葬られたいと願うことは、このように人権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生者と死者が交差するこの地点で、死者へ人格権と同じ概念が生まれる。当然、死者本人はその死において、現世では自らの死に対する自身の権利を主張できないが、国家に一定の義務を課すだけの「人格(personhood)」を持つと考え、尊厳あるものと見なし、これを尊重し、侵害してはならない。

また同じ事件でコノフ判事は次のような意見を示している:

「家族の伝統と慣習によって、尊厳のもとに埋葬される万人の権利には、特別な正当化の必要や、法律で成文化されている必要はない。この権利はあまりに自明で、おそらく他の自然権のように人間の本性に起因するものである。同様に自然で議論の余地のないものとされるのは、自分と親族関係にある大切な人たちを埋葬し、自らの道徳的義務を履行し、自らの人間として品性を表現する機会を持ち、別れを告げ、死んだ人間が社会と国家によってどのように評価されるとしても、すべての文明において神聖な価値と記憶の象徴を象徴する「墓」に関する権利を持つことは、死者を悲しみ、悼み、追慕する追悼するすべての人の権利である。」¹³⁾

ここで注目されるのは、埋葬の権利を、単なる個人の権利にとどまらず、亡くなった人と家族関係やその他の親密な関係にある人々の追悼する権利と結びつけた点だ。また、埋葬に関連して伝統と慣習に触れ、これを共有する共同体または集団との関連性も重視し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遺骨問題を提起する根本的な理由は、斯うして人間の尊厳性と遺族の権利のうえに成り立つのである。

2) 遺族の権利

戦争犠牲者の家族または遺族の権利と関連して、国際人道法は、前述したように遺族が遺体・遺骨の返還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遺族が持つ権利を前提にして、国家の義務を

12) Russian Federation, Constitutional Court, the Burial case, para. 2; https://ihl-databases.icrc.org/customary-ihl/eng/docs/v2_cha_chapter35_rule115_sectionb を再引用。

13) Sabanchiyeva and Others v. Russia, no. 38450/05, judgment of 6 June 2013 (extrac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Vol. 2013-III, pp. 14-15.

規定している。また、第2次世界大戦中に適用されたハーグ第4協約第46条は、占領軍が「家の名誉及び権利、個人の生命、私有財産ならびに宗教の信仰及びその遵行」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する。このような遺族の権利をさらに具体化させたのが、戦後の国際人権法の発展といえる。「市民的及び政治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第17条第1項は「何人も、その私生活、家族、住居若しくは通信に対して恣意的に若しくは不法に干渉され又は名誉及び信用を不法に攻撃されない」としている。同様の規定のある欧州人権協約の第8条に関して、欧州人権裁判所は、埋葬等死亡者の処理に関する遺族のプライバシー(private life)と家族生活(family life)への恣意的で不法な干渉を禁止する判例を発展させている。¹⁴⁾

遺族の権利は、戦争や武力衝突がない状況でも保障されている。例えば、米州人権裁判所は、違法な公権力の行使によって死亡者が発生した事件で、ペルー政府が生存者の捜索と遺体の回収を怠ったと判断し、国家は一種の精神的賠償の形で被害者遺骨の位置を探して身元を確認し、近い親族に謝罪する義務があるという判決を出した。¹⁵⁾ 死亡者の遺体や遺骨を要求し、返還を受ける遺族の権利は広く認められており、行方不明者や死亡者に関して情報を提供し、説明する国家の義務も確認されている。¹⁶⁾

被害者中心の観点から、被害者との人間的連帯を認め、国連総会が採択した「重大な国際人権法違反および深刻な国際人権法違反の被害者のための救済と補償措置を受ける権利についての基本原則及びガイドライン」では、同様に被害者とその遺族の権利に関する規定がある。¹⁷⁾ 特に被害賠償のための一つの形式として、「満足・陳謝(satisfaction)」には「(c)行方不明者の行方、拉致された子どもたちの身元確認と殺された人の遺体の調査と捜索、そして遺体の収集、身元の確認と、被害者の明示的もしくは推定可能な希望による、家族と共同体の文化的慣行による遺体の再埋葬」と「(d)被害者と、被害者と密接に関係のある人々の

14) 例えば、Sabanchiyeva and Others v. Russia, paras. 117, 123. なお、遺族たちが埋葬に反対する場合、これを強制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イスラエル裁判所の判決を参照：Physicians for Human Rights v. Commander of IDF Forces in the Gaza Strip in 2004, Israel's High Court of Justice; https://ihl-databases.icrc.org/customary-ihl/eng/docs/v2_cha_chapter35_rule115.

15) Neira Alegría et al. v. Peru, Merits, Judgment,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series. C) No. 20 (Jan. 19, 1995), paras. 74, 76; Neira Alegría v. Peru, Reparations and Costs, Judgment, Inter-Am. Ct. H.R. (ser. C) No. 29 (Sept. 19, 1996), para. 69, operative paragraph 4. 類似する旨の判決リストは、<https://iachr.ils.edu/reparations/locate-victim-or-exhume-identify-and-return-victims-remains> を参照。

16) 国連総会決議 3220(XXIX)号、1974年11月8日；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I, Rules (2005), p. 414.

17)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S/60/147, 16 December 2005.

尊厳、名誉と権利を回復させる公式的な宣言または司法的決定」が含まれている。¹⁸⁾ 2006年国連総会で採択された「強制失踪からすべての人を保護するための国際協約」(日本2010年加入、韓国未加入)では、さらに遺族の権利を強化している(第12条、第17条、第18条、第18条)。国家は、少なくとも行方不明者が死亡した状況や原因、遺体の所在に関する情報を親族に提供しなければならず、遺体の位置を確認し、尊重して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18条1項(g)、第24条3項)。日本政府が、今日の表現で「強制失踪」¹⁹⁾に該当すると言える方法で動員した軍人や軍属(労働者を含む)の生死について説明し、死亡していた場合には遺骨を捜索し返還する等の義務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政府もこのような事案に積極的に乗り出さなければ、遺族の権利を侵害することになると言える。

VII. 遺骨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植民主義

遺骨問題も他の韓日間での歴史問題と同じく、帝国主義または植民主義の問題とも関連がある。「大日本帝国」の戦争は、植民地の獲得と維持のための戦争でもあった。植民帝国に編入された植民地の民衆は、日本国籍を持つものと扱われた場合にあっては、激しい差別の対象だった。強制動員被害者たちの遺体と遺骨はみな死亡当時とは形式上日本人だったが、実質的には日本の旧植民地だった朝鮮出身であった。彼らは日露戦争以後、日本によって国を奪われ、植民地支配下にあった人々として二元的な構造の中で法的、制度的、現実的な差別を受けるなか、死んでいった。彼らは死んだ後も人間として正當に扱われることなく、排除された人々であると言えるのが現状である。彼らの遺体と遺骨さえ、戦後今日に至るまでそのまま放置されたり、または日本人や他国籍の死者の遺体と区別がつかず、費用がかかるDNA検査の必要性など現実的かつ技術的な理由のため差別を受けていると言える。

18) Ibid., para. 22: “Satisfaction should include, where applicable, any or all of the following: ... (c) The search for the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for the identities of the children abducted, and for the bodies of those killed, and assistance in the recovery, identification and reburial of the bodies in accordance with the expressed or presumed wish of the victims, or the cultural practices of the families and communities; (d) An official declaration or a judicial decision restoring the dignity, the reputation and the rights of the victim and of persons closely connected with the victim; ...” .

19) 強制失踪条約第2条は、強制失踪とは、「国の機関又は国の許可、支援若しくは黙認を得て行動する個人若しくは集団が逮捕、拘禁、拉致その他のあらゆる形態の自由の剥奪を行う行動であって、その自由の剥奪を認めず、又はそれによる失踪者の消息若しくは所在を隠蔽することを伴い、かつ、当該失踪者を法律の保護の外に置くもの」と定義している。

日本人の遺体に粉れ込んでいると考えてはじめて、送還の機会を持つとも言える。このような差別が合理的ではないと抗言するためには、多くの努力が必要だ。

遺骨問題をめぐる難題の一つは、死者がどこの国の人であるかという質問に起因するものだ。死亡時点と発掘時点に食い違いがあるという点はこのような脈絡から肝心である。その間、戦争が終わり、植民地が解放された。国家変動等さまざまな変化により死者、または遺体と遺骨の国籍はどうなるか何ひとつ定まっていなかった。だからといって、もはや自国民ではないとして放っておくのは国際人道法、国際人権法、さらに実定法を越えて人道注意の精神がこのような面の如何なる区別も排撃しているという点で受け入れるものではない。死者たちが植民地住民だったという特殊性を反映する必要がある。死者を一つの人格として尊重するならば、遺骨が返還され、彼らに対する葬礼が誠実になされ、遺族たちが住む解放の国でまともに追悼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日本政府は協力する義務があると言えるだろう。そうしてこそ、何重の桎梏の歳月を生きた彼らの死がやっと終わり、彼らの戦争に決着がつくと言える。

VIII. 結びに

法的な側面で、前述のように、遺骨問題はただ単に人道主義面での問題を越えて、国際人道法と国際人権法に則って保障される戦争犠牲者と人権被害者、その遺族が持つ人権に関わっている。いまだに朝鮮人として日本軍隊の一員として強制動員され、死に至った人々に対し、日本政府の直接的責任は認められていない。さらに、その間、日本政府は強制動員された人々の生死や行方に関し、国際法上の義務の履行という側面で釈明または情報を提供したこともなく、遺体の捜索、収拾、死者の遺体や遺骨の返還等に向けた誠実な措置を取っておらず、死者はもちろん、遺族の権利を尊重したと見ることもできない。同じ日本人であるとして動員をし、敗戦したからといって放っておく、二律背反の権利侵害の現況は今日にも続いている。遺骨に関する実態の把握、国家政策の策定、法律制定、日本及び関連国との交渉や条約の締結、市民団体の活動戦略において、国際人道法と国際人権法が基本的な指針として遵守されることを促したい。何より遺骨問題を取り扱ううえで貫くべき原則は死者に対する尊重に尽きる。なにやら強制動員問題の解決に向けた出発点は、彼らの死を省察することにあるようだ。



강제연행 피해와 유골조사



니시자와 기요시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強制連行被害と遺骨調査



西澤清
(東京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강제연행 피해와 유골조사

니시자와 기요시(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1. 우리들에게 유골 문제란

일본의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각 현별로 『조선인강제연행증언집』(가시와쇼보)을 발간해 왔다. 2002년에 도쿄 도내의 ‘증언집’이 미발간 상태이니 조사를 진행하여 작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곧바로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금세 ‘거주 생존자가 없다’는 벽에 가로막히고 만다. 그 까닭은 도쿄라는 특수한 장소에 기인하였다. 전쟁 중에는 공습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정 주도 하에 ‘지역 소개’가 실시되어 많은 주민들이 강제로 지방으로 소개되었고, 또 1945년 3월 10일의 ‘도쿄대공습’으로 고토 6구(에도가와, 고토, 스미다, 다이토, 가쓰시카, 아다치)를 중심으로 초토화면서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거의 전무하였기(그 중에서 특히 조선인 희생자는 훗날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만 명을 넘어선다) 때문이다. 그에 더해 1900년대 초엽의 ‘한일병합·식민지 지배’ 이후에 실시된 농지 등의 ‘수탈’로 토지 등의 재산을 잃고 일본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책임’ 의식을 주입 당해 우리들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한 사람도 많아 지역의 교류 관계 탓에 우리들과의 접촉을 끊은 사람도 있었다.

생존자 조사가 벽에 부딪치자 우리들은 도쿄에 위치한 ‘절’의 과거장을 보면 단가 속 조선인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해, 도쿄에 소재하는 약 1800곳의 사찰에 문의하였다.

그 결과, 유텐지(祐天寺)의 유골(우키시마호)을 찾는 데에 다다랐다. 애당초 교토 마이즈루항에서 침몰한 선원의 유골이 왜 도쿄에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머릿속에 떠올라 그것을 추적하던 중 강제노동 희생자와 유골의 관련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2. 유골문제의 본질

애당초 강제동원문제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식민지 지배’라는 배경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강제동원이란 이유야 어쨌건 들판에 홀로 피어 있는 한 송이 꽃만을 꺾어 들고 오는 행위가 아니라, ‘꺾어온 꽃’은 그와 연결된 수많은 꽃들 중에서 뽑아온 것이다. 더욱이 그 꽃은 한 무리의 가족, 친구, 살붙이 등의 기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으뜸이 되는 꽃이다. 그 꽃을 잃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들은 남겨진 사람들의 지난했을 삶과 슬픔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뽑힌 꽃은 설령 무명으로 스러졌을지언정 그 주위에 남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상념을 남기었을 터이며, 그 속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심정도 담겨 있다. 우리들은 그 점을 깨닫게 된다.

3. 유텐지의 유골과 교훈

유텐지는 도쿄 메구로구에 위치해 있다. 불사리전에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조선인 BC 급 전범, 군인 및 군속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

우키시마호사건이란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의 해군공창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이 풀려나면서 그들을 태우고 오미나토항을 출발한 우키시마호(4,730톤, 정원 841명)가 1945년 8월 22일에 교토 마이즈루항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선체는 1950년(103명)과 1954년(약 300명)에 인양되었으나, 구체적인 조사는 실시되지 않은 채 여전히 미군의 기뢰에 의한 폭파설, 일본 해군의 자폭설이 제기되고 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승선해 있던 조선인 수는 일본 정부에 따르면 3,735명, 사망자 수는 52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목격자에 따르면 승선자 수는 5,000명~8,000명, 사망자 수는 3,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어쨌든 구체적인 조사를 충분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키시마호의 유골은 오랜 세월 후생성에 보관되어 있었다(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으나, 생략한다). 1971년 6월 말에 유텐지로 옮겨지는데 그 경위를 보면, 유골문제에는 뜻밖의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사죄를 구하지도 않는

등 과거를 청산하지도 않은 채 봉환을 우선시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유골 본인이나 유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역사를 지워 버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텐지의 유골은 1987년 8월 10일, 한차례 교토 고라이지(高麗寺)로 이관되어 ‘한일우호탑’에 안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총련의 항의로 76일 뒤에 원상 복구된다. 정치적인 의도로 유골을 안이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시사한다.

2008년 1월, 유텐지의 유골은 1125구였으나, 그 후 한국 측으로의 반환이 진행되면서 현재 유텐지에는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 국적의 유골을 포함해 700구가 남아 있다.

4. 퍼져나가는 유골 문제 제기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국제회의’에서 유골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참석한 대표에게 유텐지 유골 명부를 건네면서 한국과 동시에 유족 조사를 의뢰하였다. 북한의 유족은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이하 조대위)가 찾아내 연락해 왔다.

이름만으로 유족을 찾아내야 했고, 거의 모든 유족들이 고인의 본명(한국명)만 알고 있던 탓에 조사는 극히 난항을 거듭하였던 듯하다. ‘창씨개명’은 본인을 역사에서 지워 버린다. 강요된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얼마나 끔찍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할 것이다.

조사 결과 북한에서 유족 2명(김(산)용균 씨(김용호 씨의 아버지)와 김(성)정표 씨(김원경 씨의 아버지))이 판명되었다는 연락이 오자, 조사단은 12월에 유텐지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의 유족을 남북한에서 초대하여 추도식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추도식은 1972년부터 지역의 유지가 유텐지에서 거행하여 왔는데 우리들이 주최하는 추도회(2004년 12월 11일)에 유족분을 부르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행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고 또 후생노동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사리전에서 유골을 제단에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들이 항의하자 북한 출신 2구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로 한국(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전수암 씨(전승렬 씨의 아버지) 유골을 제단에 내놓았다.

참석하지 못한 김용호와 김원경 씨의 경우, 조선대학교 대학생이 두 사람의 사진을 들고 참석하였다. 독경이 끝나자, 전승렬 씨가 후생노동성 직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제단에서 흰색 나무 유골함을 끌어내려 안을 확인하는데 그 속에는 자갈 섞인 유골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전승렬 씨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끌어안고 오열하면서 “이 유골은 아버지

의 유골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포의 유골인 것은 틀림없다”, “나는 비록 다른 사람의 유골일지 몰라도 아버지의 유골이라 생각하고 끌어 안기라도 했지만, 일본에 오지 못한 북한 유족들은 참으로 불쌍하다”고 심경을 전하였다.

이튿날, 일본에서 처음으로 남북 공동 심포지엄인 ‘유텐지의 유골에서 평화와 인권을 생각한다’를 일본교육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도쿄진상조사단의 유골 문제 제기에 이어 한국에서도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의 정혜경 박사가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문제의 본질과 과제’를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하였고, 고(故)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참의원이 ‘가해자 책임을 회피해 온 일본의 책임’을, 또 한국의 명진 스님은 “총리는 야스쿠니신사가 아닌 유텐지에서 와서 우리 민족의 유골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튿날 13일에 우리는 후생노동성을 찾아 김용균 씨와 김정표 씨의 관련 서류를 수취하였다. (위임장을 사전에 두 유족에게 받았다). 김용균 씨는 구 일본 해군·군속으로 끌려와 1944년 9월 19일에 타라와 섬에서, 김정표 씨는 구 일본 육군·군속으로 동원되어 1944년 12월 31일에 셀레베스 섬에서 숨졌다. 하지만 서류의 유골란에는 ‘무(無)’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1959년에 야스쿠니신사에 일방적으로 합사되었다. 훗날 우리는 유족에게 연락하여 야스쿠니신사에 ‘명부 기재 삭제’, ‘합사 취소’를 요구하며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야스쿠니신사는 ‘초의 불꽃’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완강하게 버텼다. 진상조사단은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역사인식(가장 중요한 것은 식민지 지배의 과오)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설사 그 길이 험난하여도 인식의 공유,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5. 도쿄대공습과 조선인 희생자

1945년 3월 19일에 일어난 도쿄대공습은 만 명이 넘는 조선인 희생자를 낳았다. 유골은 도쿄 도내의 공원 등에 방치되었다. 1950년이 되어서야 수습되어 도쿄도 위령당에 봉안되었다. 개인이 판명된 것은 작은 유골함에, 나머지는 큰 유골함에 뒤섞인 채로 담겨 수습지역(공원 등)의 장소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도쿄대공습 후의 그와 같은 실태는 오랜 세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행정의 태만함 때문이었다. 1970년대, 미노베(美濃部) 혁신 도정(都政) 하에서 『도쿄대공습의 기록(전5권)』(사오토메 가쓰모토 엮음)이 발간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조선인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원을 알 수 없는 5000명에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1912년의 ‘총동원령’ 이후 조선인의 강제 동원은 확대되었고 1940년의 ‘도쿄올림픽’이 도쿄 고토구에서 예정되어 있던 탓에 그 건설 요원 더 나아가 일본인 남성이 군인으로 징용되어 그 뒤를 메워줄 군수노동자(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 해군의 군사공창(도쿄 아다치구) 등의 군속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도쿄에 거주하고 있었다. 희생자가 없을 터이 없다. 기록이 없을 리 만무하다.

우리는 실마리로 『도쿄대공습의 기록』에 기재된 신원불명자의 이름을 해독해 나갔다. 하지만 높은 벽에 가로막히고 만다. ‘창씨개명’이었다. 명부는 일본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해독에 나섰다. 제일 조선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강제로 개명 당한 당시, ‘한 글자는 본명을 사용한다’, ‘일본식 이름에 고향의 이름을 남겨 둔다’ 등처럼 ‘힌트’를 숨기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는 강제로 개명 당한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부족하나마 200명 가까운 분들의 이름을 해독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2006년에는 그 명부를 공개하였고 2007년부터는 도쿄도 위령당에서 추도식(원칙적으로는 도의 주최로 열리는 3월 10일 직전 토요일)을 거행하고 있다.

동시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도쿄대공습의 기록』을 엮은 사오토메 씨는 “머릿속에 조선인의 존재는 없었다”고 말하고, ‘도쿄대공습·전재(戰災) 자료센터’ 2층에 특설 공간을 마련하여 주셨다.

우리를 포함해 조선인 희생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던 안일한 역사인식은 크게 반성하여야 할 점이다. 2009년의 추도식에 초대된 한국의 유족분(황병환 씨와 김금란 씨)은 도쿄대공습·전재(戰災) 자료센터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황수달(平本洙達) 씨와 김봉석(豊原鳳石) 씨)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

황수달 씨는 33세, 김봉석 씨는 25세, 황수달 씨는 ‘平本洙達’라는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 유족인 황병환 씨와 김금란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고 슬프고 분하나, 마음이 차분해졌다. 한국 정부도 못했던 일을 도쿄진상조사단이 해주었다.

함박눈이 내리는 도쿄에 도착했을 때와 돌아갈 때의 도쿄의 모습이 달라 보일 듯 하다”고 심정을 전하였다. 유골 봉환의 큰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6. 향후 과제

도쿄진상조사단은 ‘유골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주재하는 추도식에 유족들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내걸고 있다.

- ① 일본 정부는 가해국으로서 ‘유골 봉환(반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즉시 북한에 모든 관계 명부를 제공하여 유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유족이 희망하면 일본 정부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조속히 일본에 초대하여 유족이 유골과 대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③ 일본 정부는 이미 신원이 판명된 유골을 유족에게 돌려 보내야 하며, DNA 감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 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사죄한 뒤 유골을 봉환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 ④ 타와라 섬과 셀레베스 섬을 포함한 전적지의 현지 조사와 유골 수습에 한국과 북한의 관계 기관과 유족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強制連行被害と遺骨調査

西澤清(東京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1. 私たちにとっての遺骨問題

日本の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は、各県ごとに「朝鮮人強制連行証言集」(柏書房)を発行してきた。2002年に、東京内の「証言集」が未発行であることから、調査を進めて作成してほしいという依頼をうけた。早速、東京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を立ち上げ調査に入った。

しかし、真相調査団はすぐに「居住生存者がいない」という壁にぶち当たった。その理由は東京という特殊な場所にある。戦時中は、空襲の延焼を防ぐために行政主導で「地域疎開」が行われ多くの住民が地方に疎開を強いられたこと、また、1945年3月10日の「東京大空襲」によって、江東六区(江戸川、江東、隅田、台東、葛飾、足立)を中心に焼け野原となり10万人超す住民が被害にあって住民はほぼ皆無になった(その中で朝鮮員犠牲者は後の私たちの調査では1万人超に上る)こと。さらに、1900年代初頭の「日朝併合・植民地支配」以降に行われた農地などの「囲い込み」により、土地など財産を失い、日本に流れてきた人たちが「自己責任」意識を植え付けられ私たちの調査を拒んだ。さらに日本名に「改名」している人も多く、地域の交流関係から私たちの接触を断って来た人もあった。

生存者調査の行き止まりから私たちは、東京の存在する「お寺」の過去帳を見れば檀家の中に朝鮮人が存在することが認め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1800ほどの東京のお寺に問い合わせをした。その結果、祐天寺の遺骨(浮島丸)に行きついた。そもそも京都・舞鶴港で沈没した乗員の遺骨が東京にあるのかという疑問が頭に浮かびその追求の中から、強制労働犠牲者と遺骨の関連が意識されだした。

2. 遺骨問題の本質

そもそも、強制連行で日本に在住する人については「植民地支配」を背景にしなければ語るができない

強制連行は、理由はどうあれ、野原に一本だけ咲いている花を抜いて持って来るのではなく、「引き抜いてきた花」はそれに寄り添う沢山の花の中から引き抜いてくるのだ。しかも、その花は、その一群の家族、友人、親戚などの中心で生活の糧を得る中心の花なのだ。その花を失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残った人たちの生活の苦しさ、悲しみに私たちは思い至る必要がある。

引き抜かれた花は、人知れず散ったとしても、その周囲に残っている人たちの中には強烈な想いを残しているはずであり、その中に亡くなった方の思いも込められている。私たちは、そのことに気づいたのである。

3. 祐天寺の遺骨と教訓

東京・目黒区に祐天寺はある。仏舎利殿には、浮島丸犠牲者、朝鮮人BC級戦犯、軍人・軍属の遺骨が保管されている。浮島丸事件とは、浮島丸(4,730トン、定員841人)が、青森県下北半島にある海軍工廟に働く朝鮮人が解放された朝鮮人を乗せて大湊港から出発し、1945年8月22日に京都舞鶴港沖で沈没した事件である。船体は1950年(103柱)と1954年(300柱余)に引き上げられたが、詳細な調査は行われずに、いまだにアメリカ軍の機雷への触雷説、日本海軍の自爆説があり決着を見ていない。

乗船していた朝鮮人の数は、日本政府は、3,735人、死亡者は524人と推定している。しかし、目撃者によると乗船人数は5,000人～8,000人、死亡者数は3,000人以上であるという。いづれにしても詳細な調査を十分に行う必要がある。

浮島丸の遺骨は、長い間厚生省の存置させられていた(これには大きな理由があるが省略する)。祐天寺に移されたのは1971年6月末である。この経過を見ると、遺骨問題には、思わず落とし穴があることに気づく。それは、調査を十分に行わず、謝罪を求めないなど過去を清算せずに奉還を優先すると、結果として遺骨本人や遺族の意思を無視し、歴史を消してしまふことである。実は祐天寺の遺骨は、一度1987年8月10日に京都・高麗寺に移管され「韓日友好の塔」に安置されたことがあった。しかし、朝鮮総連の抗議によって、76日後には原状復

帰になった。政治的な安易な遺骨の扱いは決してできないという教訓である。

2008年1月には、祐天寺の遺骨は、1125柱あったが、今では祐天寺の遺骨は、韓国側の変換が進み、日本と国交の無い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を含めて700柱である。

4. 遺骨問題の提起拡がり

2004年に、ソウルで開かれた「日本の戦後補償を求める国際会議」に遺骨問題を提起し同時に、共和国から参加された代表に祐天寺遺骨の名簿を手渡し、韓国と同時に遺族の調査を依頼した。共和国の遺族は、「朝鮮・日本軍“性奴隷”および強制連行被害者問題対策委員会」(以下 朝対委)が探し出し連絡がきた。

名前だけで遺族を探し出すことと、ほとんどの遺族が故人の本名(朝鮮名)しか覚えていなかったことで、調査は極めて困難だったとそうだ。「創氏改名」は本人を歴史から消し去ることである。強要した日本の植民地統治のおぞましさを端的に語るものと言える。

調査の結果、共和国から遺族の方2名(金(山)龍均氏(金勇虎さんのアボジ))と金(城)正表氏(金元鏡さんのアボジ))が判明したと連絡があり、調査団は12月に祐天寺に遺骨がある遺族を南北朝鮮から招き追悼会を行うことにした。

追悼会は72年から地元の方有志の方が祐天寺で行っていたが、私たちの追悼会(2004年12月11日)に、遺族の方を呼ぶことにした。しかし、日本政府は、随行者の入国を認めず、以前通り、厚生省は従来どおり仏舎利殿から遺骨を祭壇に出さなかったが、私たちの抗議で、共和国2名と浮島丸事件の被害者・韓国(全羅北道・全州出身)の全寿巖氏(全承烈さんのアボジ)の遺骨を祭壇まで出した。

参加できなかった金勇虎・金元鏡さんは写真を二人の朝鮮大学生が写真を持って参列した。読経の後、参列していた全承烈さんが厚生省職員の制止を振り切って祭壇から白木の箱をおろして中を確認したが、中には小石交じりの遺骨が入っていた。しかし、全さんは、アボジの名前が書かれた白木の箱を抱き号泣、「この遺骨はアボジの遺骨ではないかも知れない。しかし、同胞の遺骨に間違いない」「自分は他人の遺骨でもアボジの遺骨と思って抱けたが、来日が叶わなかった北の遺族は可哀想だ」と言われた。

翌日、日本で初めての南北合同シンポジウム「祐天寺の遺骨から平和と人権を考える」を日本教育会館で催した。東京真相調査団の提起に続き、韓国から「強制動員真相調査団糾明市民連帯」のチョン・ヘギョン博士が「強制連行犠牲者の遺骨問題の本質と課題」を日本で

始めて提起し、故清水澄子参議院議員が「加害者責任を回避してきた日本の責任」、また韓国のミョンジン・スニムは「首相は靖国神社でなく、祐天寺に来て、我が民族の遺骨の前に跪き頭を垂れるべきだ」と述べた。

問題は、これで終わりではない。翌13日、私たちは厚労省に行き金龍均さんと金正表さんの関係書類を受け取った。(委任状を前もって二人の方から頂いていた)。金龍均さんは旧日本海軍・軍属として連行され1944年9月19日にタラワ島で、金正表さんは旧日本陸軍・軍属として連行され1944年12月31日にセレベス島で亡くなっていた。しかし、書類の遺骨欄には「無」と記載されていたのである。さらに1959年に靖国神社に一方的に合祀されていた。後日、私たちは遺族と連絡を取り、靖国神社に「名簿記載の除去」「合祀の取消」を求めて交渉に行った。しかし、靖国神社は「ろうそくの炎」論理で頑として譲らなかった。

真相調査団は、こうした運動の中で多くの教訓を得た。そして、歴史認識(その最大なものは植民地支配の誤り)を欠いたものでは解決にならない。厳しくても認識の共有、加害者の反省・謝罪、被害者の尊厳の回復・補償を求める道をさぐ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

5. 東京大空襲と朝鮮人犠牲者

1945年3月10日の東京大空襲は1万人を超す朝鮮人犠牲者を出した。遺骨は、都内の公園などに放置されていた。1950年によく収集され東京都慰霊堂に納骨された。個人が判明したものは小さな骨壺、その他のものは大きな骨壺に混在して納められ収集地域(公園等)の場所が書かれている。

東京大空襲の実態は長い間明らかにされないできた。行政の怠慢である。1970年代、美濃部革新都政の下、「東京大空襲の記録(全5巻)」(早乙女勝元)が発行された。その中に朝鮮人に関する記録はない。ただ、5,000名に近い身元がわからないものの氏名が掲載されている。

1912年の「総動員令」以降、朝鮮人の強制連行は拡大し、1941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が東京・江東区に予定されたことからその建設要員、さらには日本人男性が軍人として徴用されその後を担う軍事産業労働者(石川島播磨重工)、海軍の軍事工廟(東京・足立区)など軍属として多くの朝鮮人が居住していた。犠牲者がいないわけがない。記録がないわけはない。

私たちは、その手掛かりとして「大空襲の記録」の身元不明者の氏名から読み解くことに

した。しかし、大きな壁が立ちふさがった。「創氏改名」である。名簿は日本名で記載されている。それを読み解くことにした。これには在日朝鮮人の力が多かった。改名させられた時、「1字は本名を使う」「日本名の中に故郷の名前を残しておく」等の「ヒント」を残している。私たちは改名を強いられた方々の想いに涙しながら作業を進め、不十分ながら200名近い方々の名前を読み解いた。2006年それらの名簿を公開し、2007年から東京都慰霊堂で追悼会(原則として都が主催して行う3月10日直前の土曜日)を行っている。同時に行ったシンポジウムで、「大空襲の記録」を編纂した早乙女さんは「朝鮮人の存在が頭になかった」と述べ、「東京大空襲・戦災資料センター」の2階に特設場所を設けて下さった。

わたしたちを含めて、朝鮮人犠牲者の存在が意識されなかった歴史認識の甘さは大きな反省点である。2009年の追悼会に招待した韓国のご遺族(黄秉煥・金琴蘭)は、戦災資料センターで、亡くなられたアボジの名前(平本洙達・豊原鳳石)を発見し涙にくれた。黄洙達さんは33歳、金鳳石さんは25歳、黄洙達さんは”平本洙達”の創氏名で、靖国神社に合祀されている。黄さんと金さんは、「亡くなったアボジの名前を発見して、悲しみや悔しさは残るが、気持ちが落ち着いた。韓国政府もできなかったことを、東京真相調査団がしてくれた。ボタン雪の降る東京に来た時と、帰る時の東京の姿が違って見える」と言われた。遺骨奉還が大きな意味を持つことを表す言葉だと思う。

6. これからの課題

東京真相調査団は、「遺骨問題」について、私たちの主宰する追悼会へ遺族の参加をいただくことを前提に、課題を次のように考えている。

- ① 日本政府は加害国としての「遺骨奉還(返還)」義務を果たすため、直ちに共和国にすべての関係名簿を渡し、遺族調査を依頼すべきです。
- ② 遺族が希望すれば日本政府の負担で一日も早く日本に招請し、ご遺族が遺骨と対面できるようにすべきです。
- ③ 日本政府はすでに判明しているご遺族には遺骨を持参し、DNA鑑定は言うに及ばず、その間の事情を説明・謝罪した上で遺骨を奉還、補償をすべきです。
- ④ タラワ島とセレベス島を含む戦跡地の現地調査と遺骨収集に、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関係機関とご遺族を参加させるべきです。



일본 정부의 해외격전지
유골조사 · 봉환



이와부치 노부테루
(태평양전사관 관장)

日本政府の海外激戦地の
遺骨調査 · 奉還



岩淵宣輝
(太平洋戦史館長)

일본 정부의 해외격전지 유골조사·봉환

이와부치 노부테루(태평양전사관 관장)

위령 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활동 경위

구 일본 병사의 유골 탐색 ⇒ 발견 ⇒ 수습 ⇒ 감식 ⇒ 화장 ⇒ 유골 송환으로

태평양전사관의 탐색 활동에 의한 유골 송환 실적

서부뉴기니(인도네시아공화국 파푸아주·서파푸아주) 방면 1999년~2015년

인도네시아(서부뉴기니 방면)의 유골 송환은 태평양전사관 회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자비로 참가하여 탐색 작업을 하면서 1999년에 25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해외미송환유골정보수집사업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현지 관계자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1000구를 넘는 전몰자의 유골 송환을 실현하면서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상호 이해 증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아 2013년 7월에는 외무대신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수습지역별 송환유골수

송환 연월	비악섬	사르미	자야푸라(옛 홀란드리아) 방면				마노과리	합계 유골 수
			베랍	게넴	파라이	카유바트		
1999.08	59					12	71	
2002.03	41			5			46	
2002.05	52					16	68	
2006.01	25					116	141	
2006.11	35						35	
2007.11	115						115	

2009.03	106		베랍 2				108
2009.12	214						291
2011.03	169				47		216
2012.03	※ 0						※ 0
2013.03		24			110		134
2013.11	282						282
2014.10					61		61
2015.10	※ 0						※ 0
	스피오리시						
TOTAL	1,098	24					1,568

※ 2012년 3월은 인도네시아 정부, 비악 뉘포르시의 이해를 얻지 못한 탓에 단원은 유골 수습과 화장을 하지 못한 상태로 귀국. 원통함이 남는 무송환 귀국길이 되었다. ※2015년 10월에는 스피오리시성 방면에서 약 120구를 발견해 송환 준비를 진행했으나 재외공관의 외교 교섭 미비로 인해 두 번째 무송환 귀국길이 되었다.

**정부파견단에 의한 유골 수습 실시 경과
(뉴기니, 솔로몬, 비스마르크제도)**

수습계	실시 연월일	수습 지역	수습 유골 수
제1차	1955년 1.12~3.19	솔로몬제도, 비스마르크제도, 동부 뉴기니	5,889구
	1956년 6.20~8.23	서이리안	442구
제2차	1967년 10.12~11.13	서이리안, 비악섬, 뉘포르섬	2,710구
	1969년 10.11~11.16	동부 뉴기니	8,800구
	1970년 9.29~11.5	뉴브리튼섬, 부건빌섬, 애드미럴티제도	2,605구
	1971년 9.28~10.26	길버트제도, 솔로몬제도	7,101구
	1971년 10.21~11.25	서이리안	3,680구
제3차	1973년 5.18~6.13	솔로몬제도	1,802구
	1973년 9.18~10.19	동부 뉴기니	1,631구
	1974년 5.29~6.27	비스마르크제도, 북부 솔로몬제도	1,634구
	1976년 2.22~3.19	뉴브리튼섬, 뉴아일랜드섬	868구

보완	1976년 8.17~9.14	솔로몬제도	1,474구
	1977년 10.25~11.22	부건빌섬 외	2,506구
	1980년 11.25~12.25	부건빌섬, 과달카날섬	1,262구
	1981년 8.23~9.10	동부 뉴기니	120구
	1982년 10.31~11.25	부건빌섬, 과달카날섬	179구
	1983년 8.11~8.28	과달카날섬	189구
	1984년 10.19~11.8	과달카날섬	96구
	1985년 9.9~9.30	과달카날섬	319구
	1985년 10.7~10.28	동부 뉴기니	1,287구
	1986년 2.8~2.21	부건빌섬	472구
	1986년 9.5~9.25	부건빌섬, 과달카날섬	328구
	1987년 10.2~10.23	부건빌섬, 과달카날섬, 피에즈섬	541구
	1988년 10.2~10.25	솔로몬제도, 과달카날섬, 피에즈섬, 동부 뉴기니	303구
	1989년 3.5~3.27	과달카날섬	138구
	1989년 7.13~8.3	동부 뉴기니	158구
	1990년 7.9~7.31	동부 뉴기니	72구
	1990년 10.15~11.6	과달카날섬	311구
	1991년 10.28~11.19	동부 뉴기니	125구
	1992년 9.28~10.30	동부 뉴기니	89구
	1994년 9.30~10.13	과달카날섬	401구
1995년 8.3~8.12	동부 뉴기니	29구	
1995년 10.19~11.2	동부 뉴기니	103구	
응급 파견	1996년 3.3~3.18	피에즈섬, 과달카날섬	107구
	~1995년도 계		47,771구
응급 파견	1999년 8.25~9.8	마노콰리, 비악섬	71구
	합계		47,842구

日本政府の海外激戦地の遺骨調査・奉還

岩淵宣輝(太平洋戦史館長)

慰霊事業に関するこれまでの取り組み

旧日本兵の遺骸搜索 ⇒ 発見 ⇒ 収容 ⇒ 鑑定 ⇒ 火葬 ⇒ 遺骨帰還へ

太平洋戦史館の搜索活動による遺骨帰還の実績

西部ニューギニア（インドネシア共和国パプア州・西パプア州）方面 1999年～2015年

インドネシア（西部ニューギニア方面）の遺骨帰還は、太平洋戦史館会員の長年に渡る自費参加の搜索活動により、1999年に25年ぶりに再開されました。2010年以降は海外未送還遺骨情報収集事業として継続しています。入域困難な地域において、現地関係者との友好協力関係を築き、千柱を超える戦没者の遺骨帰還につなげたことが、日本とインドネシアとの相互理解促進に貢献したと評価をいただき、2013年7月、外務大臣表彰を受賞しました。

収容地域別 帰還柱数

帰還年月	ビアク島	サルミ	ジャヤプラ（旧ホーランジャ）方面				マノクワリ	合計柱数
			ベラップ	ゲニム	プアイ	カユバト		
1999.08	59						12	71
2002.03	41			5				46
2005.03	52					16		68
2006.01	25					116		141
2006.11	35							35
2007.11	115							115
2009.03	106		ベラップ2					108
2009.12	214							291
2011.03	169				47			216
2012.03	※ 0							※ 0
2013.03		24				110		134
2013.11	282							282
2014.10					61			61
2015.10	※ 0							※ 0
	スピオリ市							
TOTAL	1,098	24						1,568

※ 2012年3月は、インドネシア政府、ビアク・ヌンフォル市の理解が得られなかったため、遺骸の収容と、火葬ができずに団員は帰国。無念のゼロ柱帰還となった。
 ※ 2015年10月は、スピオリ島方面から約120柱を発見し帰還の準備を進めたが、在外公館の外交交渉不備のため2度目のゼロ柱帰還となった。

政府派遣団による遺骨収集実施経過 (ニューギニア、ソロモン、ビスマーク諸島)

収集計画	実施年月日	収集地域	収骨数
第1次	1955年 1.12~ 3.19	ソロモン諸島、ビスマーク諸島、東部ニューギニア	5,889柱
	1956年 6.20~ 8.23	西イリアン	442柱
第2次	1967年 10.12~11.13	西イリアン、ピアク島、ヌンホル島	2,710柱
	1969年 10.11~11.16	東部ニューギニア	8,800柱
	1970年 9.29~11.5	ニューブリテン島、ブーゲンビル島、アバミラルティ諸島等	2,605柱
	1971年 9.28~10.26	ギルバード諸島、ソロモン諸島	7,101柱
	1971年 10.21~11.25	西イリアン	3,680柱
第3次	1973年 5.18~ 6.13	ソロモン諸島	1,802柱
	1973年 9.18~10.19	東部ニューギニア	1,631柱
	1974年 5.29~ 6.27	ビスマーク諸島、北部ソロモン諸島	1,634柱
	1976年 2.22~ 3.19	ニューブリテン島、ニューアイルランド島	868柱
補充	1976年 8.17~ 9.14	ソロモン諸島	1,474柱
	1977年 10.25~11.22	ブーゲンビル島他	2,506柱
	1980年 11.25~12.25	ブーゲンビル島、ガダルカナル島	1,262柱
	1981年 8.23~ 9.10	東部ニューギニア	120柱
	1982年 10.31~11.25	ブーゲンビル島、ガダルカナル島	179柱
	1983年 3.11~ 3.28	ガダルカナル島	189柱
	1984年 10.19~11.8	ガダルカナル島	96柱
	1985年 9.9~ 9.30	ガダルカナル島	319柱
	1985年 10.7~10.28	東部ニューギニア	1,287柱
	1986年 2.3~ 2.21	ブーゲンビル島	472柱
	1986年 9.5~ 9.25	ブーゲンビル島、ガダルカナル島	328柱
	1987年 10.2~10.23	ブーゲンビル島、ガダルカナル島、ビエズ島	541柱
	1988年 10.2~10.25	ソロモン諸島、ガダルカナル島、ビエズ島、東部ニューギニア	303柱
	1989年 3.5~ 3.27	ガダルカナル島	138柱
	1989年 7.13~ 8.3	東部ニューギニア	158柱
	1990年 7.9~ 7.31	東部ニューギニア	72柱
	1990年 10.15~11.6	ガダルカナル島	311柱
	1991年 10.28~11.19	東部ニューギニア	125柱
	1992年 9.28~10.30	東部ニューギニア	89柱
	1994年 9.30~10.13	ガダルカナル島	401柱
1995年 8.3~ 8.12	東部ニューギニア	29柱	
1995年 10.19~11.2	東部ニューギニア	103柱	
お急派遣	1996年 3.8~ 3.18	ビエズ島、ガダルカナル島	107柱
~1995年度(平成7) 計			47,771柱
お急派遣	1999年 8.25~ 9.8	マクノワリ、ピアク島	71柱
合計			47,842柱

海外諸地域等に残存する戦没者遺骨の収集及び送還等に関する決議

第一三国会衆院

——衆議院海外同胞引揚及び遺家族控護に関する調査特別委員会——

〔昭二七、六、一六〕

苛烈なる戦火終息してより二七に七年、今や平和条約発効により独立を回復した今日、海外諸地域並びに本邦周辺海域で戦没した同胞の遺骨が未だ収容されな
いままあるいは埋葬地も荒れ果てたまま放置されているものもあることは誠に遺
憾なことである。遺家族の心情察するに余りあるものがある。

二七にこれら未だ帰還の途程を早急に故山に迎えることにはわれわれの久しく
念願していたところであつて、現状のまま放置されていることは国民感情上及び
難い問題である。

よつて政府は、これらの同胞の遺骨の速やかな収容、送還等には當地維持のため、
万全の対策を講ずると共に、(一)これが遺骨を回収するに必要である。



Session 02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해결노력과 과제



일본시민네트워크에 의한 유골조사 현황
다케우치 아스토(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홋카이도 유골조사와 봉환
도노히라 요시히코(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오키나와 유골조사
구시켄 다카마쓰(가마후야)

야마구치(장생탄광) 유골조사
오바타 다이사쿠(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

일본정부와 교섭
우에다 게이시(전몰자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연락회)



일본시민네트워크에 의한
유골조사 현황



다케우치 야스토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日本での強制動員・
遺骨調査の現況



竹内康人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일본시민네트워크에 의한 유골조사 현황

다케우치 야스토(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요점 → 진상 규명,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 및 재판, 추도 · 유골 반환
- 무연고자의 유골은 식민지 지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민(棄民 · abandoned people) 및 강제 동원, 그리고 그 후에도 이어진 식민주의와 분단의 역사를 상징
- 2018.5.1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 문제'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
-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점하 희생자에 대한 사후 처리는 소극적. 한국 정부 내부에 외교통상부, 행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벽을 넘어선 전문 담당 조직을 꾸릴 필요가 있음
- 현재 절에 보관된 유골의 미반환 문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기보다 한국 정부의 의지 부족이 초래한 결과. 한국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

1. 강제동원자수 및 사망자수

1) 일본으로 끌려온 노무동원자수는 약 80만 명(1939~1945년), 연고모집 · 모집 · 관알선 · 징용

① 내무성 다네무라 자료: 「노무동원 관계 조선인 이주 상황조(사)」 「신규 이입 조선인 노무자 사업장별수 조(사)」

② 도요시마 노보루 메모(조선총독부 광공국의 전 근로동원 과장): 1942년도 11만

9721명, 43년도 12만 8296명, 44년도 28만 5682명, 45년도 1만 622명

- ③ 석탄통제회 후쿠오카지부 「지부관내 탄광 현황 조사표」: 규슈·야마구치에서 1942년부터 1945년 1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월별, 탄광별로 동원수 및 현재수를 집계.

2) 군인군속 동원수는 37만 명 이상

- ① 외무성 「조선인 전몰자 유골 문제에 관한 건」: 1956년에 육군 약 25만 7000명, 해군 약 12만 명 총 약 37만 7000명으로 집계.
- ② 후생성 원호국 「조선 재적 구 육해군 군인군속 출신지별 통계표」: 1962년, 24만 2341명(육군·해군 명부에 없는 자를 빼고 제시함)

3) 사망자수

- ① 노무 동원에 의한 사망자수는 1만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됨
- ② 군무 동원에 의한 사망자수는 2만 2182명(후생성 원호국 「조선 재적 구 육해군 군인군속 출신지별 통계표」 1962년), 명부가 있는 자.
- ③ 일본에서 원폭 등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됨.
강제동원(노무 및 군무)과 공습으로 인한 전시 동원기의 조선인 희생자수는 8만 명 가까이로 추정됨

2. 유골 반환의 경위

1) 노무 동원

- ① 사업소에 의한 반환, 사망 후와 8·15 광복 후 귀국 시 반환, 미반환 유골도
- ② 전후 유골 수습에 의한 반환, 노무 동원 중 사망, 전후에 사망해 무연고자가 된 자 등, 민단 등이 약 2200구를 한국으로 반환해 망향의 동산에 안치됨. 식민지 하의 이민도 포함.
- ③ 시민 단체에 의한 발굴과 반환

2) 군무 동원

- ① 「조선인 전몰자 유골 문제에 관한 건」(1956년 외무성 아시아국 제1과), 육군 중 종전 전에 반환된 실제 수는 불명, 미반환은 9119명, 그 중 실제 유골은 1548명. 해군은 종전 전에 진해에서 2000명, 내지(일본)에서 400명을 반환하였고, 종전 후에는 1948년 2월과 5월에 약 8000명을 반환. 미반환은 2800명분, 그 중 실제 유골은 약 800명분.
- ② 이름이 판명된 유골 및 유품은 1958년부터 1971년까지 후생성 인양원호국 영안실에 보관됨. 그 후 1971년에 2326구가 유텐지로 이관.
- ③ 해외 전몰자 중 미회수 유골도

3. 일본에서의 조선인 유골 조사와 반환 움직임

1) 일본에서의 유골 조사 및 반환



① 홋카이도

혼간지(本願寺) 삿포로 별원의 유골, 아사지노비행장 및 일본제철 와니시제철소 등의 유골

2008년 2월, 무로란 일본제철 징용공 3명과 홋카이도탄광기선 아카마탄광의 조용문 씨 유골은 홋카이도포럼과 무로란, 아카히라의 시민단체가 유족에게 반환해 망향의 동산에 안치됨.

2015년, 삿포로 별원, 아사지노비행장, 비바이탄광, 우류댐공사 등의 유골 115구를 시민단체가 한국에 반환, 서울시립묘지의 납골당에 안치됨.

홋카이도에서는 삿포로의 충령탑(군인 관련), 삿포로 별원(미반환분), 네무로의 다이토쿠지(네무로비행장 관련), 아카비라의 슈가쿠지(아카비라탄광 관련), 히가시카구라초의 문묘지(히가시가와유수지 관련), 후렌공동묘지(우류댐공사), 사루후쓰의 신쇼지(아사지노비행장), 도마리의 호린지(가야누마탄광 관련), 구시로의 고센지(유베쓰탄광 관련 합장) 등에서 유골의 정보가.

② 혼슈

후쿠시마: 조반탄광 관련, 아키타: 가지마구미전원공사, 도치기: 아시오광산, 이바라키: 히타치광산

도쿄: 2005년 시점, 유태지에 조선인 1136구의 위패·유골, 2008~2010년의 반환은 한국 출신자 총 423구. 우키시마호 275구(한국), 북한 출신 군인군속 425구(우키시마호 5구, BC급 전범 4구를 포함함), 미반환. 도쿄공습 사망자의 유골이 존재.

도쿄: 고쿠헤이지의 유골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한국의 '일제강제징용희생자유해보환위원회'가 반환. 전부 강제징용 희생자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함.

시즈오카: 시미즈납골당의 유골은 2010년, 민단 등 관계자가 한국 망향의 동산에 안치. 나가노: 마쓰시로의 1구는 2005년에 망향의 동산에 안치됨. 가나가와의 무연고자 유골 41구도 같은 해 망향의 동산에 안치됨.

아이치: 히가시야마영안전의 조선인 명부 235명분을 한국 국가기록원의 강제연행자 명부와 대조, 유족 조사에서 9명의 연락처가 판명. 2007년, 합장된 이시카와현 소지지의 공양탑 앞에서 추모 행사를 거행.

기후: 가미오카광산의 유골 1구, 2007년에 열린 집회 '한국·북한의 유족과 함께·유골 문제 해결을 위하여'에서 유족의 품으로. 가미오카광산과 관련해서는 광산 부근의 고엔지, 엔쵸지, 도운지 등에서 26구의 유골이 발견됨. 다카야마의 혼쿄지에서

는 전후의 것이 많으나, 46구의 유골이 발견.

오사카: 도코쿠지에 무연고자 유골 80구, "가네마루(金丸)태옥(泰玉)"의 유골이 오카야마현 미쓰이 다마노조선소로 끌려온 조선인의 것으로 판명됨. 출신지는 함경남도. 오사카에서는 센난군 미사키초에 위치한 세이쿄지와 고젠지에 유골이 있음. 그 밖에 오사카공습의 유골이 있음.

효고: 고베시의 도후쿠지, 1945년 6월 고베공습, 약 50명의 조선인으로 보이는 유골이 들어옴. 가와사키중공업 혹은 가와사키제철로 끌려온 조선인과 관련이 있는가.

아이오이시 하리마조선소 관련 유골은 1995년, 아이오이시의 도부묘원에 건립된 아이오이평화기념비와 납골당.

히로시마: 고보댐 건설 중 숨진 유골이 발굴됨. 1995년에 고보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 철도공사 관련 조선인 유골도 발굴됨.

야마구치: 조세이탄광수몰사고로 약 180명이 사망, 그 중 130여명이 조선인, 사망자는 해저에. 2013년에 희생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를 건립. 유골 수습이 목표.

③ 규슈·시코쿠·오키나와

고치: 쓰가댐공사의 무명묘에 조선인, 2009년에 쓰가댐평화기념비 건립.

후쿠오카: 2000년 무궁화당 건설, 미쓰비시 나마즈탄광의 유골 3구 반환. 현재 118구 수습. 민단의 후쿠오카현 본부는 1982년 이후, 500구 이상의 유골을 한국에 반환. 기타큐슈시 고쿠라에 위치한 주일대한기독교 고쿠라교회의 영생원에는 주변 탄광 등에서 수습한 조선인 유골이. 기타큐슈시 와카마쓰의 오다야마묘지는 전후 귀국시 조난을 당해 표류한 약 80구의 시신을 매장해 추모비를 건립.

나가사키: 나가사키의 민단이 1973년에 옛 조코인 유골 154구를 한국 목포의 납골당으로 반환, 1985년에 망향의 동산에 안치됨.

가고시마: 가고시마시영 미도리아마묘지의 외국인 납골당에 조선인 유골 약 80구가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20구 정도가 봉안되어 있음.

오키나와: 오키나와전의 추모비·평화의 초석에 새겨진 조선인 이름은 2017년에 15명이 추가되어 462명.

2017년, 모토부초에 오키나와전에 동원된 조선인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판명됨. 1945년 1월, 징용선 히코산마루(彦山丸)가 공격을 당해 14명이 사망. 그 중 3명은 조선인. 조선인 사망자 명부와 대조, 유족의 연락처가 판명된 것도 있음.

2) 한국 강제동원위원회 설립 이후

- ① 2004년 11월, 한국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됨. 같은 해 12월, 가고시마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징용자 등 유골 반환 문제가 제기.
- ② 2007년 11월의 제5차 유골문제한일협약에서는 1720구의 유골 정보(지자체 1511, 기업 147, 종교단체 62구)가 보고되었고, 한국인 유족의 필리핀, 파라오, 사이판 추도 순례도 실시하기로 합의.
- ③ 2006년, '한국·북한의 유족과 함께·유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실행위원회가 증언 집회를 28곳에서 개최. 일본 정부에 노무 동원의 정부 책임을 자각시키고, 성의 있는 유골 반환 노력, 사망자 정보 수집 및 유족 통보, 인도적 대응, 유골 반환 시 정부의 사죄, 유족 도향 및 장례비의 성의 있는 부담을 요청.
- ④ 그러나 정부간에 이루어진 반환은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친 도쿄 유텐지의 군인 군속 유골뿐. 10년 이상이 지났으나, 민간의 유골 반환 예는 있어도 일본 정부에 의한 징용자 등의 유골은 미반환. 2015년 말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

일본 후생노동성 인도조사실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유골의 소재 정보는 2799구, 현지 조사 237차례에 걸쳐 유골 1018구를 실시.

3) 최근 동향

- ① 2015년, 조동중은 한반도 출신자 무연고 유골 반환·집약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부터 무연고자 유골을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 유골 집약에 착수. 조동중 사원 152곳에서 사망자 정보를 수집. 유골함이나 유골 단지에 넣어 개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골은 100구 이상. 이 중 80구 정도는 본적 등의 신원 정보가 존재. 나머지는 무연고자 유골.
- ② 2018년 1월, 유골 발굴과 반환에 참여해 온 일본의 시민들이 유골봉환종교자시민연락회를 출범시킴. 유골 반환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시민 측의 국경을 초월한

운동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사이타마의 곤조지에 보관되어 있던 쓰시마, 이키의 유골을 이키의 덴토쿠지로 이관.

- ③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향후 전몰자 유골 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유골에 관해서는 DNA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족의 DNA도 확보할 방침을 내놓는다.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전과 해외 전몰자의 DNA 감정을 집단 신청. 2018년 3월 현재, 300명. 후생노동성은 대퇴골 등 손과 발의 감정도 실시한다고 표명. 조선인 유골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 ④ 한국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는 일본 정부에 한국인 전몰자 유골에 관해서도 DNA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풀이해서 요청.
- ⑤ 한국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민간에 강제 징용 피해자 유골 반환을 제기. 남북 공동 유해 송환 사업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의 움직임.

4) 망향의 동산에 안치된 유골

유골은 유족의 품으로.

망향의 동산에 반환된 때의 명부 중 하나인 「홋카이도 한국인순란무연자명단(사원별)」에는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음. 그 소라치지부의 항, 미카시의 만쇼인에 보관된 유골은 홋카이도탄광기선 호로나이탄광의 사망자로 보인다. 호로나이의 지산(支山)인 만지갱, 미루토갱에서 사망한 柳井益雄, 陶慶成, 金谷東洙, 清城相堅 등은 홋카이도탄광기선의 광부명표에서 연행 날짜와 주소가 판명. 반환 시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듯하다. 유골은 유족의 품으로라는 시점에서 망향의 동산에 안치된 유골 명부의 재조사가 필요.

(자료 참조)

4. 향후 과제

- ① 집약된 유골의 반환을 위한 한일 정부의 재협약이 필요함. 평화우호사업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사망자 조사를 실시.

유골은 유족의 품으로 반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발견된 유골은 그 역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사한다.

북한 정부와 함께 유골 송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

②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의 활동 자료를 공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대신하는 정부 기관을 신설하거나 또는 지원재단에 유골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기능을 부여해 예산을 배정한다.

사실 공유를 위해 일부 일본어로 번역되어 간행된 진상 규명 조사 결과의 일본어판 간행을 재개.

③ 일본 정부와 관계 기업은 전시 강제동원 및 강제 노동의 사실과 그 책임을 인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밝히고 주체적으로 유골 조사와 반환에 힘쓴다.

일본 정부는 동원자수, 동원 장소, 사망자수, 유골 반환 상황을 조사. 조사위원회를 설립.

후생연금명부, 공탁금명부, 사고보고서, 호적접수첩, 매장· 화장자료 등 모든 자료를 공개.

강제동원· 강제 노동을 부정하는 역사왜곡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그 사실을 역사교과서 등을 통해 후세에 전달한다.

④ 시민운동간의 연계 및 공동 조직의 구축

무연고자 유골 전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명칭을 포함해 유골 반환은 정확하게.

2009년 ‘태평양전쟁희생자봉환위원회’의 양산시 천불사에 안치된 110구의 가짜 ‘유골 반환’.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은 평화우호의 장이 될 수 있다. 무연(無緣)을 강요당한 민중의 유골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 유골의 소리 없는 외침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다.

자료 3-4 망향의 동산에 안치된 유골

寺院名	〒	所在地 住所	電話	姓 聯名	遺骨名單
万松院	058-21	≡ 宮中区内町107	01267 2-2160	高橋良舞	柳井益雄 嚴 徳朱 陶 慶成 李山鐘 錫 金山徳珠 黄 永春 安平錫俊 孫本斗錫 平山貴顯 徳島龍俊 金山東洙 吉川順奎 姜 永昌 金山奉植 新井老夷 清城相堅 金 終仙 玉田礼子 金 仁鶴 金 天仙
行願寺	011-01	美濃市山崎町	01266 7-2852	細門徳史	
沼貝寺	012	美濃市徳徳町1区		高橋良舞	

「홋카이도 한국인순난무연자명단(사원별)」 소라치지부 만쇼인의 명부

	성명	주소	생년월일	동원된 해	사망한 해	나이	사인
115	清城相堅	경기 강화 하점 양오 513	1918.1	1942.5.29	1945.5.25	28	두개저 골절
118	金谷東洙	전남 여수 삼일 화기 (花崎) 700	1924.1.16	1942.11.21	1945.7.20		갱내 화약 폭발
119	柳井益雄	경북 군성 효령 병수2구	1920.11	1944.6.13	1945.9.10	26	낙반
120	陶慶成	충남 홍성 홍성 소수	1927.2	1944.2.13	1945.10.3	19	광차에 깔림

홋카이도탄광기선 호로나이탄광 만지갱·미루토갱 사망자명부 다케우치 편 「전시 조선인 강제노동 조사자료집」 증보개정판

日本での強制動員・遺骨調査の現況

竹内康人(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 強制動員問題解決の3点 真相究明、被害の尊厳回復・裁判、追悼・遺骨返還
- 無縁遺骨は、植民地支配とそのなかでの棄民および強制動員、その後も続いた植民地主義と分断の歴史を象徴
- 2018.5.18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日帝強占期朝鮮人強制動員犠牲者の遺骨問題」集会
- 韓国政府の日帝強占下の犠牲者への事後処理が消極的。韓国政府内に外交通商部・行政部・保健福祉部などの壁を越えた専門的担当組織をつくる
- 現在寺院に保管遺骨の未返還は、日本政府の責任よりも韓国政府の意思不足の結果、韓国政府の早急な対応が必要

1. 強制動員数・死亡者数

1) 日本への労務動員数約80万人（1939～45年）、縁故募集・募集・官斡旋・徴用

- ① 内務省種村資料「労務動員関係朝鮮人移住状況調」「新規移入朝鮮人労務者事業場別数調」
- ② 豊島陸メモ(朝鮮総督府鉱工局の元勤労働員課長)1942年度11万9721人、43年度12万8296人、44年度28万5682人、45年度1万622人
- ③ 石炭統制会福岡支部「支部管内炭礦現況調査表」九州・山口での1942年から45年1月までの約20か月分の月ごと、炭鉱ごとの動員数・現在数

2) 軍人軍属動員数37万人以上

- ① 外務省「朝鮮人戦没者遺骨問題に関する件」1956年で、陸軍約25万7000人、海軍約12万人の計約37万7000人
- ② 厚生省援護局「朝鮮在籍旧陸海軍軍人軍属出身地別統計表」1962年、24万2341人(陸軍・海軍の名簿がないものを省いて示した)

3) 死亡数

- ① 労務動員での死者、1万5000人以上と推定
- ② 軍務動員での死亡者、2万2182人(厚生省援護局「朝鮮在籍旧陸海軍軍人軍属出身地別統計表」1962年)、名簿があるもの。
- ③ 日本での原爆など空襲での死者は約4万人と推定
強制動員(労務・軍務)と空襲関係で、戦時動員期の朝鮮人犠牲者は8万人近くと推定

2. 遺骨返還の経過

1) 労務動員

- ① 事業所による返還、死亡後と8・15解放後の帰国の際の返還、未返還の遺骨も
- ② 戦後の遺骨収集による返還 労務動員のなかで死亡、戦後に死亡して無縁となったものなど民団などにより、約2200体が韓国へ、望郷の丘。植民地下の移民も含む。
- ③ 市民団体による発掘と返還

2) 軍務動員

- ① 「朝鮮人戦没者遺骨問題に関する件」(1956年外務省アジア局第一課)、陸軍分では終戦前に渡した実数は不明、未渡し分を9119人、そのうち実骨1548人。海軍分では終戦前に鎮海で2000人、内地で400人を渡し、終戦後は1948年の2月・5月に約8000人分を渡す。未渡しは2800人分、そのうち実骨は約800人分。
- ② 氏名判明分の遺骨・遺品、1958年から71年まで厚生省引揚援護局霊安室で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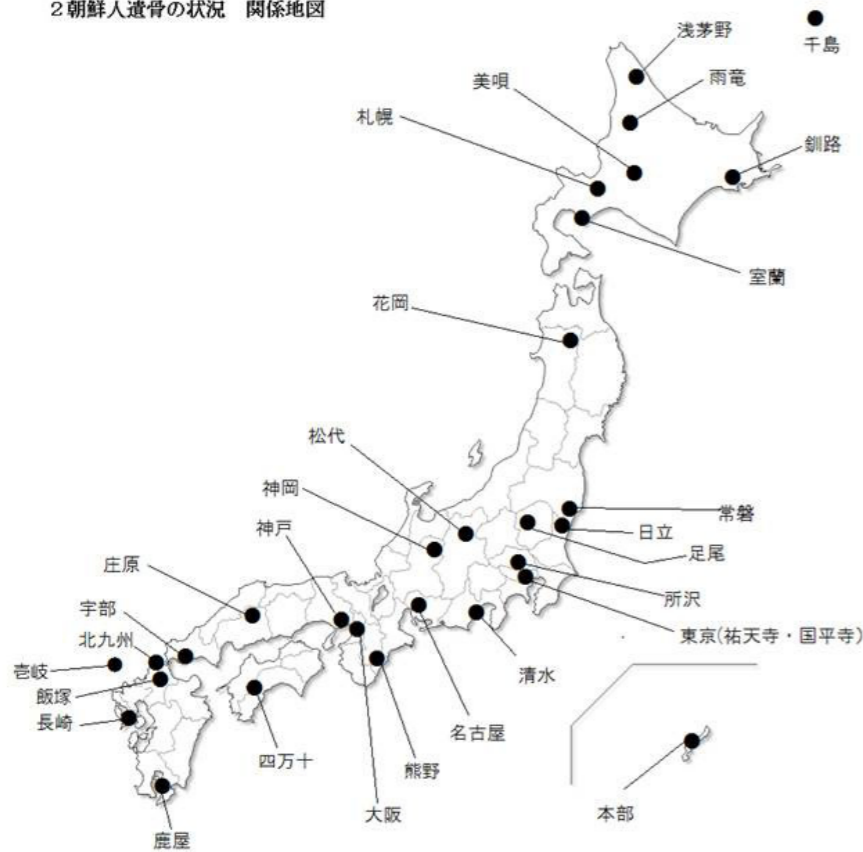
管、1971年に、2326体が祐天寺へ移管。

③ 海外戦没者で未回収のもの

3 日本での朝鮮人遺骨の調査と返還の動き

1) 日本での遺骨調査・返還

2 朝鮮人遺骨の状況 関係地図



① 北海道

本願寺札幌別院の遺骨、浅茅野飛行場・日鉄輪西製鉄所などの遺骨
2008年2月、この室蘭3人と北炭赤間炭鉱の趙龍文の遺骨は、北海道フォーラムや

室蘭、赤平の市民団体によって遺族に返還、望郷の丘。

2015年、札幌別院、浅茅野飛行場、美唄炭鉱、雨竜ダム工事などの遺骨115体が市民団体によって韓国に返還、ソウル市立墓地の納骨堂。

北海道では、札幌の忠霊塔(軍人関連)、札幌別院(未返還分)、根室の大徳寺(根室飛行場関連)、赤平の秀岳寺(赤平炭鉱関連)、東神楽町の聞名寺(東川遊水池関連)、風連共同墓地(雨竜ダム工事)、猿払の信證寺(浅茅野飛行場)、泊村の法輪寺(茅沼炭鉱関連)、釧路の弘宣寺(雄別炭鉱関連合葬)などで遺骨の情報。

② 本州

福島 常磐炭鉱関係、秋田 鹿島組電源工事、栃木 足尾鉱山、茨城日立鉱山、
東京 2005年時点、祐天寺に朝鮮人1136体分の位牌・遺骨、2008～10年の返還は南部朝鮮出身の計423体。浮島丸275体分(南)、北部朝鮮出身の軍人軍属425体(浮島丸5、BC級4を含む)、未返還。東京空襲での死者の遺骨が存在。

東京 国平寺の遺骨は2,017年・2018年と韓国の「日帝強制徴用犠牲者遺骸奉還国民追慕委員会」が返還。全てを強制徴用犠牲者とする誤り。

静岡 清水納骨堂の遺骨は2010年、民団など関係者によって韓国の望郷の丘へ。長野 松代の1体は2005年に望郷の丘。神奈川の無縁遺骨41体も同年望郷の丘へ。

愛知 東山霊安殿の朝鮮人名簿235人分を韓国の国家記録院の連行者名簿と照合、遺族調査によって9人の連絡先が判明。2007年、合葬された石川県の總持寺の供養塔前で追悼行事。

岐阜 神岡鉱山の遺骨1体、2007年の「韓国・朝鮮の遺族とともに・遺骨問題の解決へ」集会で、遺族へ。神岡鉱山関係では、鉱山近くの光円寺・円城寺・洞雲寺などで26体の遺骨が発見。高山の本教寺では、戦後のものが多いが、46体の井骨が発見された。

大阪 統国寺に無縁遺骨80体、「金丸泰玉」の遺骨が、岡山県三井玉野造船所に連行された朝鮮人のものと判明、出身は咸鏡南道。大阪では泉南郡岬町にある正教寺と興善寺に遺骨。他に大阪空襲の遺骨。

兵庫 神戸市の東福寺、1945年6月神戸空襲、50人ほどの朝鮮人と見られる遺骨の持ち込み。川崎重工業や川崎製鉄へと連行された朝鮮人関連か。

相生・播磨造船所関連の遺骨は、1995年、相生市の東部墓園に相生平和記念碑と納骨堂へ。

広島 高暮ダム建設での遺骨発掘、1995年に高暮ダム朝鮮人犠牲者追悼碑。鉄道工事関係での朝鮮人の遺骨も発掘。

山口 長生炭鉱水没事故で180人ほどが死亡、そのうち130余が朝鮮人、死者は海底。2013年に犠牲者の名前を刻んだ追悼碑建立。遺骨収集を目標。

③ 九州・四国・沖縄

高知 津賀ダム工事の無名墓に朝鮮人、2009年、津賀ダム平和記念碑

福岡 2000年無窮花堂建設、三菱鯉田炭鉱の遺骨3体返還。現在、118体収集。民団福岡県本部は1982年以降、500体以上の遺骨を韓国へ。北九州市小倉の在日大韓基督教小倉教会の永生園には、周辺の炭鉱などから集められた朝鮮人の遺骨。北九州市若松の小田山墓地には、戦後の帰国の際に遭難して漂着した80体ほどの遺体を埋葬、追悼碑建立。

長崎 旧誠孝院遺骨、154体が1973年、帳崎の民団によって韓国の木浦の納骨堂へ、1985年に望郷の丘。

鹿児島 鹿屋市宮緑山墓地の外国人納骨堂、朝鮮人の遺骨80体ほどが納骨されていたが、現在は20体ほど。

沖縄 沖縄戦の追悼碑・平和の礎に刻銘された朝鮮人名は2017年に15人が追加され、462人。

2017年、本部町で沖縄戦動員朝鮮人の遺骨埋葬判明。1945年1月、徴用船・彦山丸が攻撃され、14人が死亡、そのうち3人は朝鮮人。朝鮮人の死亡者名簿と照合、遺族の連絡先が判明したものも。

2) 韓国強制動員委員会設立以後

- ① 2004年11月、韓国で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会設立、同年12月、鹿児島での日韓首脳会談、徴用者等遺骨返還提起。
- ② 2007年11月の第5回遺骨問題日韓協議では1720体分の遺骨情報(自治体1511、企業147、宗教団体62体)が報告され、韓国人遺族のフィリピン、パラオ、サイパンの巡礼の実施についても合意。
- ③ 2006年、「韓国・朝鮮の遺族とともに・遺骨問題の解決へ」全国実行委員会による証言集会28か所。日本政府に、労務動員での政府責任の自覚し、誠意ある遺骨

返還への取り組み、死亡情報収集・遺族への通知、人道的対応、遺骨返還での政府によるお詫び、遺族渡航・葬祭への誠意ある負担を要請。

- ④ しかし、政府間でおこなわれた返還、2008年から10年にかけての東京の祐天寺の軍人軍属の遺骨だけ。10年以上が経過したが、民間による遺骨の返還の例はあるものの、日本政府による徴用者等の遺骨は未返還。2015年末強制動員被害調査委員会の活動終了

厚生労働省人道調査室によれば、2017年4月時点で、遺骨の所在情報は2799体分、実地調査は237回、遺骨1018体分を実施。

3) 最近の動向

- ① 2015年、曹洞宗は朝鮮出身者無縁遺骨返還・集約に係わる検討委員会を作り、2017年から、無縁遺骨を故郷に返還するために、遺骨集約へ。曹洞宗の152の寺院から死亡者情報。骨箱や骨壺に入り、個性性を保っている遺骨は100体以上。そのうち80体ほどは本籍などの身元情報。他は無縁の遺骨。
- ② 2018年1月、遺骨の発掘や返還に関わってきた日本の市民が、遺骨奉還宗教者市民連絡会を発足。遺骨返還の膠着した状態の打開にむけ、市民の側からの国境を越えた運動を呼びかける。2018年5月、埼玉の金乗寺で保管の対馬・壱岐の遺骨、壱岐の天徳寺に移管。
- ③ 2015年5月、日本政府は戦没者遺骨収集で、今後発見された遺骨に関してはDNAを抽出し、データベースを作り、遺族からもDNAをとる方針を出す。沖縄では、沖縄戦及び海外戦没者のDNA鑑定集団申請。2018年3月現在、300人。厚労省は大腿骨など手足からの鑑定も行うと表明。朝鮮人の遺骨への対応も求められる。
- ④ 韓国・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は日本政府に対し、韓国人の戦没者遺骨に関してもDNA調査をおこなうよう要請を繰り返す。
- ⑤ 韓国・民族和解協力汎国民協議会(民和協)、民間での強制徴用被害者の遺骨返還を提起、南北共同の「朝鮮の魂、アリの帰郷」の動き

4) 望郷の丘の遺骨

遺骨は遺族の元へ

望郷の丘に返還された際の名簿のひとつ、「北海道 韓国人殉難無縁者名单(寺院別)」は氏名のみ。その空知支部の項、三笠市の万松院の遺骨は北海道炭礦汽船幌内炭鉱のものと思われる。幌内の支山の万字・美流渡坑での死者である柳井益雄、陶慶成、金谷東洙、清城相堅などは、北炭万字炭鉱の鉱夫名票から連行日や住所が判明。返還時には遺族に通知がなかったのでは。遺骨は遺族の元への視点から、望郷の丘に返還された遺骨名簿の再調査が必要。

(資料参照)

4. 今後の課題

- ① 日韓両政府による集約された遺骨の返還にむけての再協議。平和友好事業として。
 - 日韓両政府による死亡者の調査。
 - 遺骨は遺族へと返還することを基本とする。
 - 発見された遺骨については、その歴史を説明できるようにできる限り調査する。
 - 朝鮮政府とも遺骨返還にむけての協議をすすめる
- ② 韓国政府によ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の活動資料の公開。
 - 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の委員会に代わる政府機関を新たに設立、あるいは支援財団に遺骨問題の解決をすすめる機能をもたせ、予算を付ける。
 - 事実の共有にむけ、一部は日本語に翻訳され刊行された真相糾明調査結果の日本語版発行の再開。
- ③ 日本政府と関係企業は、戦時の強制動員・強制労働の事実とその責任の認知
 - 植民地支配と侵略に対する歴史的責任を明らかにし、主体的に遺骨調査と返還に取り組む。
 - 日本政府による動員数・動員場所・死亡者名・遺骨返還の状況の調査。調査委員会を設立
 - 厚生年金名簿、供託金名簿、事故報告書、戸籍受付帳、埋火葬資料など全史料の公開。

強制動員・強制労働を否定する歴史歪曲の動きを批判、その事実を歴史教科書などで次世代に。

④ 市民運動間の連携・共同組織の形成

無縁遺骨すべてが強制動員被害者のものではない。名称を含め、遺骨返還は正確に。

偽りの2009年「太平洋戦争犠牲者奉還委員会」の梁山市千仏寺110人分の「遺骨返還」。

強制動員の歴史の現場は平和友好の場となりえる。無縁を強いられた民の遺骨の歴史に思いを馳せ、その遺骨の声なき声を受けとめる。

資料 3-4 望郷の丘の遺骨

寺院名	〒	所在地 住所	電話	住職名	遺骨名簿
万松院	98-21	三笠市幌内町2丁目107	01267 2-2160	高橋良幹	柳井益雄 巖徳栄 陶慶成 李山鐘 金山徳栄 黄永春 安平錫俊 珠本斗錫 平山貴顕 徳島龍俊 金山東洙 吉川順奎 善永昌 金山春冠 新井老夷 清城相堅 金終仙 玉田礼子 金仁鶴 金末仙
行順寺	011-01	美幌市小樽町	01266 2-2852	細門忠史	
沼貝寺	012	美幌市遠徳町1区		高橋良幹	

「北海道 韓国人殉難無縁者名单(寺院別)」空知支部・万松院の遺骨名簿

	氏名	住所	生年	動員年	死亡年	歳	死因
115	清城相堅	京畿 江華 河帖 陽五513	1918.1	1942.5.29	1945.5.25	28	頭蓋底骨折
118	金谷東洙	全南 麗水 三日 花崎700	1924.1.16	1942.11.21	1945.7.20		坑内火薬爆発
119	柳井益雄	慶北 軍威 孝令 並水2区	1920.11	1944.6.13	1945.9.10	26	落盤
120	陶慶成	忠南 洪城 洪城 昭秀	1927.2	1944.2.13	1945.10.3	19	鉦車下敷

北炭幌内炭鉦万字・美流渡坑死者名簿 竹内編「戦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増補改訂版

●
홋가이도 유골조사와 봉환

|
도노히라 요시히코
(일본-NPO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シンポジウム報告ー北海道の
強制労働犠牲者遺

|
殿平善彦
(の遺骨を韓国に返す宗教者・市民の試み)

홋카이도 유골조사와 봉환

도노히라 요시히코(일본-NPO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2015년 9월, 우리들 일본과 한국, 재일 한국인 및 조선인, 종교인 그리고 미국과 호주의 참가자로 결성된 ‘강제노동희생자추도·유골봉환위원회’는 전쟁 중 홋카이도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희생된 조선인 유골 115구를 모시고 11일 홋카이도를 출발하여 일본열도를 종단하는 버스 여행에 나섰다. 그 후 시모노세키에서 페리를 타 부산에 상륙하여 19일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20일에는 경기도 파주시의 서울시립묘지에 유골들을 봉안하였다. 한국, 일본, 재일 한국인 및 조선인 등 수많은 종교인과 시민들이 상호 협력 아래 계획을 세워 정부에 기대지 않고 시민 독자적으로 유골 봉환을 이뤄낸 것은 현대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 유골봉환 전사(前史)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이던 1940년~1945년, 일본으로 끌려와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조선인은 70만 명 이상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으나 전후 오늘날까지 홋카이도를 비롯한 각지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유골들이 남겨져 있다.

동아시아에서 역사 화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일본에 남겨진 희생자의 유골 조사와 반환은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과제이다.

14만 여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홋카이도는 전후에도 수많은 희생자의 유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며, 산 속에 유골이 매장되어 있거나 불교 사원의 납골당에 지금도 남아 있다.

1970년대부터 홋카이도의 시민운동가와 종교인, 연구자 등은 희생자 조사에 착수하여 유골 발굴 운동을 전개해 왔다. 민중사발굴운동(民衆史掘り起こし運動)이라 불린 활동은 일본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운동이며, 이 운동은 동아시아에 대한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로서 가져야 하는 역사 인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2. 동아시아공동워크숍

1997년 여름, 열흘 동안 공동으로 유골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유골 발굴 한일공동워크숍’(훗날 동아시아공동워크숍으로 개칭)이 홋카이도의 슈마리나이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일본, 재일 한국인 및 조선인 청년들 약 100명은 우류댐공사와 철도공사 중 희생된 일본인 ‘다코베야’(태평양전쟁 당시 광산 노동자나 공사 인부가 생활하던 열악한 조건의 합숙소·역주) 노동자와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의 유골 4구를 발굴하였다.

유골 발굴에 함께 땀을 흘린 청년들은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유골과 대면하고 실로 자신들로 이어지는 역사를 목도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공통의 역사인식과 끊을 수 없는 우정을 만들어냈다. 이후 지금까지 21년 동안, 동아시아공동워크숍은 계속되었고 총 2000명의 젊은이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그곳에는 특정 이데올로기도 조직의 관여도 없었다. 유골을 통해 손에 넣은 공통의 역사인식을 배경으로 우정을 쌓고 만나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이 워크숍의 계속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유골 발굴은 홋카이도 각지로 확산되어 2005년부터는 소야군 사루후쓰무라 아사지노에서 옛 일본육군비행장 건설 현장에 끌려와 숨진 조선인 희생자의 유골 발굴로 이어져 34구의 유골을 발굴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아시베쓰시 니시아시베쓰강가의 조선인 희생자 발굴이, 2013년에는 히가시카와초 댐공사 및 유수지공사 조선인 희생자 유골 발굴이 실시되었다.

또한 홋카이도 각지의 불교 사찰의 납골당에도 많은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판명되어 삿포로의 한 절에는 조선인, 중국인 등의 희생자 유골이 101구나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다.

3. 한일 정부의 유골 문제

2004년 12월에 개최된 한일정상회담 석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에 남아 있는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송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이즈미 전 총리는 노력을 약속하였다.

그 약속에 따라 정부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열린다. 그 결과, 군인군속의 유골 반환은 일부 실현되었으나, 기업에 의한 강제 노역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유골 반환은 지금까지 단 한 구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려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휘두르는 양 정부에 있으며, 정상회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4. 시민이 만드는 화해의 미래

오랜 세월, 유골 발굴과 조사에 참여해 온 소라치민중사강좌(空知民衆史講座)와 동아시아공동워크숍의 회원들은 한국의 유족을 찾아내 유골의 반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발견된 유족은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시민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유골 문제에 힘써 온 사실에 감동하고 본인들도 유골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유골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간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때, 한일 양국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이 독자적으로 유골 봉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것은 시민 운동이 특정 권력이나 권위와 유착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반정부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비판이 필요하다면 기탄없이 비판하나, 시민운동의 목적은 정부에 기대거나 또는 정부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자립하고 비판하고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 오늘날의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 책임에 관하여 말한다면 우리도 일본 정부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인들에 대하여 역사적 책임을 자각해야 하는 자이며, 아울러 동아시아의 피해자와 마주 보아야 한다.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고 국수주의적 사고로 편향되면 편향될수록 정부와 시민운동의 협력은 요원해진다. 일본 정부는 유골 문제에 힘쓰는 시민운동과 솔직하게 마주 보아야 한다. 이렇듯 시민운동과 정부가 공동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의 현안 중 대부분이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을까.

5. 기업의 책임과 역할

유골 봉환 문제에서는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전쟁 중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다코베야 노동자를 혹사시킨 일본 기업은 당연히 숨진 희생자의 유골을 유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전후 70년의 세월을 흘러 보냈다.

2015년의 유골 봉환 당시 모시고 간 115구의 유골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업 중 5사가 밝혀졌다. 이와타치자키건설(岩田地崎建設), 히시나카건설(菱中建設), 스가와라건설(菅原建設),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 닛테츠광업(日鐵鑛業)이다. 우리는 기업을 찾아 유골 봉환 계획을 전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다. 유골을 유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은 기업도 당연히 져야 하는 인도적 책임인 만큼, 봉환 활동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세 기업이 협력 의뢰에 부응하여 자금을 각출하였고, 나머지 두 곳은 협력을 거부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해 나가야 한다.

머지않아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둘러싼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다. 그 내용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듯 하다.

6. 한일 시민운동의 연대, 협력

금번의 유골 봉환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이 강한 결속력 아래 서로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일본에서는 ‘강제연행·강제노동 희생자를 생각하는 홋카이도포럼’과 ‘NPO법인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동아시아공동워크숍’ 등이 각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고, 불교 승려와 관심 있는 연구자들도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몇몇 시민 단체가 뭉쳐 ‘사단법인 평화디딤돌’을 꾸려 서울시를 비롯한 큰 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 운동이 상호 신뢰 아래 협의하여 ‘강제노동희생자추도·유골봉환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유골이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향한 9월 19일 새벽, 일본의 국회에는 전쟁으로의 길을 여는 안보법안이 강행 처리되었다. 전쟁을 허용하는 정부와, 과거의 전쟁과 식민지 지

배의 어두운 부분을 극복하려는 유골 봉환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으며, 한일 언론은 우리의 유골 봉환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

7. 오늘날의 한반도와 유골 문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는 극적인 변화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실현되었다.

두 정상회담의 중간 지점인 5월 31일에는 1945년 가을에 현해탄에서 조난당해 2003년 이후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의 곤조인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인 유골 131구가 이키의 텐도쿠지로 이관되었다. 유골봉환종교자시민연락회 등이 후생노동성에 요청하였고 한국의 시민단체도 힘을 보탠 결과, 후생노동성이 결단을 내리면서 유골의 이키 이관이 실현되었다. 한일 종교인들의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그에 호응한 정부의 움직임은 향후 새로운 유골 문제 활동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북한에 전달하여야 할 14구의 유골을 혼간지 샷포로별원에 안치하였다. 많은 사람들과의 공동 연대를 통하여 북한과도 대화를 나눠 가까운 장래에 유골을 평양에 모셔가고 싶다.

シンポジウム報告—北海道の強制労働犠牲者

殿平善彦(の遺骨を韓国に返す宗教者・市民の試み)

2015年9月、私たち日本と韓国、在日の市民、宗教者そしてアメリカやオーストラリアからの参加者で結成した「強制労働犠牲者追悼・遺骨奉還委員会」は、戦時下の北海道で強制労働により犠牲になった朝鮮人115体のご遺骨を奉持し、11日に北海道を出発して、日本列島を縦断するバスの旅を実現した。下関からフェリーで釜山に上陸し、19日にソウル市庁前広場で葬儀を営み、20日に京畿道坡州市のソウル市立墓地に納骨することができた。日、韓、在日など、多くの宗教者市民が相互に協力しながら計画し、政府に依存することなく、市民独自の遺骨奉還が実現したことは、現代史に新たな刻印を標し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

1. 遺骨奉還前史

アジア太平洋戦争下の1940年～45年、日本に連行され、強制労働を強いられた朝鮮人は70万人以上と言われている。多くの犠牲者が出たが、戦後、今日まで、北海道をはじめ各地に、故郷に帰ることなく多くの遺骨が残されている。

東アジアに歴史和解を実現しようとするなら、日本に残された犠牲者の遺骨調査と返還は欠かせない課題だ。

14万人余の朝鮮人が強制動員された北海道は、戦後も多くの犠牲者のご遺骨が残り続けてきた場所であり、山中に遺骨が埋葬され、あるいは仏教寺院の納骨堂に残され続けてきた。

1970年代から、北海道の市民運動家や宗教者、研究者などによって、犠牲者の調査が

進められ、遺骨の発掘する運動が取り組まれた。民衆史掘り起こし運動と呼ばれた活動は、日本人自身が取り組んだ自らの歴史見直しの運動であり、その運動が戦争と植民地支配による東アジアに対する加害者としての歴史認識へと人々を導いた。

2. 東アジア共同ワークショップ

1997年夏、遺骨発掘の共同作業を行う10日間の「遺骨発掘日韓共同ワークショップ(後に東アジア共同ワークショップと改称)」が北海道の朱鞠内で始まった。日本、韓国、在日の若者たち約100人は雨竜ダム工事・鉄道工事で犠牲になった日本人タコ部屋労働者と朝鮮人強制労働犠牲者の遺骨4体を発掘した。

遺骨発掘に共に汗を流した若者たちは、土の中から現れた遺骨と対面し、まさに自分たちにつながる歴史を目の前に見た。そして、参加者同士は、葛藤を経験しながらも、共通の歴史認識と離れがたい友情を生み出した。これ以来、今日までの21年間、東アジア共同ワークショップは継続し、延べ2000人も若者たちが国境を越えて出合いつづけている。

そこには、特定のイデオロギーや組織の介在があったのではない。遺骨を通して手に入れた共通の歴史認識を背景に、友情を継続し、出会いたいという彼らの思いが、ワークショップを継続させてきた。遺骨発掘は、北海道各地に広がり、2005年からは宗谷郡猿払村浅茅野で、旧日本陸軍飛行場建設に連行されて死亡した朝鮮人犠牲者の遺骨発掘となり、34体の遺骨が発掘された。2012年には芦別市西芦別川河畔の朝鮮人犠牲者発掘、2013年には東川町ダム工事・遊水池工事朝鮮人犠牲者の遺骨発掘が行われた。

また、北海道各地の仏教寺院の納骨堂にも多くの遺骨がおかれていることが判明し、札幌の寺院には101体の朝鮮人、中国人などの犠牲者遺骨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

3. 日韓政府の遺骨問題

2004年12月、日韓首脳会談の席上、盧武鉉大統領が、日本に残されている朝鮮半島出身者の遺骨返還を求め、小泉首相は努力すると約束した。

その約束に基づき政府間協議が断続的に開かれてきた。その結果、軍人軍属の遺骨返還は一部実現したが、企業によって使役された犠牲者の政府による遺骨返還は、今日まで一体も実現していない。その原因は、植民地支配への反省を表明したくない日本政府と、偏狭なナショナリズムを振りかざす相互の政府にあって、首脳会談もできない状況が続いてきたからである。

4. 市民が進める和解の未来

長年、遺骨発掘と調査に取り組んできた空知民衆史講座や東アジア共同ワークショップのメンバーは、韓国の遺族を探し出し、遺骨の返還活動に取り組んできた。発見された遺族は、日本と韓国の若者や市民が共同の努力で遺骨問題に取り組んできたことに感動し、自らも遺骨問題に協力すると申し出た。日韓政府間の遺骨問題への取り組みが膠着状態に陥っているとき、日韓両政府とは依存関係を作らず、市民独自の遺骨奉還が取り組まれることになった。それは、市民の運動が特定の権威や権力と結びつくことを拒否することを意味する。

私たちは反政府運動として市民運動に取り組んでいるのではない。必要な批判は遠慮なくするが、市民運動が政府に依存したり、あるいは政府を打倒することを目的としない。むしろ相互に自立し、批判し協力しあう関係であるべきだと考えている。今日の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の戦争責任と植民地支配責任に関して言うなら、私たちも日本政府や企業とともに、東アジアの人々に対して、歴史的責任を自覚する者であり、共に東アジアの被害者に向き合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政府が権威主義的にふるまい、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になればなるほど、政府と市民運動の共同は難しくなる。日本政府は遺骨問題に取り組む市民運動に率直に向き合うべきであり、市民運動と政府が共同協力の関係に成長するなら、東アジアの懸案の多くが解決の方向に向かうのではないか。

5. 企業の責任と役割

遺骨奉還には、責任ある日本企業が存在する。戦時下に朝鮮人労働者や日本人タコ部

屋労働者を使役した日本企業は、当然ながら、死亡した犠牲者の遺骨を遺族に届けて、謝罪し、補償すべきである。しかし、彼らはその責任を果たすことなく戦後の70年を過ごしてきた。2015年の遺骨奉還で持参した115体のご遺骨に責任ある企業は、5社が明らかになった。岩田地崎建設、菱中建設、菅原建設、三菱マテリアル、日鉄鉱業である。私たちは企業を訪問し、遺骨奉還の計画を伝え、責任ある対応を求めてきた。遺骨をご遺族にお返しすることは、企業にとっても当然の道義的な責任であり、奉還活動への協力を要請したのだ。結局、三つの企業は協力依頼に応じて資金を拠出し、二つの企業は協力を拒否した。今後も、引き続き、企業の責任を主張していくことが必要だ。間もなく、韓国大法院が、日本企業への個人の請求権に関して判決を出すと聞いている。その内容によっては新たな展開があるだろう。

6. 日韓の市民運動の共同、協力

今回の遺骨奉還は、日本と韓国の市民運動が強く結びついて協力しあった結果実現したものである。日本では、「強制連行・強制労働犠牲者を考える北海道フォーラム」と「NPO法人東アジア市民ネットワーク」、「東アジア共同ワークショップ」などが積極的な役割を果たし、仏教僧侶や関心ある研究者たちが協力を惜しまなかった。

韓国では、いくつかの市民運動が結合して「社団法人平和の踏み石」を結成し、

ソウル市をはじめとした大きな社会的支援があった。日本と韓国の市民運動が相互に信頼し話し合うことで「強制労働犠牲者追悼・遺骨奉還委員会」を結成した。遺骨が下関から釜山に向う9月19日未明、日本の国会では戦争への道を開く安全保障法案を強行採決していた。戦争を許容する政府に対して、かつての戦争と植民地支配の暗部を克服しようとする遺骨奉還は見事な対比を描き、私たちの遺骨奉還のプロセスを日韓のマスメディアは積極的に報道した。

7. 今日の朝鮮半島と遺骨問題

2018年4月27日の板門店南北首脳会談を皮切りに、朝鮮半島は劇的な変化の時代に入った。6月12日に米朝会談が実現した。二つの首脳会談の中間の5月31日、2003年以来、埼

玉県所沢市・金乗院に預けられていた、1945年秋に玄界灘で遭難した朝鮮人の遺骨131体が、老岐・天徳寺に移管された。遺骨奉還宗教者市民連絡会などが厚労省に要請し、韓国の市民団体も要請し、厚労省が決断した結果、遺骨の老岐への移管が実現した。日韓の宗教者市民の越境する協働と、それに呼応する政府の動きは今後の新たな遺骨問題の取り組みを象徴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

私たち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届けるべき14体の遺骨を、本願寺札幌別院に安置している。多くの人々との共同協力を通して、共和国政府とも話し合い、近い将来、遺骨を平壤に奉持したい。

●
오키나와 유골조사

|
구시켄 다카마쓰
(가마후야)

沖繩の遺骨調査

|
具志堅隆松
(ガマフヤー)



야마구치(장생탄광) 유골조사



오바타 다이사쿠

(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

長生炭鉱水没事故犠牲者遺骨問題に関する報告



오바타 타이사쿠

(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 事務局長小畑太作)

야마구치(장생탄광) 유골조사

오바타 다이사쿠(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

1. 들어가며

금번 이와 같은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일본의 혼슈에서 서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아베 신조 총리를 당선시킨 야마구치 현 우베시(宇部市)에서 왔습니다.

예전 우베시는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우베시의 탄광은 대부분 해저탄광이며, 조세이탄광도 그 중 한 곳입니다. 해저탄광은 구조상 수몰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수몰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런 연유로 그곳에는 비단 기술적 문제 이전에 안전관리 문제가 존재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이탄광은 그 중에서도 노동자 중 대부분이 조선인이어서 ‘조선’탄광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만큼, 안전관리 문제에 더하여 민족차별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후 대응을 보아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배상금(위로금)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인의 경우에는 받아도 이사 비용으로 고작 30엔 정도(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만 엔 정도)가 다였는데, 일본인 유족은 ‘집을 지을 정도의 금액’을 받는 등, 천양지차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강제동원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세이탄광 희생자 중 136명은 조선인이었습니다만 그들의 도항 시기는 전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탄광조업자 자료인 「집단도항조선인유부기록(集團渡航鮮人有付記録)」(1940년 4월 기재)에는 조선인 희생자 중 2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세이탄광에는 1939년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1,258명이 강제동원되어 ‘합숙료(合宿寮)’라 불리

는 곳에 강제로 집어 넣어서 철저히 자유를 빼앗겼다는 연구 보고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들은 1991년, ‘조세이탄광의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2. 조세이탄광수몰사고와 ‘새기는 모임’의 발족

우선 사고의 개요와 ‘새기는 모임’의 발족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1942년 2월 3일 오전 즉 태양평양전쟁이 발발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무렵, 조세이탄광 제1갱의 먼바다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갱도 천장이 붕괴되면서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은 그 이전부터 붕괴 위험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몰사고(탄광용어로 ‘물비상’)로 183명이 수몰되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그 중 136명은 강제동원을 포함한 한반도 출신자였습니다. 사고는 이튿날 몇몇 신문 지면에 작게 보도되지만, 게 중에는 ‘대부분이 구출되었다’는 기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진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만 기억되어 왔습니다. 패전 후, 회사는 폐업합니다.

사고 후 만 40년이 지난 1982년, 사고를 기억하고 있던 지역의 유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순난자지비(殉難者之碑)’를 건립하였습니다(그림1).

지역 주민들이 이 사고를 잊지 않고 기억해 온 까닭은 무엇보다 183명의 사람들이 해저 갱도에 방치된 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탄광 유적이 그곳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적은 마치 사고의 기억을 깡그리 지워 버리고 말겠다는 듯이 그 후 서서히 파괴되어 철거되어 갑니다. 그러나 해수면 위로 불룩 솟아 있는 2개의 피야(pier)라 불리는 배기·배수 수갱은 파괴되지 않은 채 과거 그곳에 조세이탄광이 존재했다



그림1



그림2

는 사실과 사고의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지금도 서 있습니다(그림2).

‘순난자지비’는 이러한 ‘지울 수 없는’ 사실에 어떻게든 대응하고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의 진실을 똑바로 마주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순난자지비’의 비문은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히 잠드소서/ 편안히 잠드소서/ 탄광의 사나이들이여”.

1982년에 완공된 ‘순난자지비’의 발표와 함께 거행된 위령제에서는 일본인 희생자의 몇몇 유족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 한반도 출신 희생자의 유족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애당초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었던 듯 합니다. 위령제의 주요 행

사는 지역 소재 사찰의 주지스님이 독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에는 사고 직후에 탄광경영자의 의뢰를 받아 급거 제작된 위패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난자지비’에서는 위령제가 치러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부근의 절에서는 매년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순난자지비’의 건립 후 약 10년이 지난 1991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목표로 그 전까지 제일 한국인·조선인의 지문날인거부운동을 지원해 온 사람들이 ‘새기는 모임’을 발족하기에 이릅니다. ‘새기는 모임’은 세 가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즉 ①일본의 사죄와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의 건립, ②사고의 진상을 밝혀 역사에 남기기 위한 증언·자료집의 발간, ③사고를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 피야의 보존입니다. 이와 함께 ‘새기는 모임’은 한국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이듬해부터 매년 유족을 초대하여 추모 집회를 열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2월에 사



그림3

고 현장 가까이에서 추도비를 건립하였습니다(그림3). 『증언·자료집』은 3권까지 발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야의 보존은 시에 문화재나 사적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의 협력을 얻지 못한 채로 단순히 ‘암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3. 유골 문제

유골의 수습과 반환은 한국 유족들이 애초에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기는 모임’은 우리의 역량을 감안하여 목표로 이 과제를 내거는 것을 자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모비가 건립된 때, 유족이 재차 유골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그리고 추모비의 소유권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직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협의를 거듭한 결과, 2014년에 유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04년에 열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출신 민간 징용자의 유골 문제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 지 어언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앞서 ‘새기는 모임’은 2005년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국회 청원과 진정서의 제출을 시도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행동의 진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유골 문제를 과제로 내건 이후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징용공의 유골에 관하여 취급 범위를 설정하였고 조세이탄광 희생자의 유골은 범주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골 자체가 수중에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취급 범위의 설정이 당분간의 방도로 설령 존재하긴 하나, 언제까지고 이 설정을 전제로 뒤서는 당연히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에 ‘새기는 모임’은 대략 4가지 방침을 세워 이 문제에 대응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현실에서는 일단 행동에 옮겨 상황을 보면서 재고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그러한 설정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여 꾸준히 이어나감으로써 설정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이탄광 희생자의 유골도 수습 및 반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당초 지역의 여당 의원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지지부진하던 와중에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한 의원이 직접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 의원을 통해 2018년 2월에 1차 협상을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제반 부처와 진행하였습니다. 협상에서는 ‘협의를 검토 여지 있음’이라는 언질을 받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내에 2차 협상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와의 협상에 이 과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 구체적으로는 우베시와 야마구치현입니다만 그 전에도 다른 과제에 관하여는 지자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유골 문제를 협상 안전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던 지자체 의회와의 연계도 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회와의 연계도 이듬해 작년에 실현하여 우베시 의회에서는 2차례, 야마구치현 의회에서는 3차례 의원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자체는 그 자치권을 토대로 예를 들어 시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정부에 주체적인 의견을 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그 만큼의 주체성을 가진 지자체는 없는 게 현실로 현 시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제라는 인식과 함께 이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언질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학습 기회를 마련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애초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정부에 맡겨 뒤서는 좀처럼 진전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찾아내 그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골 문제는 본래 두말할 나위도 없이 각 정부가 책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지지부진한 현실 속에서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유족의 고령화 또는 서거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유골의 반환이란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골이 수습된 때에는 누구의 유골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의 DNA 감정 기술로 유골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3촌까지의 DNA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에 ‘새기는 모임’은 현재 입수 가능한 유족의 DNA를 독자적으로 입수, 분석하고 또 그 검체를 보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정과 보관은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검체의 채취와 비용의 각출, 분석 데이터의 관리는 ‘새기는 모임’이 맡아 현재 유족 25명분의 DNA 검체를 채취하여 분석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주로 이전 관계를 구축한 한국의 유족회가 검체를 수집한 것으로, 앞으로는 유족의 소재지 조사가 큰 과제로 부상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DNA 기술도 현저히 진보하고 있으며, 또 조세이탄광의 경우 희생자 수가 183명으로 그 이름도 거의 판명된 상태이므로 전술한 3촌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집에 나서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넷째는 유골 수습 자체에 관해서도 전향과 같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골 수습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희생자가 갱구 가까이로 대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에 네 번째 방법으로 갱구에서 유골에 접근할 방법을 검토하여 가능하면 실시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파괴되어 매몰되어 버린 갱구 위치의 파악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당시 자료와 증

언을 통해 다양한 지점을 가정해 보았습니다만 확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추정된 지점에 대하여 전기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보다 확증에 가까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새기는 모임’은 이어서 그 장소를 채굴할 생각입니다.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해당 토지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문제란 소유권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즉 탄광 조업 당시, 조세이탄광주식회사는 주변 토지 일대를 조금의 힘을 들여 접수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전 소유자와 경영자의 자손, 그리고 포츠담정령에 따른 우베시 사이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 정령이나 그 후의 국토이용계획법 등에 따르면 여기에도 지자체 정부의 부작위의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새기는 모임’은 앞으로도 유골 수습과 반환이라는 과제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여정 곳곳에는 정부와 지자체 정부의 부작위라는 장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디 정부가 협력 이상으로 솔선하여 대응하여야 할 터임에도 말입니다. 또한 그 어느 때 이상으로 논리만으로는 확실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론을 환기하고 흐름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각 활동을 공유하는 국경을 초월한 국제심포지엄의 개최는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과를 관련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일정한 방법으로 이어 나가기를 그리고 이 연대가 지금 이상으로 강화되어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는 조세이탄광수몰사고 77주년 추도 집회를 2월 16일(토),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임을 알려 드리며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長生炭鉱水没事故犠牲者遺骨問題に関する報告

おばた たいさく(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 事務局長小畑太作)

1.はじめに

この度は、貴重な機会にお招き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を感謝致します。

わたしは、日本の本州の西の端、安倍晋三総理大臣を選挙した山口県の、宇部市というところから来ました。

かつて宇部市は、炭鉱の街でした。宇部市の炭鉱の多くは海底炭鉱で、長生炭鉱もその一つです。海底炭鉱というのは、その構造から、水没事故が起こりうるのであって、従って、その安全管理には厳格さが求められます。しかし、当時、いくつもの水没事故が起きており、従ってやはりそこには、単に技術的問題以前の安全管理の問題があった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更に長生炭鉱はその中でも、労働者の多くが朝鮮人であり、別名「朝鮮」炭鉱とも呼ばれ、安全管理の問題に加えて、民族差別の問題を考える必要があります。実際、事故後の対応においても、日本人と朝鮮人の賠償金(見舞金)には大きな隔たりがあったようです。

遺族等の証言によると、朝鮮人の場合は、貰えた場合でも引越費用として数円から30円程度(現在の5万円程度)のようで、日本人遺族の場合の「家が建つほどの金額」であったこととは雲泥の差があります。

そして勿論、強制連行の問題があります。長生炭鉱犠牲者の内136名が朝鮮人ですが、その渡航時期について全員は分かっていません。しかし、現在所持する唯一の炭鉱操業者の資料である「集団渡航鮮人有付記録」(1940年4月起)には、朝鮮人犠牲者の内の22名の名前があります。また長生炭鉱には、1939年から事故までの間に1,258名が強制連行さ

れ、「合宿寮」と呼ばれるところに住まわされ、著しく自由を奪われていたとする研究報告もあるようです。

こうした諸問題を解決すべく1991年に、市民によって立ち上げられたのが「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ちょうせいたんこうのみずひじょうをれきしにきざむかい。以下「刻む会」)です。

2. 長生炭鉱水没事故と「刻む会」の発足

先ず事故の概要と「刻む会」の発足までの経緯を説明します。1942年2月3日午前、つまり日米開戦からおよそ二ヶ月後のこと、長生炭鉱第一坑の沖合約1キロメートルのところ

で、坑道天井が崩落し海水が浸入するという事故が起きました。現場は、それ以前から崩落の危険が言われていたようです。

この水没事故(炭鉱用語で「水非常」)により、183名が水没死しました。そのうち136名が強制連行を含む朝鮮半島出身者でした。事故については、翌日、いくつかの新聞が小さく報じましたが、中には「大半は救い出された」とする記事も見受けられます。そして、事故の真相は世に知らされないまま、地元民の中で

だけ記憶されるものとなりました。敗戦後、会社は廃業します。事故から40年目の1982年に、事故のことを記憶していた地元の有力者達を中心となって、「殉難者之碑」を建立しました(図1)。

地元の人々が、この事故のことを記憶し続けていた訳は、一つには勿論、183名もの人々を海底坑道に放置したままだからです。そしてもう一つには、そこには、様々な炭鉱の遺跡が残されていたからです。しかし遺跡は、まるで事故の記憶を消し去ろうとするかのように、その後、徐々に破壊され撤去されて行きます。しかし、海面から突き出た二本のピ



図1



図2

ーヤと呼ばれる、排気・排水竪坑は破壊されることなく、そこにかつて長生炭鉱があった

こと、そして事故の記憶を呼び覚ますものとして、今も立っています(図2)。

「殉難者之碑」は、こうした「消し去ることは出来ない」事実に対処しようとしたものでした。しかし、本当の意味で、過去の事実に向き合えなかったと言わねばなりません。そのことを端的に現しているが、「殉難者之碑」の碑文です。その一節は次の通りです。「永遠に眠れ／安らかに眠れ／炭鉱の男たちよ」。

1982年の「殉難者之碑」の完成披露と共に行われた慰霊祭には、日本人犠牲者の遺族の姿は幾人かあったようですが、朝鮮半島出身の犠牲者遺族は一人もいませんでした。

そもそも、連絡するという発想もなかったよう

です。慰霊祭は、地元の寺の住職の読経が中心に行われたそうです。この寺には、事故直後に炭鉱経営者の依頼で急ぎよ制作された位牌が今も保管されています。現在は「殉難者之碑」での慰霊祭は行われていませんが、近くの寺では、毎年、慰霊祭が行われているようです。

「殉難者之碑」建立から約10年後の1991年、問題の真の解決をめざして、それまで在日韓国・朝鮮人の指紋押捺拒否運動を支援してきた人々によって「刻む会」が発足します。

「刻む会」は三つの目標を掲げました。①日本の謝罪と犠牲者全員の名前を刻んだ追悼碑の建立、②事故の真相を明らかにし歴史に残すための証言・資料集の発行、③事故を今日に伝えるピーヤの保存、の三つです。加えて「刻む会」は、韓国の遺族に連絡を取り、翌年から毎年、遺族を招いて追悼



図3

集会を開催してきました。

そして漸く、2013年の2月に、事故現場近くに追悼碑を建立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図3)。『証言・資料集』は第3巻までを発刊しました。しかしピーヤの保存については、市の文化財や史跡の指定を求めています。行政の協力が得られないまま、単なる「岩礁」扱いのままです。

3. 遺骨問題

遺骨の収集と返還は、韓国遺族の当初からの願いでした。しかしながら「刻む会」は、自らの力量に鑑みてこの課題を目標に掲げることができず控えてきました。しかし、追悼碑が建立された際に、改めて遺族から遺骨問題の解決を提示されたことが契機となり、そして追悼碑の所有権の課題の解決のための新たな組織化を図る中、協議を重ねた結果、2014年に遺骨問題を第一の課題に掲げて新たな歩みをはじめました。2004年の小泉純一郎首相と盧武鉉大統領の首脳会談において、朝鮮半島出身者の民間徴用者の遺骨問題への取り組み開始が約束された10年後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先んじて、「刻む会」は、2005年にも、この問題について国会への請願と陳情の提出を試みたようですが、具体的取り組みの前進には至りませんでした。

というのは、2014年に課題への取り組みを掲げて以降、様々に調査していく中で、日本政府は徴用工の遺骨に関して、取り扱う範囲を設定しており、長生炭鉱犠牲者の遺骨は範疇外としていたのです。理由は、遺骨そのものが手元にないこととでした。取り組みの範囲の設定は、当面の段取りとしてはあるとしても、いつまでもこの設定を前提にしているのは本来の問題の解決には当然至ることは適いません。

そこで「刻む会」は概ね四つの方途によってこの問題に取り組むこととしました。といっても実際は、やりながら考えながら、というのが実際です。

一つは、そうした設定をしている国政府との交渉を開始し重ねて行くことで、設定の範囲を広げ、長生炭鉱犠牲者の遺骨も収集と返還の対象とすることです。この取り組みについては当初、地元の与党議員を通じて働きかけることを試みましたが、遅々として進まない中、野党である社会民主党のある議員が、自らこの問題に関心を払ったことを契機に、この議員を通して、2018年2月に第一回の交渉を、厚生労働省をはじめ諸省庁と行ったところです。交

渉では、「協議と検討の余地あり」との言質を得ましたが、残念ながらそれ以上の進展は今のところありません。今年度中に、二度目の交渉を実施するべく現在準備しているところです。

二つ目は、地元自治体への交渉に、この課題を加えることです。この場合、具体的には宇部市と山口県ですが、それまでにも他の課題については自治体政府との交渉を行って来ましたが、新たに遺骨問題を交渉に含め、更に、これまではあまり積極的に話してこなかった自治体の議会との連携を図ることもはじめました。議会との連携も昨年度漸く実現し、宇部市議会においては二回、山口県議会においては三回の議員による質問が為されました。自治体はその自治権において、例えば自らの施策を講じることも、あるいは国政府に対して主体的意見を表すことも可能なわけですが、いずれの自治体も、そこまでの主体性がないというのが現状であり、現時点では未だ具体的進展はありません。しかしながら、課題であることの認識とともに、この課題の解決は必要との言質は得ていますので、今後も、議員への学習の機会を設けつつ、更に交渉を重ねていく所存です。

三つ目は、国政府や自治体政府に任せているだけでは、なかなか進まないことは当初から予想されたので、「今」為すべき事を見出し為していくことです。当然、遺骨問題は本来、各政府の責任として為すべき事ではあります。しかし、前述の通り実際遅々として進まない中で、経過していく時を看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理由は、遺族の高齢化、あるいは逝去が進んでいくからです。わたし達の目標としている遺骨の返還とは、第一に遺族の元への返還です。従って、遺骨が収集された暁には、その遺骨が誰の遺骨かを特定する必要があるわけですが、わたし達の調査によれば、現在のDNA鑑定技術において、遺骨の特定には、三親等までの遺族のDNA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そこで「刻む会」は、今入手できる遺族のDNAを、独自に入手して解析し、またその検体を保管することとしました。鑑定と保管については、専門業者に依頼して、検体の採取と費用の捻出及び解析データの管理を「刻む会」が行い、現時点で25名分の遺族のDNA検体の採取と解析を終えています。しかしここまでは、主にこれまで関係が構築されてきた韓国遺族会の存在により検体の収集が進んだのですが、これからは遺族の所在調査が大きな課題とな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もっとも、DNA技術の進歩は著しいところがあるようですし、また長生炭鉱の場合は犠牲者の数が183名であり、その名前もほぼ判明していますので、前述した三親等内に限らず、積極的な収集をとも考えています。

四つ目は、遺骨収集そのものに関しても、前項の通り「今」為し得ることを為していくことです。具体的には、遺骨収集の方法を探ることです。事故当時の証言によると、多くの犠牲者は坑口近くまで避難していたことが推察されます。そこで四つ目の方途としては、坑口からの

遺骨へのアクセス方法を検討し、可能であれば実施することとしました。しかしこれには先ず、既に破壊され埋められてしまった坑口の場所の探索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当時の資料や証言にも様々に当たって見たのですが、確証を得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ので、2015年に専門の業者に依頼し、資料や証言による推定箇所を電気探査してもらいました。結果は、より確証に近づいたというところなのですが、「刻む会」としては、次はその場所の採掘を行いたいと考えています。しかし、多大な費用と労力を要することもあります。それ以前に、当該の土地の問題により、現在は未着手です。土地の問題とは、所有権が不明確であることです。つまり、炭鉱操業に際して当時の長生炭鉱株式会社は、近辺の土地一帯を何らかの力で接収していたわけですが、現在は、それ以前の所有者と、経営者の子孫、そしてポツダム政令に基づく宇部市との所有権の区別が不明瞭なのです。

同政令やその後の国土利用計画法などによれば、ここにも自治体政府の不作為の罪があるといえます。

4. おわりに

「刻む会」としては、今後も遺骨収集と返還の課題に、様々に手を尽くして取り組んでいく所存です。しかし、上述してきたとおり、そこには至るところで国と自治体のいずれの政府の不作為という障壁があります。本来ならば、政府が協力以上に率先して取り組むべき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です。また論理だけでは、ましてや一点突破は困難だと思わざるを得ません。世論の喚起と流れの情勢が必要だと思えます。

そういう意味では、こうして各取り組みを分かち合う、しかも国境を越えた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催は意義深いと考えます。

この機会を得たものが、関係する市民団体や宗教団体において、何らかの方途に繋がって行くことを、そしてこの連帯が今以上に強められ広げられ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

来年は、長生炭鉱水没事故77周年の追悼集會を2月16日(土)に現地で開催することをお知らせして、わたしからの報告を終わります。

● 일본정부와 교섭

우에다 게이시
(전몰자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연락)

日本政府との交渉

上田慶司
(戦没者の遺骨を家族のもとに連絡会)

일본정부와 교섭

우에다 게이시(전몰자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연락회)

1. 전몰자유골수습추진법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가결. 법안의 내용이 (일본) 전몰자에 한정.

자민당을 중심으로 법안이 작성되었다. 2015년 9월,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초당 파적으로 가결되었다. 일본국회에서는 중의원 통과 후,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된다.

법안은 우선 제1조 목적에서 ‘전몰자의 유골 수습’을 처음으로 국가의 책무로 정하였다. 제2조 정의에서는 ‘전몰자의 유골 수습’이란 “수습하여, 일본에 송환하고 그리고 해당 전몰자의 유족에게 인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명기. “유골을 가족으로 돌려 보내”는 행위까지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전몰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DNA 감정을 비롯한 감정 등에 관한 시스템 등을 정비해 나간다고 명기하였다. 법안은 최종적으로 9년간의 사업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다.

우리가 처음 법안을 본 때는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였다. 제2조 ‘전몰자의 유골 수습’ 정의에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전몰자’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옛 민주당이 준비한 법률안에서는 전몰자를 ‘구 일본군’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명백한 후퇴로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인, 한국인은 배제된다. 2016년 2월 18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한국인 유족의 참가를 호소하는 강력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였다.

2. 2016년 2월 18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쓰다 야타로(津田弥太郎)의 질문에 시오자키 후생노동상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한국인 전몰자 유족의 DNA 감정 참가에 일본정부의 긍정적 견해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1) 2016년 2월 18일,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후생노동상

유족분들의 심정은 국경에 관계 없이 같다는 것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다고 생각하며, 방금 언급하신 한반도 출신자 분들은 외교협상과 관련한 문제이기는 합시다만, 유족분들의 심정을 강하게 배려하여야 한다는 지금의 지적, 그 뜻도 확실하게 수용하여 한국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진지하게 받아들여 정부 내에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2) 2016년 10월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한국인 유골 문제가 논의

- (1) 하쿠 신쿤(白眞勳·민진당)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한국이나 미군 병사의 그런 유골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겁니다.
- (2) 국무대신(시오자키 후생노동상) 방금 한반도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출신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응을 검토해야 하며, 만약 한국 정부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적절히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8. 2. 8 후생노동성과 한일 시민단체·일본 국회의원의 의견교환회:

후생노동성은 안정동위체검사의 도입 및 재일 한국인, 조선인의 DNA 감정 신청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긍정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음

3. 일본의 운동 - 일본 후생노동성과의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기폭제로 운동이 크게 전진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군인군속재판의 요구를 실현하는 모임, 전몰자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연락회 VS 후생노동성의 협상을 입헌민주당의 아이하라 구미코(相原久美子) 의원을 사이에 두고 5년에 걸쳐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제1차 협상은 2014년 6월 23일에 이루어졌다. 5명의 옛 민주당 의원도 참석하였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인의 이름이 들어간 유골이 유골과 함께 출토되면 한국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일본인도 한국인도 같습니다”고도 말했다. 이름이 붙은 유골 등이 출토될 리 만무하고 일본인도 한국인도 그 유골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 협상에 참석한 민진당(현 입헌민주당)의 하쿠 신쿤 의원이 이듬해인 2015년 5월에 “이름을 알 수 있는 유골이 없어도 DNA 감정을 설득하여 대조해야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터이다”고 후생노동성을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철저히 추궁하여 후생노동상으로부터 “관련 부대 유족에게 이름을 알 수 있는 유골이 없어도 DNA 감정을 설득하겠다”는 큰 방침 전환을 이끌어냈다. 한일 유족 모두에게 획기적인 전진이었다.

제2차 협상은 2015년 6월 22일에 이루어졌다. DNA 감정을 둘러싼 정부 방침이 전환된 직후였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인은 유골이 없어도 관련 부대 유족에게 DNA 감정을 설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국인은 이름이 들어간 유골이 유골과 함께 발굴되면 한국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일본에 가지고 돌아올 유골에 한국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한국인 유족이 감정에 참가할 때 비로소 한국인인지 여부가 판명된다. 작년에 틀림없이 일본인과 똑같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거세게 추궁당했다. 후생노동성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었다. 이 협상에도 하쿠 신쿤 의원이 참석하여 사태 타개를 위해 1개월 후에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2015년 7월 10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 “양국 의원연맹은 한국 출신 구 일본군 군인·군속 전몰자의 유골 수습 및 안치 문제에 대하여 DNA 검사 등에 관해 양국 정부가 대응하도록 촉구하자는 데에 일치했다”면서 공동성명에 유골 문제가 최초로 담겼다. 그리고 국회의 쓰루가 질의-시오자키 답변으로 이어진다.

3차 협상은 2016년 10월 12일에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로부터 DNA 감정 참가의 구체적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같은 해 2월의 후생노동상 답변이 있는 후에 협상이 진

행되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DNA 감정 참가를 타진한 적 없다는 것을 답답했다. 한일협상이 시작될 것을 내다보고 오키나와에서 시작되는 DNA 감정 사업과 관련해 설득 대상에 조선인 최대 부대인 특설수상근무대의 부대 유족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오키나와전 당시 행방불명된 한국인 군속 문제를 제기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인도 행방불명 처리가 된 사람은 감정 대상이 아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일본인 중 행방불명자로 처리된 군인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행방불명인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며, 금번 감정을 통해 어디서 숨졌는지 그 마지막까지 찾아내는 것이 동원한 일본의 책임이다”고 추궁하였다. 한국의 언론도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제4차 협상은 2017년 2월 8일, 많은 국회의원 및 의원 비서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의원>아리하라 구미코(민진당) 참의원 의원, 모리모토 신지(森本真治·민진당) 참의원 의원, 이하 요이치(伊波洋一·오키나와노카제) 참의원 의원, 후쿠시마 미즈호(福島みずほ·사민당) 참의원 의원

<의원비서> 하쓰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입헌민주당) 중의원 의원,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공산당) 중의원 의원, 오카와라 마사코(大河原雅子·입헌민주당) 중의원 의원, 이토카즈 게이코(糸数慶子·오키나와노카제) 참의원 의원, 데루야 간토쿠(照屋寛徳·사민당) 중의원 의원

이 협상에서는 유골 수습 과정에서 DNA 감정으로 민족을 분류하는 기법과, 안정동위체검사라는 방법으로 출신지를 판명해내는 과학적 기법을 유골 반환에 도입하도록 추궁하였다. 이미 오키나와에서 발굴된 유골 2구가 안정동위체검사에서 미군 병사임이 인정되어, 美 DPAA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후생노동성은 필리핀에서 훔쳐 온 유골의 필리핀 반환을 위해 일본인과 필리핀인 유골을 분류하고자 이 검사에 500만 엔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요시다 가즈로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사업과 과장은 “유골을 보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출신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없다. 안정동위체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한국 정부로부터 안정동위체검사의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손과 발도 아버지이다. DNA 감정이 불가능해지는 화장을 하지 말아 달라는 한일 유족의 거듭된 요구에 부응하여, 2017년 4월 이후, 대퇴골을 중심으로 화장하지 않고 후생노동성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일 한국인이 오키나와전의 유골에 관한 DNA 감정에 참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싶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

4. 전몰자유골수습추진법 2016년 4월 1일 시행 이후의 사업 진척 상황 (2018년 10월)

2016년 4월 1일의 법 시행 후 2년 반이 경과한 현재,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 ① 오키나와전 유족을 대상으로 한 DNA 감정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 중이다. 우선 오키나와 4개 지역(마카비, 고지 등)에서 발굴된 유골 75구에 대하여 관련 부대의 가족을 찾아내 통보를 보내 희망자의 DNA 감정을 실시하였다. 결국 1383명의 오키나와전 유족에게 DNA 감정을 알리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후 DNA 감정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감정 키트를 보낸 유족 수는 264가족 416명(2016년 9월 말 현재)으로, 그 중 301명의 유족이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일치 없음’으로 보고(2017년 3월 말)되었다.
- ② 오키나와전과 관련해 일반 현민 유족에게 DNA 감정 안내를 시작하였다. 2018년 7월, 후생노동 부대신은 84구의 유골(치아가 있는 유골을 대상으로 그 치아와 손, 발을 감정)과 326명의 유족 감정 대조 결과를 2018년 말까지 마무리 지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80명이 추가로 신청하고 있다.
- ③ 손과 발도 아버지라는 강한 호소에 2017년 4월부터 해외 유골에 대하여 치아뿐만 아니라 손과 발의 뼈도 감정 대상에 포함시켜 일부를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오키나와에서는 1000구가 넘는 감정 가능 유골이 미감정인 채로 남아 있다. 태평양지역에서도 현지 소각이 이어지고 있어 진전은 극히 부분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④ 일본 국내 과제로는 (유골 감정)의 경우, DPAA(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나 한국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등의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지 화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사지의 감정이 치아가 있는 유골에 한정되어 있어 수습 유골에 비하여 감정수가 너무나도 적다. 그리고 감정 기관이 11개 대학에 분산되어 있고 예산도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족의 감정)에서는 오키나와전 유족에 그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유족의 감정은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을 간절히 원하는 일본 유족의 목소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⑤ 국제적 문제로는 필리핀의 도굴 유골 문제가 재부상. DNA 감정에서 민족적 분류가 대부분 필리핀이었다는 일본인 과학자 2명의 보고를 후생노동성이 은폐한 사실이 발각. 모든 유골을 일본인으로 결론 짓고 현지에서 화장하여 일본에 들고 들어오는 일본의 자세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5. 한국·북한의 유골 반환 및 DNA 감정 참가 사업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 DPAA(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과 한국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일본의 과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수준의 공동 조사, 공동 감식이 아닌, 일본 후생노동성 주도의 유골 발굴 사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전쟁 피해자의 공통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군이 태평양제도에서 발굴한 뒤, 미국에서 아시아인으로 판명된 유골은 일본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더하여 한국, 북한과 일본인의 식별을 DNA 감정, 안정동위체 등으로 공동 감식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는 한국에서 미국과 일본에 즉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조사·공동 감식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DNA 감정 가능성을 빼앗거나 유골이 가족의 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며, 현지 화장의 즉각적인 중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모든 유골을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본인이라 결론 지어 화장한 뒤 일본에 매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3.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 후생노동성을 찾아 “오키나와전 한국 유족의 DNA 감정 결과를 일본의 유골 DNA 데이터와 대조”할 수 있기를, 또 ‘한국 과학자 파견을 통한 공동 연구’ 등을 일본 후생노동성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 외교부의 정식 제안이 아니었다며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국 정상간의 제안·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

한 정상들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 전쟁 피해자 유골에 대한 공동 조사, 공동 발굴, 공동 감식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 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 한일유골협상을 둘러싼 양 정부의 이견

자료1. 2018.3.28 일본 후생노동성 「한겨레 보도에 대한 견해」

자료2. 2018.4.6 한국 행정안전부 「일본과의 유골 협상 경과」

자료3. 2018.5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과의 유골 협상」

日本政府との交渉

上田慶司(戦没者の遺骨を家族のもとに連絡会)

1. 戦没者遺骨収集推進法衆議院厚労委員会で可決。法案の内容が我が国（日本）の戦没者に限定。

自民党を中心に法案が作られた。2015年9月衆議院厚労委員会で、超党派で可決した。日本国会では、衆議院通過後、参議院厚生労働委員会で審議可決し、参議院本会議で最終的に可決される。

法案は、まず、第1条目的において、「戦没者の遺骨収集」を始めて国の責務とした。第2条定義において「戦没者の遺骨収集」とは、「収容し、本邦に送還し、及び当該戦没者の遺族に引き渡すこと等をいう。」と明記。「遺骨を家族に戻す」ことまでが国の責務となっている。そして第9条において、戦没者の特定をはかるめ、DNA鑑定をはじめとした鑑定等に関する体制の整備等を行っていくことを明記した。法案は最終的に9年間の事業に修正可決された。

私たちが初めて法案を見たのは衆議院厚労委員会を通過した後だった。第2条「戦没者の遺骨収集」の定義において、「我が国(日本)の戦没者」と規定されていた。旧民主党が準備した法律案では、戦没者の規定は「旧日本軍」となっていた。明らかな後退であり、そのまま読めば、朝鮮人・韓国人は排除される。

2016年2月18日参議院厚生労働委員会にむけ韓国人遺族の参加を訴える強力なロビー活動を展開した。

2. 2016年2月18日参議院厚労委員会で津田弥太郎—塩崎厚労大臣答弁が行われる。韓国人戦没者遺族のDNA鑑定参加に日本政府の肯定的見解は、今も維持されている。

1) 2016年2月18日、塩崎恭久厚生労働大臣

御遺族の気持ちは国境に関係なく同じであるという先生の今の御指摘はそのとおり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今のこの朝鮮半島御出身の方々につきましては、外交交渉に関わる問題ではございますけれども、御遺族の気持ちに強く配慮をしていくべきという今の御指摘、その御意向もしっかりと受け止めて、韓国政府から具体的な提案がございましたら真摯にそれを受け止めて、政府部内で適切な対応を検討し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2) 2016年10月11日参議院予算委員会でも、韓国人遺骨問題が議論

(1) 白眞勲(民進党) いや、私が聞いているのは、韓国やアメリカの兵隊さんの、そういった御遺骨についてはどうなのでしょ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

(2) 国務大臣(塩崎厚労大臣) 今、朝鮮半島のことについての御質問をいただきましたが、一義的には出身国の政府が責任を持って対応を検討すべきものでありまして、仮に韓国政府などから具体的な提案があれば適切にこれは検討をすべきもの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3) 2018. 2. 8 厚労省と、韓日市民団体・日本国会議員との意見交換会:

厚労省は安定同位体比検査の導入および、在日のDNA鑑定申請について、韓国政府の具体的な提案があれば検討すると肯定的見解を維持している

3、日本での運動—4回の日本厚労省交渉を起爆剤に大きく運動が前進

日本での運動について紹介する。太平洋戦争犠牲者補償推進協議会・軍人軍属裁判の要求を実現する会、戦没者遺骨を家族の元へ連絡会VS厚労省の交渉が、立憲民主党、相原久美子議員を紹介議員として5年にわたり継続し行ってきました。

第1回目の交渉は2014年6月23日行われた。5名の旧民主党議員も参加した。厚労省は「韓国人の名前入りの遺品が遺骨と一緒に出土したら韓国政府と協議する。」と答えた。「日本人も韓国人も一緒です。」とも言った。名前の付いた遺品など出るはずもなく、日本人も韓国人も遺骨が家族の元に帰る可能性はない状況だった。この交渉に参加した民進党(現立憲民主党)白真勲議員が、翌年2015年5月に、「名前がわかる遺品が無くてもDNA鑑定を呼びかけ照合すべきだ。今の科学技術の発展の中で可能なはずだ。」と厚労省を参議院厚労委員会で徹底的に追求し、厚労大臣から「**関連する部隊の遺族に、名前のわかる遺品が無くてもDNA鑑定を呼びかける。**」という大きな方針変更を引きだした。日韓の遺族にとって共通の画期的前進であった。

第2回目の交渉は、2015年6月22日行われた。DNA鑑定をめぐる政府方針の変更の直後おこなわれた。厚労省は、「日本人は遺品が無くても、関連する部隊の遺族にDNA鑑定を呼びかけ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が、韓国人は名前入りの遺品が遺骨と一緒に出土したら韓国政府と協議するのが方針」だと回答した。「日本に持ち帰る遺骨に韓国人がいる可能性を認めないのか。韓国人遺族が鑑定に参加して韓国人かどうか始めてわかることだ。昨年、扱いは日本人と同じにしていたはずだ。」と激しい追及が行われた。厚労省は答えられず黙り込んだ。今回の交渉でも白真勲議員が参加し、事態の打開のために1か月後に開かれる日韓議員連盟の総会で議論するという提案が出された。そして、2015年7月10日東京で開催された日韓議員連盟総会において、「**両国議員連盟は、旧日本軍軍人・軍属の韓国出身戦没者の遺骨収集・安置の問題について、DNA検査などに関して両国政府が対応するよう働きかけることで一致した。**」と共同声明に遺骨問題が初めて盛りこまれた。そして、国会での津田質疑—塩崎答弁につながっていく。

3回目交渉は、2016年10月12日行われた、「韓国政府からのDNA鑑定参加の具体

的要請があれば検討する。」という同年2月の厚労大臣答弁があった後の交渉である。この時点でも韓国政府から、DNA鑑定参加の交渉がないことがわかり、歯がゆい思いもした。日韓交渉が始まることを見越し、**沖縄から始まるDNA鑑定事業について、呼びかけ対象に朝鮮人最大部隊である特設水上勤務隊の部隊が呼びかけ部隊に入っていないことと、沖縄戦韓国人軍属の行方不明者の問題を提起した。厚労省は「日本人も、行方不明扱いになっている人は鑑定の対象でない。」**とうそぶいた。日本人で行方不明扱いの軍人はほとんどいない。「今まで、行方不明のまま放置してあるのが問題であり、今回の鑑定を通じてどこで亡くなったか最後まで探すのが動員した日本の責任である。」と追及した。韓国マスコミもこの問題を大きく報道した。

第4回交渉は2017年2月8日、多くの国会議員・議員秘書の参加で行なわれた。

＜議員本人＞相原久美子(民進党)参議院議員、森本真治(民進党)参議院議員、波洋一(沖縄の風)参議院議員、福島みずほ(社民党)参議院議員

＜議員秘書＞初鹿あきひろ(立憲民主党)衆議院議員、赤嶺政賢(共産党)衆議院議員、大河原雅子(立憲民主党)衆議院議員、糸数慶子(沖縄の風)参議院議員、照屋寛徳(社民党)衆議院議員

この話し合いでは、遺骨収集の過程でDNA鑑定により民族分類できる可能性、安定同位体比の検査という方法で出身地が判明するという科学的手法を遺骨返還に取り入れるよう追及がなされた。すでに沖縄で出土した遺骨2人分が安定同位体検査によって米兵と認定され米国DPAAに移送された事実が確認された。厚労省は、フィリピンから盗まれてきた遺骨のフィリピン返還に向けて、日本人とフィリピン人の遺骨を分けるために、この検査に500万円の予算がついてことが確認された。**厚労省社会・援護局事業課吉田課長は「骨を見るだけでは朝鮮出身か日本人かわからない。安定同位体に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

また、「韓国政府から安定同位体比検査の具体的提案があれば政府内で検討する」と、厚労省は認識を示した。手足も父である。DNA鑑定できなくなる焼骨をするなという韓日遺族の再三の要求に、2017年4月以降大腿骨を中心に焼骨せずに厚労省で保管し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在日韓国人について、沖縄戦の遺骨で取り組まれているDNA鑑定についての参加の可否について、「韓国政府からの具体的提案があれば適切な対応を検討したい。」との見解を、初めて明らかにした。

4、戦没者遺骨収集推進法 2016年4月1日施行後の事業進行状況 (2018年10月)

2016年4月1日法施行以降の2年半が過ぎ事業は次のように進行している。

- ① 沖縄戦遺族からのDNA鑑定実施計画を発表し、実行中である。まず沖縄4地域(真嘉比・幸地など)から出土した遺骨75体について、関連する部隊の親族を探し、通知を送り、希望者のDNA鑑定をした。結局、1383人の沖縄戦遺族にDNA鑑定呼びかけの通知を発送し、これにDNA鑑定の申請があり鑑定キットを送ったのは264家族416人(2016年9月末現在)、そのうち301人の遺族の検定を実施したが「合致は無し」と報告(2017年3月末)された。
- ② 沖縄戦一般県民遺族へのDNA鑑定呼びかけが始まった。2018年7月厚労副大臣は、84体の遺骨(歯のある遺骨について、その歯と手足を鑑定)と、326人の遺族の鑑定照合結果を2018年末までに終わらせ結果を通知すると公表した。さらに追加で80名が申請している。
- ③ 手足も父であるという強い訴えの中、2017年4月より海外の遺骨について、歯だけではなく手足の骨も鑑定の対象として一部保管す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沖縄では1000体を超える鑑定可能な遺骨が未鑑定のままになっています。太平洋地域でも現地焼却は続いており前進は極めて部分的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 ④ 国内的課題としては、(遺骨鑑定)では、DPAA(米軍「戦争捕虜・戦中行方不明者捜索統合司令部」)や韓国「国防部遺骸発掘鑑識団」などの国際基準で遺骨鑑定が行われていないことがある。つまり、現地での焼骨がいまだおこなわれ、手足の鑑定が歯のある遺骨に限定されており、収容される遺骨に比してあまりにも鑑定数が少ない。さらに、鑑定する機関が11大学に分散し予算も人手も確保されていない。(遺族の鑑定)では、沖縄戦の遺族にとどまりアジア太平洋地域の遺族の鑑定の計画さえ示されていないことである。日本の遺族の鑑定を待ち望む声にもこたえられていない。

- ⑤ 国際的問題として、フィリピンの盗掘遺骨問題が再浮上。DNA鑑定による民族的分類でほとんどがフィリピン人であったという日本人科学者2名の報告を厚労省が隠ぺいした事実が発覚。どんな遺骨でも日本人と決めつけ、現地で焼き日本に持ち帰る日本の姿勢に大きな批判が起きている。

5、韓国・朝鮮の遺骨返還・DNA鑑定参加事業に今何が必要か

- 1、DPAA米軍「戦争捕虜・戦中行方不明者捜索統合司令部」、韓国国防部遺骸発掘鑑識団、日本の科学者たちによる国際水準の共同調査・共同発掘・共同鑑定を実現せずに日本厚労省主導の遺骨発掘事業では成功できません。これは、東アジアの戦争の被害者の共通に利益につながります。たとえば、米軍が太平洋諸島で発掘し、米国でアジア人であるとした遺骨を日本に移送していますが、さらに韓国・朝鮮と日本人識別をDNA鑑定・安定同位体などで、共同鑑定する枠組みを作ることは可能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れは韓国から米国・日本に直ちに提案することができます。
- 2、共同調査・共同鑑定が実現するまではDNA鑑定の可能性を奪い遺骨が家族の元、ふるさとに帰る道を閉ざす現地焼骨の即時停止を日本政府に求めねばいけません。どんな遺骨でも科学的根拠なく日本人と決めつけ焼いて日本で埋葬することをやめるよう日本政府に求めましょう。
- 3、韓国行政安全全部は昨年厚労省を訪問し、「韓国の沖縄戦遺族のDNA鑑定結果を、日本の遺骨DNAデータと照合する。」ように、また「韓国科学者の派遣による共同研究」などを日本厚労省に求めましたが、日本厚労省は韓国外交部からの正式な提案ではないので「韓国政府の具体的提案」があったと認めていません。しかし、「具体的提案があれば検討する。」という日本政府の立場は変えていません。もはや首脳間の提案・話し合いで解決する以外ありません。東アジアの各国そして米国も含めた首脳同士の直接対話で、戦争被害者の遺骨の共同調査・共同発掘・共同鑑定を「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共同事業」として実現するよう働きかけが必要です。

★日韓遺骨交渉に関する両政府の異なる見解

資料1. 2018. 3. 28 日本厚労省「ハンギョレ報道に対する見解」

資料2. 2018. 4. 6 韓国行政安全部「日本との遺骨交渉経過」

資料3. 2018. 5 日本厚労省「韓国との遺骨交渉」

memo

memo

memo
